

연구보고서 2014-22-6-3

자녀양육 실태 및 돌봄지원 서비스 개선방안: 맞벌이 가구 중심으로

김은정 · 이진숙 · 최인선



【책임연구자】

김은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요저서】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보육서비스 공급 적정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소득계층별 출산양육 행태 분석 및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공동연구진】

이진숙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인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연구보고서 2014-22-6-3

자녀양육 실태 및 돌봄지원 서비스 개선방안: 맞벌이 가구 중심으로

발 행 일 2014년 12월 31일

저 자 김은정

발 행 인 최 병 호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339-00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F~5F

전 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 쇄 처 경성문화사

정 가 6,000원

ISBN 978-89-6827-184-7 93330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발간사 〈〈

산업화와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진행된 가족구조의 변화 및 가치관의 변화는 가족내 돌봄역할의 한계를 야기하였고,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환경과 맞물려 우리사회의 저출산 현상을 가속화 하고 있다. 저출산으로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는 향후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위협하는 당면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출산 현상의 극복은 우리사회의 최우선순위의 당면 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동의양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2013년 전계층 무상보육과 양육수당이 도입되면서 양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확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지원확대의 배경에는 가족의 경제적 자녀양육부담 감소와 일·가정양립을 지원하여 여성경제활동을 활성화 시키고 그에 따른 출산율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양육지원확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현재의 지원체계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충분한 유연성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에도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출산율 제고 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많은 연구에서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로 양육의 어려움을 최우선으로 꼽고 있는 상황이며, 양육의 어려움을 가장 크게 겪고 있는 집단은 맞벌이 가구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보육시설을 통한 서비스 제공과 양육수당을 통한 현금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정양육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아이돌보미 사업을 실시하고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돌봄지원 서비스는 맞벌이 가정의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기능 또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현 무상보육 등의 돌봄지원체계가 영유아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충분 히 지원하지 못하는 이유는 양육부담이 경제적 문제에 국한된 상황이 아니며, 부모에게 충분한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해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육서비스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현 상황에서 서비스 이용시간 및 유형의 다양화, 수요자의 선택권 부재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양육지원 현황 및 자녀 양육실태를 분석하여 맞벌이 가구의 양육지원 사각지대를 검토하고, 한국사회의 자녀돌봄 지원정책이 부모의 양육욕구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부합된 환경을 제공하는지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맞벌이 가구의 양육부담 해소를위한 정책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연구 추진 과정에서 유용한 조언을 제공해 주신 육아정책연구소 양미 선 박사님과 본원의 강은나 박사님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끝으로 본 보 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연구자 개별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 가 아님을 밝혀둔다.

> 2014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5
제2장 선행연구 고찰	17
제1절 맞벌이 가구의 자녀 양육실태	19
제2절 양육지원 정책과 일·가정 양립 ·····	25
제3장 자녀돌봄 지원정책 변화와 현황	29
제1절 자녀돌봄 지원정책 패러다임 변화	31
제2절 국내 자녀돌봄 지원정책 현황	49
제3절 해외 정책 사례	63
제4장 자녀양육 가치관 및 돌봄서비스 이용 현황	77
제1절 분석대상 및 특성	79
제2절 자녀가치관 및 돌봄시간 현황	85
제3절 자녀양육실태 및 지원서비스 이용 현황	94
제4적 익·가정양립 및 자녀양유의 어려운	105

제5장 자녀 <u>돌</u> 봄	를 지원서비스 욕구 분석 ······121
제1절 자녀돌본	를 지원서비스 만족도 ······123
제2절 자녀돌봄	를 지원정책 요구도 ······139
제3절 시사점·	141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145
제1절 결론 …	147
제2절 정책제인	<u>†</u> ·······150
참고문헌	
부 록	

표 목차

〈丑 3- 1〉	무상보육아젠다에 대한 정부의 대응46
〈丑 3- 2〉	2012년 보육예산47
〈丑 3- 3〉	보육료 지원 현황 (2014년)50
⟨∄ 3- 4⟩	양육수당 지원금액 (2014년)54
〈丑 3- 5〉	연도별 양육수당지급 대상 현황 변화55
⟨∄ 3- 6⟩	아이돌봄 서비스의 우선순위58
〈丑 3- 7〉	아이돌봄 서비스의 지원대상 및 서비스 시간59
(丑 3- 8)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및 본인부담금 (2014년 기준)60
⟨∄ 3- 9⟩	2013년 시간제 이용가구 유형 현황61
⟨∄ 3-10⟩	2010-2013년 가구유형에 따른 영유아 종일제서비스 이용현황61
⟨표 3-11⟩	2010-2013년 소득유형에 따른 종일제서비스 이용현황62
〈丑 3-12〉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 지출비율 현황 (2010) ·····64
⟨∄ 3-13⟩	일본의 보육서비스67
⟨표 3-14⟩	가정보육모의 서비스 내용70
⟨표 3-15⟩	영국의 보육 교육 현황71
〈丑 4-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수83
⟨∄ 4- 2⟩	조사대상자의 취업관련 변수84
⟨∄ 4- 3⟩	자녀관련 가치관। (2007, 2008, 2010, 2012)85
⟨∄ 4- 4⟩	자녀관련 가치관॥ (2008-2011)87
⟨丑 4- 5⟩	기혼가구(15-59)의 자녀양육태도 (2003, 2006)88
⟨∄ 4- 6⟩	양육행동 (2008-2011)
〈丑 4- 7〉	가족내 역할 인식 (2007, 2008, 2010, 2012)90
⟨∄ 4- 8⟩	부모의 가사노동시간 및 자녀양육시간 (2007, 2008, 2010, 2012)91
	부모의 가사노동시간 및 자녀양육시간 (2007, 2008, 2010, 2012)92
⟨፟ 4−10⟩	배우자와의 돌봄노동분담 공평성 인지 (2005, 2010)93
⟨표 4-11⟩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률 (2004, 2009, 2012)95

⟨∄ 4-12⟩	이용기관별 영유아의 기관 이용시간 (2004, 2009, 2012)95
⟨∄ 4-13⟩	개인양육지원 서비스 이용 아동 수와 비율 (2009, 2012)96
⟨∄ 4-14⟩	자녀의 양육 서비스 이용 현황 (2008-2011)97
⟨∄ 4-15⟩	맞벌이 가정 내 개인대리양육 형태 (2008-2011)98
⟨∄ 4-16⟩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사유 (2004, 2009, 2012)100
⟨∄ 4-17⟩	가정내 돌보미 보육서비스를 하는 사유(가정내 돌보미 보육) (2014)101
⟨∄ 4-18⟩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한 경험 (2014)102
⟨∄ 4-19⟩	신청하였으나 이용하지 않은 사유 (2014)103
⟨∄ 4-20⟩	아이돌보미를 신청하지도 이용하지도 않은 사유 (2014)104
⟨∄ 4-21⟩	경제활동 변화 현황 (2008~2011년)106
⟨∄ 4-22⟩	1,2,3차년도에 맞벌이→홑벌이로 이동한 사유107
⟨∄ 4-23⟩	경력단절 경험여부108
⟨∄ 4-24⟩	경력단절 사유108
⟨∄ 4-25⟩	맞벌이의 일이 가정에 미치는 일가정양립갈등 (2007, 2008, 2010, 2012)··109
⟨∄ 4-26⟩	맞벌이의 가정이 일에 미치는 일가정양립갈등 (2007, 2008, 2010, 2012)··111
⟨∄ 4-27⟩	자녀양육의 어려움 (2010)112
⟨∄ 4-28⟩	취업모의 자녀양육의 어려움 (2004, 2009)113
⟨∄ 4-29⟩	여성의 근로시간에 따른 육아지원시설 이용시간 (2011)13
⟨∄ 4-30⟩	보육시설 이용시간보다 근로시간이 더 긴 경우 양육형태 (2011)114
⟨∄ 4-31⟩	보육시설 이용시간보다 근로시간이 더 긴 경우 추가 양육자가 없는 여성의
	근로요일 현황 (2011)114
⟨∄ 4-32⟩	시설 실제 이용시간과 이용 희망시간 평균(어린이집) (2014)115
⟨∄ 4-33⟩	시설희망이용시간과 실제이용시간 차이(어린이집) (2014)116
⟨∄ 4-34⟩	시설 실제 이용시간과 이용 희망시간 평균(유치원) (2014)116
⟨∄ 4-35⟩	시설희망이용시간과 실제이용시간 차이(유치원) (2014)17
⟨∄ 4-36⟩	시설 이용시 희망시간과 실제이용시간의 차이여부 (2014)118
⟨∄ 4-37⟩	희망이용시간과 실제 이용시간이 다른 이유 (2014)119
⟨∄ 5- 1⟩	조사대상자123

〈표 5- 2〉 연령별 보육현황·······124
(표 5- 3) 시설보육 이용현황 ······125
〈표 5- 4〉 맞벌이의 시설 이용 만족도·····126
〈표 5- 5〉 자녀가 기관에 다니는 사유(1순위)······128
〈표 5- 6〉 시설이용연령과 희망시설이용연령······129
〈표 5- 7〉 시설이용연령과 희망시설이용연령이 차이가 나는 사유130
〈표 5- 8〉 개인대리양육서비스 이용 현황······131
(표 5- 9) 개인대리양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요일 및 지불방법 ······132
〈표 5-10〉 맞벌이의 개인대리양육서비스 만족도133
〈표 5-11〉 개인대리양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시설보육+가정보육)134
〈표 5-12〉 양육지원정책 인지여부136
〈표 5-13〉 양육지원정책 수혜여부136
〈표 5-14〉 양육지원정책이 양육부담을 해소하는데 도움 정도137
〈표 5-15〉 수혜여부에 따른 양육지원정책 만족정도 138
〈표 5-16〉 수혜여부에 따른 맞벌이의 양육지원정책 만족정도138
〈표 5-17〉 향후 요구되는 양육지원정책의 우선순위140
〈표 5-18〉 시간이용에 따른 보육료 차별화와 운영시간 개선 필요성 ······141
그림 목차
[그림 3-1] 아이돌봄 서비스의 목적
[그림 4-1] 맞벌이 자녀의 양육서비스 이용 변화 (2008-2011)99
[그림 4-2] 홑벌이 자녀의 양육서비스 이용 변화 (2008-2011)99

Abstract <<

Policy Improvement for Parenting Support: With Special Focus on Dual-income Household

Government's responsibility for child care has been strengthened since 2013 by 'the free child care policy'. At this backdrop, this study, with an analysis of child-rearing conditions, looks into whether the government's parenting support is providing parents with a suitable nurturing environment.

Major parenting support policies include free child care, home care allowance and public nanny service. Survey results show that the financial burden of parenting has been reduced due to free child care and home care allowance. Nevertheless, the demand for financial support for parenting is still high. Looking into the age usage of home care allowance, the demand for home based care for infants is found to be significantly high. In addition, for those who are using home based care services such as public nanny service, private nanny service and relatives nanny service, satisfaction with the hours of use turns out to be very high. The flexibility of time use is recognized as a very great advantage of the service for dual-income households because the service is to provide care for working parents till late hours. Furthermore, although work-life

imbalance has been reduced over the past few years, child rearing burden on working mothers is still high.

Based on the findings, it is deemed necessary to ensure service priorities to enhance parenting support for dual-income families. In addition, there is a need to expand the public nanny service to satisfy the demand for the home based care service of dual-income households. In order to operate child care facilities more efficiently, it is necessary to differentiate child care services based on the use of time. We suggest that child care facilities provide all-day services to dual-income households and provide part-time services to single-income households. Furthermore, the government needs to put more efforts in increasing the number of public child care facilities as well as the quality of related services. Finally, child rearing and parenting support policy needs to be made from the gender equality perspective and more efforts should be made to improve work-life balance. In other words, measures are needed to ensure both parents to equally share child-rearing responsibilities.

1. 서론

- □ 산업화과정에서 진행된 인구구조와 가족구조의 변화 및 새로운 가 치관의 등장은 한국사회에서의 자녀양육 및 저출산 문제를 야기하 였음.
- □ 저출산 현상은 한국사회에서 단순한 인구학적인 관심사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핵심이슈로 확장되면서,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 2013년 이후 전면적인 무상보육실시와 양육수당이 도입되면서 보육에 대한 재정지원이 큰 폭으로 증가함.
 - 지원확대의 배경에는 가족의 경제적 자녀양육부담 감소와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한 여성경제활동 활성화에 목적을 둠.
- □ 지속적인 지원확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지원체계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충분한 유연성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에도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출산율제고 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 본 연구에서는 현재 양육지원정책 현황 및 양육실태 분석을 통하여 한국사회의 자녀돌봄 지원정책이 부모의 양육욕구에 실질적으로 얼 마나 부합된 환경을 제공하는지 살펴보고자 함.

2. 국내 자녀양육지원 정책 현황

□ 관련 정책으로 시설보육지원 정책으로서의 보육교육비 지원, 가정 양육지원정책으로서의 양육수당 지원과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해소 및 가정양육 수요충족을 위한 아이돌보미 서비스 정책 현황 제시

□ 보육·유아교육비 지원

- 보육·유아교육비는 2013년 현재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소득수 준에 관계없이 전계층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보육료·교육료 지원이외에 장애아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방과후 보육료, 시간 연장형 보육료를 지원함.
- 다양한 보육비·교육비 지원정책이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가 구의 양육지원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 특히 양육의 어려움을 크게 경험하고 있음.

□ 양육수당

- 지원대상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 보호자의 소 득수준에 관계없이 전계층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며, 아동의 연 령을 0~5세(취학 전)로 확대함.
- 영아의 양육수당 지급 비율을 비추어 볼 때, 영아기 자녀의 가정 양육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영아기에 대한 가정양육 선호도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보육 이용자와 형평성 측면에서 많은 차이를 가짐. 가정양육에 대 한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양육수당을 좀 더 현실화 하여 시설보육 이용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아이돌봄지원사업

- 지원대상은 한부모 및 맞벌이 등 취업부모의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함, 2014년 현재 맞벌이의 서비스 욕구를 반영하여 우선순위를 취업모 중심으로 개편함.
-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책 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만 12 세 이하 아동을 필요한 시간만큼 돌보는 '시간제 돌봄'과 생후 24 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 돌봄'으로 구분됨.
- 사업서비스의 이용요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나, 시간 제 및 영아종일제 정부지원시간을 초과하는 아동은 시간제'라'형으로 제공됨. 시간제의 경우 '라'형은 부모가 전액부담하나, 종일 제의 경우 '라'형의 경우에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편적 지원 서비스로서의 성격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시간제 '라'형은 본인부담이 100%이기 때문에 센터의 예산운용 실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라'형 서비스제공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며 종일제 '라'형에 대한 수요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 일반가정의 '라'형에 대한 아이돌보미 수요는 많은 상황이며, '라' 형 이용자들은 국가에서 돌보미(베이비시터)를 관리한다는 이유 로 해당서비스에 대한 신뢰감이 높은 편임.
- 아이돌보미에 대한 수요충족을 위해서는 센터 예산운용 및 평가 체계 개편이 요구되며, 시간제와 종일제의 예산편성을 독립적으 로 하여 충분한 예산확보가 요구됨.

3. 자녀양육 가치관 및 돌봄서비스 이용 현황

□ 분석 자료로는 본 연구를 위해 조사된 「자녀양육 실태 및 정책요구 도·수요도」조사와, 2차 자료인 '여성가족패널', '한국아동패널', '전 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가족실태조사', '보육실태조사', '보육실태조사', '보육실대조사', '보육실대조사', '보육실대조사', '보육실대조사', '보육실대조사', '보육실대조사', '보고서 자료를 활용함.

□ 자녀 양육태도 및 가족내 역할 인식

- 2003년도와 2006년도 조사자료에 따르면 자녀양육태도가 자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변화되었음을 시사함.
- 자녀양육과 교육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현재의 교육환경이 다양한 정보 추구와 적극적인 사교육을 요구하기 때문에 가정 내 엄마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이해됨.
- 배우자와의 돌봄노동 분담 공평성에 대한 인지조사 결과, 아내에게 불공평 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2005년 대비 2010년 증가하여 돌봄 노동에 대한 불공평성에 대한 인식정도는 높아지고 있음. 남성과 여성의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 시간차를 고려할 때 그에 따른 실질적인 개선은 가정 내에서 크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이해됨.

□ 보육실태 및 서비스 이용 현황

○ 개인양육지원 서비스 이용 아동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에 대한 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 측됨.

- 가정내 돌보미 이용 사유를 분석한 결과, 보내고자 하는 시설에 대기자가 많아서 못보내는 사례와 교사 대 아동의 비율 때문에 못보내는 사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확충과 함께 교사 대 아동 비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아이돌보미 사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층의 경우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반면, 소극적인 수요자 층의 경우 해당서비스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아이돌보미 서비스 수준의 질적 제고와 함께해당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정보제공을 통한 신뢰 확보방안 요구됨.

□ 일·가정양립 및 자녀양육의 어려움

- 근로시간에 의한 일가정 양립갈등은 개선되었고 가사노동에 따른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양육부담에 따른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자녀양 육에 대한 부모의 역할이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증대되고 있 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맞벌이 가구에 대한 자녀돌봄지원 인프라 확충과 함께 홑벌이의 양육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양육지원대책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
- 양육지원 시설 이용시간과 이용희망시간을 비교 조사한 결과 맞 벌이가구와 홑벌이 가구 모두 희망하는 시간까지 시설이용을 하 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됨.
- 시설 이용시 희망이용시간과 실제이용시간이 불일치하는 사유를 살펴보면, 시설의 법적 운영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

- 지 자녀를 맡기는 부모를 선호하지 않는 상황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됨.
- 특히 국공립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실제 이용시간과 희망이용시 간가의 차이가 더 크다는 것은 시설 운영시간에 대한 개선이 필요 하다는 점을 시사함.

4. 자녀돌봄 지원서비스 욕구

- □ 자녀돌봄 지원 서비스 만족도
 - 맞벌이의 경우 운영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어린이집이 유치원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보육료, 거리, 정규프로그램 질, 교사의 질, 급식 등 안전위생항목은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됨.
 - 맞벌이의 시설 이용의 주된 사유는 양육공백이며, 홑벌이의 시설 이용의 주된 사유는 아동의 사회성 발달 및 양육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나타남.
 - 가정내 돌봄지원 서비스의 경우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이용시간'인 것으로 나타남.
 - 보육시설의 운영시간 내에서도 장시간의 시설보육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 및 제공되는 서비스 질에 대한 불만족 등의 이유로 가정 내 양육지원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 자녀돌봄 지원 정책 요구도
 - 양육지원정책의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국공립시설확충과 서비 스질 향상,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희망하는 것 으로 조사됨.

- 국공립 시설의 확충을 요구하는 이면에는 국공립시설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수준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었다고 보이며 해당 시설의 확대는 시설의 양적 확대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적 확대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여겨짐.
- 현재 무상보육이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유아교육비 지원확대에 대한 요구도가 상당하다는 것은 현행의 무상보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함.
- 이밖에 시간이용에 따른 보육료 지원 차별화 정책과 시설의 시간 운영에 관한 조사결과, 홑벌이 가구의 경우 시간이용에 따른 보육 료 차별화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현재 법정 운영시간보다 더 길게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맞벌이, 홑벌이 가구 모두 상대적으로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현재 시설운영시간은 그대로 하되 정규프로그램 운영시간 (09:00~17:00)을 더 길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맞벌이(4.05점)가 홑벌이(3.87점)에 비해 필요성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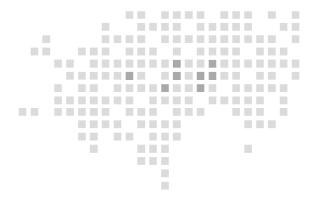
5. 결론 및 제언

- □ 맞벌이 가구의 경우 특히 양육의 어려움을 크게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양육비에 대한 어려움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지원 측면과함께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이 함께 이루어져야함.
- □ 양육지원 정책에서 좀 더 취업모 친화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함
 - 본 연구 결과, 근로시간에 의한 일가정 양립갈등, 가사노동 및 자 녀양육에 따른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조사

되었으나 여전히 상당수의 맞벌이 가구가 일가정 양립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의 시설운용체계 개편을 통해서 맞벌이와 홑벌이 가구에 대한 서비스 접근 차별성이 필요함. 시설이용에 대한 맞벌이 부부의 접근성을 좀 더 강화하고, 홑벌이 가구의 이용시간에 따른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이용시간에 따라 보육비를 차별화하여 지원하는 정책설계가 필요함.
- □ 현행의 시설중심의 양육지원 서비스와 함께 아이돌보미 사업이 가 정양육지원 서비스로서 충분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당제도에 대 한 예산확대가 필요함.
 - 또한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시간제와 종일제에 대한 독립적인 예산운용과 센터 평가체계 개편이 요구됨.
-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보육시설운영 체계 하에서 정규프로그램 이외의 시간 (7:30~9:00, 17:00~19:30)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질적제고가 필요함.
- □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양육지원 정책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뿐만 아니라 성통합적 관점을 고려하여 계획되고, 남성과 여성의 양육공동책임에 대한 실제적 분담방법을 제시하고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주요용어: 맞벌이, 자녀양육, 돌봄지원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산업화와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진행된 가족구조의 변화 및 가치관의 변화는 가족내 돌봄 역할의 한계를 야기하였고, 이러한 상황은 여러가지 사회경제적 환경과 맞물려 우리사회의 저출산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그에 따른 파급력에 대하여다각적인 방면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저출산에 따른 고령화 및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향후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당면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출산 현상은 한국사회에서 중대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우선순위의 당면 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과거 가족 내에 서 충족되었던 아동의 양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에 대한 요구가 증 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양육에 대한 지원 을 확대하여 왔으며 2013년 전계층 무상보육과 양육수당이 도입되면서 양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확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지원확 대의 배경에는 가족의 경제적 자녀양육부담 감소와 일가정양립을 지원하 여 여성경제활동을 활성화 시키고 그에 따른 출산율 제고의 목적이 있다. 지속적인 양육지원확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지원체계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충분한 유연성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 동 참가율에도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출산율 제고 효과 도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2년 보육료 지원 금액은 중앙정부 예산의 1.07%, 보건복지부 예산의 10.78%를 차지하며 보육예산의 78.9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2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9.9%이며 이는 2006년 50.3%와 비교하면 오히려 낮아진 수치이며 2009년 49.2%이후 미미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효과로서는 매우 부족한 수치로 평가된다.

기존 연구결과에 의하면 어떤 소득계층도 우리나라의 영유아 자녀돌봄에 있어서 만족할만한 체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맞벌이 가구의 경우 실질적으로 많은 가구에서 자녀 돌봄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림 외 2012).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제안된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경우 또한 저소득 가정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어 맞벌이 가정의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기능 또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2014년도부터 우선순위의재편 등을 통해 맞벌이 가구의 지원을 더욱 강화한 측면이 있으나 수요에 얼마나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현 무상보육 등의 돌봄지원체계가 영유아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충분 히 지원하지 못하는 이유는 양육부담이 경제적 문제에 국한된 상황이 아니며, 부모에게 충분한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해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육서비스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현 상황에서 서비스 이용시간 및 유형의 다양화, 수요자의 선택권 부재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양육지원 현황 및 자녀 양육실태를 분석하여 맞벌이 가구의 양육지원 사각지대를 검토하고, 한국사회의 자녀돌봄 지원정책이 부모의 양육욕구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부합된 환경을 제공하는지살펴보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장에서는 연구 배경 및 목적. 연구내용 및 방법이 기술되었으며, 제 2장은 관련 문헌 고찰로 양육지원 정책과 일·가정 양립실태 및 맞벌이 자녀 양육실태에 대한 기존 연구내용 및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제 3장에서는 국내의 보육정책의 패러다임 변 화와 함께 양육지원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2013년도 전계층 무상보육의 실시는 국내 양육지원 정책의 한 획을 긋는 매우 중대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양육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양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한층 강화한 측면이 있어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이에 따라 국내 보육정책을 중심으로 국내양육지원 정책 이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살펴보고 있다. 현 자 녀양육지원 정책 현황은 시설양육지원 정책으로서 무상보육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가정양육지원 정책으로 양육수당과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현황 을 제시하고 있다. 무상보육정책의 경우 시설이용료를 지급하는 측면뿐 만 아니라 보육시설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양육수당과 달리 현금지원 뿐만 아니라 서비스지원 측면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무상보육교육비 지원과 양육수당은 전계층을 대상으로 보편 적 복지 수단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투입되는 예산 규모 및 대상아 동을 고려할 때 양육지원정책의 핵심정책으로 볼 수 있는 것에 반해 아이 돌보미 지원 사업은 규모 및 대상을 고려할 때 국내 양육지원정책으로서 의 역할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사업에 대한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이라는 측면과 국내 시설보육 중심의 지원 정책 하에서 양육수당 이외에 가정보육을 지원하는 유일한 공적 서비스 로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큼에 따라 해당정책의 확대와 개선을 지향하는

의미에서 보육교육비 지원, 양육수당 정책과 함께 다루고 있다. 이밖에 프랑스, 영국, 일본의 양육지원 제도의 일반적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따 른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제 4장에서는 자녀양육 가치관 및 돌봄 서비 스 이용 현황을 분석하고 있다.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최근 몇 년간 자 녀 가치관의 변화 및 가정내 돌봄시간의 현황을 살펴보고 양육지원 서비 스 이용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일 가정 양립에 의한 갈등 및 자녀 양육의 어려움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분석자료로 여성가족 패널, 한국아동패널,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가족실태조 사, 보육실태조사(kosis 제공 일부 자료)와 같은 2차 자료와, 2012년 전 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서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실시된 「자녀양육 실태 및 정책요구도 수요도,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 전 계층 무상보육 실시이후 및 최근의 현황분석을 위해서 해당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대상은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시설보육 및 기 타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여 양육하는 기혼여성 511명을 대상으로 1대1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제 5장은 본 연구에서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자녀 돌봄 지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지원정책 요구도 조사 결과를 제 시하고 있다. 또한 사례분석을 위해서 현재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맞벌 이 가구의 여성을 대상으로 양육실태 및 요구도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 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 6장에서 는 본 연구 결과와 그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제언하고 있다.



제2장 선행연구 고찰

제1절 맞벌이 가구의 자녀 양육실태 제2절 양육지원 정책과 일·가정 양립

선행연구 고찰 《

제1절 맞벌이 가구의 자녀 양육실태

맞벌이 여성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이라는 두 영역에 대한 책임으로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맞벌이가 경험하는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은 양육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류연규김영미 2014; 이윤진 외 2010). 가사일 등은 퇴근후에 처리한다거나 주말에한꺼번에 하거나 할 수 있지만, 양육의 경우는 이와 달리 필요한 시간에적절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특성이 있다. 홍승아 외(2010)는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취업부모를 조사한 결과, 44.7%가 정시퇴근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과 같은 근로조건에 따른 적절한 자녀양육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의 장시간 근로문화는 맞벌이 여성으로 하여금 노동시간상황(근로시간)과 보육시스템(시설보육시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자녀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장혜경 외 2009).

맞벌이 가구의 경우 직장생활로 인해서 발생하는 양육시간의 공백은 개인대리양육 혹은 시설양육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맞벌이 가구의 경우 근로로 인한 양육공백을 개인대리양육과 시설양육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는 것보다, 두가지 양육서비스를 조합하여 이용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류연규·김영미 2014; 도남희외 2012). 특히 맞벌이의 자녀연령이 높아질수록 시설양육과 개인대리양육을 함께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연령이 높

아질수록 사회성 발달 및 학습을 위해 시설 양육을 선택하는 비율이 많아 지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자녀가 돌아온 후의 자녀양육공백을 채 우기 위해 개인대리양육을 선택하는 양상을 보였다(도남희 외 2013).

1. 개인대리양육서비스

맞벌이의 자녀연령이 어릴수록 개인대리양육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원 외 2012; 이미화 외 2013). 개인대리양육 서비스를 제 공하는 사람은 대부분은 조부모였으며(서문희 외 2012), 어머니의 연령 이 낮을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조부모가 주양육자인 비중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이윤진 외 2010)

이정원 외(2012)의 연구에서는 취업모의 근로시간에 따라 개인대리양육 서비스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 양육자로 부모양육이 많았으며, 40~50시간 근로하는 경우 비혈연 양육이 많았고, 5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혈연양육서비스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시간 근로하는 근로문화는 맞벌이 가구로 하여금 양육서비스제공 시간 측면에서 개인대리양육서비스를 시설서비스보다 더 선호하는 경향이 크다(이미화 외 2011; 전상민 2011). 다만 시설양육서비스에 비해서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더 크다는 제약이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개인대리양육서비스는 조부모나 친인척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이러한 혈연에 의한 개인대리양육서비스는 맞벌이가 선호하는 '믿고 맡길 수 있는'서비스라고 생각된다(조주은, 2012). 실제로 홍승아 외(2010)의 연구에서 맞벌이 부부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영아기 자녀양육 형태로 직접 돌보기, 조부모, 가정보육시설, 국공립보육시설 순으로 보고하고 있다. 특히 영아의 경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상황 이면에는 비용부담 혹은 대리양육자의 부재로 인해 보육시설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미화 외 2011). 시설보다 혈연개인대리양육서비스에 대한 선호가 높다는 것은 보육시설의 절대수요가 부족하지 않음에도 맞벌이 부부가 '믿고 맡길 곳이 없다'고 인식하는 것과같은 맥락으로 질 높은 보육시설의 부재로 볼 수 있다(금재호 외 2013). 다만 보육시설의 수는 총량적으로 접근할 경우 충분성을 보이지만 지역별 충분성은 지역별로 상이한 상황이다(김은정 외 2013).

맞벌이 가구의 근로시간과 시설보육시간의 불균형으로 인한 자녀양육 공백을 채워줄 정책지원이 절실한 가운데 아이돌보미 사업은 이러한 양육공백을 채우는데 긍정적인 개인대리양육으로 논의 되고 있다(고선주 2012; 이승미 외 2011; 최정신 2011). 이승미 외(2011)의 연구에서는 아이돌보미를 이용하고 있는 23개의 사례를 통해 아이돌보미사업의 특성을 정리하였는데, '양육의 틈새를 보완하는 재택서비스'로 명명하며,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제외한 부모의 양육이 어려운 틈새시간이 발생할 때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매우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 여성가족부(2014b)에 따르면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시간제가 2010년 82.7%, 2013년 현재 89.5%, 종일제가 2010년 71.4%, 2013년 90.4%로 점차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일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자가 늘어남과 동시에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사업인 만큼, 현재 맞벌이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 서비스 인지정도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정책수요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산업화에 따른 가족구조의 변화 및 핵가족화와 함께 친인척 유대의 약화, 이웃 간 단절 등으로 인해 맞벌이 가구의 가족내 아동돌봄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현재의 돌봄지원 서비스는

다양한 보육수요 욕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시설보육의 경우 운영시간의 한계로 다양한 유형의 양육공백에 적절한 대응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양육시간에 대한 탄력적 선택이 가능한 개별 돌봄에 대한 수요 및 필요성이 증대한다고 볼 수 있다(이미화 외 2011). 김선미 외(2010)의 연구에서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서비스 이용자, 사업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이용시간의 부족으로 인해 자녀양육지원이 제한되고 아동이 방 치되는 상황이 발생하며 농촌은 농업생산의 특수성에 의해 농번기와 농 한기에 따른 아동 돌봄 양육욕구가 상이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또한 돌보미의 어려움으로는 활동기회와 총 활동 시간이 기대보다 낮은 경우 가 대부분이며. 그에 따라 고용불안과 소득 부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 다. 고선주(2012)의 연구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같은 보다 보편적인 지원 정책이 보다 일반적인 자녀양육지원에 더 합당한 정책일 수 있다고 하였으 며 홍승아 외(2013)의 연구에서는 양육수당을 보육료지원과의 대체적 관 계를 없애고 아동수당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의 서비스 질 향상을 제언한 바 있다.

남정은 외(2013)의 연구에서는 국내 언론기사를 바탕으로 내용분석을 통하여 자녀양육 양상이 과거에 비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 경제적 측면에만 강조를 둔 제한적인 자녀양육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자녀 양육지원의 사회적 인프라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환경 조성, 자녀양육 부담에 대한 경감, 보육과 출산 서비스의 질적수준 제고 와 같은 양육친화적 환경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환경이 미흡하다고 분석하였다. 즉 저출산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초점이 현재의 경제적 측면에서 벗어나 사회·문화적인 요소까지 고려해야하며, 자녀를 안심하고 출산하고 기를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의 사회적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 하였다.

즉,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요인을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해결하려는 것은 근본적인해결을 하긴 부족함으로 자녀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물적·인적 요소를 다 함께 고려해야하며 저출산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초점이 현재의 경제적 측면에서 벗어나 사회·문화적인 요소까지 고려하여 자녀를 안심하고 출산하고 기를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의 사회적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 시설서비스

맞벌이 자녀의 시설 이용 실태를 살펴보면(홍승아 외 2010), 현재 보육서비스 이용시간 1일 평균 8시간 56분, 희망이용시간 10시간 19분인 것으로 나타나, 희망이용시간이 실제 이용시간 보다 약 1시간 20분 더 이용하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자녀 중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81.3%를 차지하였으며, 이용하는 기관은 민간어린이집, 사립유치원,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 순으로 나타났다.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2012)에 따르면 맞벌이 여부별 최초 기관이용 월령은 맞벌이가 홑벌이보다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 시설이용 사유로는 맞벌이는 부모가 돌보기 어려움(39.9%)이 가장 큰 사유인 것으로 나타났고, 홑벌이는 사회성발달(32.8%)이 가장 큰 사유인 것으로나타났다. 즉 맞벌이가 홑벌이보다 돌봄의 부재 사유로 인하여 좀 더 빨리 시설 이용을 하며, 홑벌이의 경우 자녀가 어느 정도 자란 후 사회성 발달의 사유로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맞벌이 여부별 시설 이용 만족도 정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맞벌이

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비용에 대해 홑벌이보다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내용에 대해서도 홑벌이보다 맞벌이가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좀 더 비싼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질 좋은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주은 2012). 맞벌이여성은 돌봄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보았다.

맞벌이가 가장 필요하다고 느낀 정책으로는 보육·교육비 지원확대가 65.9%로 절반 이상이 보육의 경제적 지원을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고 응답하였다(이윤진 외 2010). 무상보육을 통해 시설 이용에 대한 보육·교육료 지원과 시설 미 이용에 따른 양육수당을 제공하면서, 맞벌이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던 무상보육이 실시되었다. 이로 인해 맞벌이가구 또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경험하고 자녀양육 선택의 폭은 넓어졌다.

장혜경 외(2009)의 연구에서 아동돌봄 실태 및 사각지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고, 장시간 근로 및 비정형근로로 인해 돌봄시간이 부족하고 서비스의 안정성, 근접성 등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김주연(2010)의 연구에서는 보육시설 이용 부모들을 대상으로 출산특성, 보육시설 이용 특성, 보육정책 방향에 대한 태도등을 분석한 결과 맞춤형 취약 보육시설을 우선 확대설치 해야 하며 보육환경, 프로그램, 안전과 위생 급식 개선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미화 외(2013)의 연구에서는 부모가 인식한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이 적절한 시기는 평균 26개월, 주중 등원 적정일수는 평균 3~4일, 하루 이 용적정시간은 만 0~1세는 3~4시간, 만 2세 이상은 6시간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아동발달 측면에서 과도한 시설이용은 부적합하다고 인식하면서도 맞벌이 가구의 경우 현실적으로 근로시간에 따른 양육공백 해소를 위해 시설이용시간에 대한 기대는 더 길어지는 상황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제2절 양육지원 정책과 일·가정 양립

사회의 경제발전과 여성의 교육수준의 발달함에 따라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 졌으며 이에 따라 사회는 여성의 노동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자녀 돌봄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실행함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하여 왔다(최상설·홍경준 2012). 우리나라의 자녀양육 지원정책에서 맞벌이 가구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차별적이고 독립적인 정책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주로 시설보육중심의 보육정책과 노동시장에서의 일·가정 양립정책의 측면에서 논의되는 상황이다. 김태홍 외(2009)의 연구에서는 일가정양립정책을 크게 휴가 · 휴직제도, 혹은 탄력근무제, 돌봄지원(보육)제도(직장어린이집 설치 · 운영, 방과후 아동지도 등)로 보았다. 휴가휴직제도와 탄력근무제 등의 정책은시간지원 측면이 강하고 돌봄지원 제도는 서비스지원 측면으로 이해될수 있다.

휴가 · 휴직제도는 출산휴가 · 육아휴직이 대표적이며, 맞벌이 여성(남성)의 제도 인식과 이용률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출산휴가 사용자는 2004년 38,541명에서 2012년 현재 93,397명으로 약 2배 이상의 이용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사용자는 2004년 여성 9,122명, 남성 181명에서 2012년 현재 여성 62,281명, 남성 1,790명으로 여성은 약 7배, 남성은 약 10배정도 이용률이 증가하여, 출산휴가 사용자에 비해 육아휴직사용자의 이용률이 급격하게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자의적 타의적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201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출산과 양육 친화적 직장환경에 따른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평균 휴직기간은 7.9개월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휴직사용을 꺼리는 이유로 회사눈치가 보여서 (30%), 회사복귀 어려워서(17.3%), 경제적인 이유로(22.6%)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오영희 외 2012).

휴가 · 휴직제도와 시간단축제도는 실질적으로 사회가 자녀양육에 돌 봄서비스를 제공한다기보다는 맞벌이 여성(혹은 남성)으로 하여금 노동 시장에 벗어나도록 하여 자녀양육시간과 기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직접적 인 사회적 돌봄이라고 보기엔 한계가 있다.

탄력 근무제는 일가정양립 정책에 대한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사용비율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나, 전체 여성노동자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에 있다(이미화 외 2011). 이미화 외(2011)는 1,338개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한 사업체는 14.1%에 해당하였으며, 실제로 활용하지 않는 비율로는 56.6%인 것으로 나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한 사업체가 적을 뿐만 아니라, 실제 활용률 또한 낮아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한편으로 정부는 '시간제 근로자 확대'를 통해 여성의 일가정양립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고용률 70% 로드맵」을 통해 공공부문의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2017년까지시간제 일자리의 93만개로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금재호 외 2013). 여성 노동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시간정책제도는 점차 확대될 측면이 강하다.

돌봄지원(보육)제도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있다. 직장어린이집은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가 500명 이상일 경우 의무설치사업장이 된다. 1993년 29개소에서 2013년 12월 현재 619개소가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나, 직장어린이집 개소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김은정 외, 2014). 김태홍 외(2009)의 연구에서 제시

한 일가정양립정책의 돌봄영역에 추가적으로 '아이돌봄 지원제도'를 추가할 수 있다. 아이돌봄 지원제도는 정부차원의 자녀돌봄 서비스 지원제도로 맞벌이 가구(장애부모 포함)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그간의 선행연구(홍승아 외 2013; 이정원 외 2012)에서 아이돌봄 지원서비스는 자녀양육정책의 일환으로 가정내 돌봄지원 서비스를 대표하여 왔다.

2013년 정부는 무상보육을 도입함에 따라 보편적 복지의 구현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보육제도를 실행시켰으며, 이를 통해 맞벌이 가구에 대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편적 복지의 틀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설이용자에게는 보육 · 교육료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시설 미이용자들에게는 양육수당을 제공함으로써 시설이용을 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이용자에 대한 지원금액에 비추어 양육수당의 수준이 형평적이지 못하다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있다. 경력단절을 경험한 대부분의 여성은 자녀를 맡아줄 주 양육자를 찾지 못하거나, 업무시간의 경직성과 절대 시간이 긴 장시간 근로시간으로 인해 육아와 일 병행에 어려움을 경험하여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옥 외 2014;류임량 2009; 박기남 2009).

소위 M자 모형으로 대변되는 여성의 경력단절은 결혼 전 활발한 경제활동참여를 하다, 출산 및 자녀양육으로 인하여 노동시장 이탈을 경험하고,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한 후 다시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형태를 의미한다(김태홍 외 2009). 박효진·은선경(2012)의 연구결과는 이러한 M자모형의 특성을 잘 설명해 준다. 경력단절에서 다시 재취업할 가능성이높은 집단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교육연수가 높을수록, 취학 자녀수가

많을수록, 미취학 자녀수가 감소할수록, 부모세대와 동거할수록,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의 부모세대 동거여부는 조부모의 자녀양육지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조계표 2014). 개인대리양육자의 여부는 맞벌이 여성으로 하여금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거나 혹은 경력단절 후 재진입을 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조주은(2012)은 맞벌이여성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통해 맞벌이 가구특성을 살펴보았는데, 맞벌이 여성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개인대리양육자를 확보한 것은 '그나마운이 좋아'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았다(조주은 2012).

선진국의 경우 학력수준이 낮은 여성은 일시적으로 출산이나 육아기에 경력이 단절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고학력 여성은 출산과 양육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는 비율이 높지 않은 실정이다 (배성희 2011, 재인용).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국내의 여성은 학력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여성들이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연구에서 국내 돌봄서비스에 관한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 졌으며 해당연구들이 다양한 정책적 제안을 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여전히 맞벌이 부부가 직면한 양육의 어려움은 크게 개선되 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도 무상보육실시 이후의 맞벌이 가구의 양육실태를 살펴보고 무상보육 실시로 인한 경제적 양육부담의 완화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고, 맞벌이 가구가 당면한 양육공백의 문제를 좀 더 깊이있게 분석함으로써 그동안 제시되었던 정책방안들안에서 구체 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3장 자녀돌봄 지원정책 변화와 현황

제1절 자녀돌봄 지원정책 패러다임 변화 제2절 국내 자녀돌봄 지원정책 현황

제3절 해외 정책 사례

3

자녀돌봄 지원정책 ((변화와 현황

제1절 자녀돌봄 지원정책 패러다임 변화

보육지원정책 패러다임 변화 분석1)은 문헌연구방법을 통해 시대별로 구분하여 자료를 분석하였고, 분석자료는 정부간행물과 언론보도자료를 활용하였다. 정부간행물들은 보육정책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지향성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활용하였고, 언론보도자료는 자녀돌봄 지원정책의 수요자들의 욕구가 자녀돌봄 이슈에 어떻게 투영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활용하였다. 보육과 관련된 이슈들을 파악하기 위해 언론보도자료를 검색할 때에는 2000년 이전까지에 대해서는 자료의 양이 많지않았기 때문에 '보육정책'이란 검색어를 인터넷에 입력하여 검색된 모든 결과물을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2000년 이후부터의 자료를 검색할 때에는 검색물의 양이 지나치게 방대함으로 인해 검색범위를 신문중에서 최대발행지로 한정하였고, 신문 중에서 경향신문, 한격레,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패러다임(paradigm)이란 특정한 시대의 사람들이 지닌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테두리로서의 인식의 체계, 또는 사물에 대한 이론적인 틀이나 체계로 정의된다. 패러다임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자인 T. Kuhn(1962)은 패러다임의 의미를 두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는데, 우선 그는 첫 번째로 패러다임을 범례(exemplar: 훌륭한 모범적인 업적)로 이해하고, 이를 '구체적인 업적이

¹⁾ 이 절의 내용은 이진숙이슬기(2013)의 글을 수정, 보완한 것임.

나 모델'의 의미로 정의한다. Kuhn은 패러다임의 두 번째 의미를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믿음들, 가치들, 전문기술들 등으로 구성된 집체(constellation)'로서, 포괄적인 인식적 구조의 의미로 이해한다(박영태 2011; 이진숙이슬기 2013, 재인용).

Kuhn은 하나의 패러다임은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해 완전히 대체될 수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서로 다른 두 패러다임은 근본적으로 모순되며, 서로 어울릴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패러다임의 구성요소들은 서로 하나의 전체를 이루어 함께 기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패러다임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다른 패러다임에 속하는 요소들과 조화될 수 없다고 보았다. Kuhn의 이러한 논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은 그 패러다임이 기존의 패러다임과 명확히 차별화되는 어떤 것을 제시해야만 가능한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Kuhn은 만약 기존의 패러다임이 어떤 현상을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이것을 새로운 패러다임이 기존에 효과적으로 설명해 온 현상들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되면 '패러다임의 전환(paradigm shift)'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Kuhn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회과학분야에서 패러다임이라는 개념은 정의하기가 모호하고(이명석 2007), 실제로도 다양한 의미로 혼용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자녀돌봄 지원 정책의 패러다임을 보육정책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에게 인식되는 일반화된 상징으로써 공유된 가치나 틀로 정의하고, 보육정책에 그것을 관통하는 어떤 일정한 경향성이 발견되면 이를 보육정책의 패러다임(이진숙이슬기, 2013)으로 규정하였다.

보육정책의 발달단계를 시대별로 구분하고, 소극적 탁아패러다임 (1953~1970년대), 취업모의 양육지원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선별적 패러다임 (1980년대), 민간중심의 보육사회화를 추구하는 시장 지향적 패러다임(1990

년대), 일-가정 양립에 초점을 둔 사회적 돌봄의 패러다임(2000년대), 보편주의적 무상보육 패러다임(2010-현재)시대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다.

1. 소극적 탁아패러다임(1953-1970년대)

우리나라에서 1950년대는 전쟁으로 인해 증가된 고아들과 빈곤가정의 아동들을 위한 보육서비스가 매우 필요했던 시기였다. 당시에 한국사회는 전후에 사회를 재건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던 시기였고, 그런 가운데에서 전쟁 중에 부모를 잃었거나, 가난으로 인해 부모로부터 방치된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에 대한 욕구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을 때였다. 전후에 아동돌봄 서비스는 주로 외국 선교단체들이 종교적인목적을 가지고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 설립한 아동양육시설들을 통해 제공되고 있었고, 일반 가정의 아동들의 돌봄을 위한 공적 보육서비스는 아직 전혀 토대를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당시에 우리 사회는 보육에 대한 관심보다는 경제를 재건하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보육정책에 대한 요구는 컸더라도 보육정책에 대한 집중도는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

이 당시의 보육정책을 살펴보면 1961년에 '아동복리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탁아시설의 설치기준, 직원배치기 준, 탁아기간, 서비스내용 등을 법적으로 명시하게 되었다. 당시에 주로 시설을 통해 제공되었던 탁아서비스는 중앙의 행정부서 중에서 보건사회 부가 관리와 감독을 담당하고 있었다. 보건사회부는 1968년 3월에 아동 복리법의 시행령으로 '미인가 탁아시설 임시조치요령'을 공포하였고, 이 를 통해 민간차원에서 빈곤가정의 유아를 돌보기 위한 탁아시설을 설치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였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탁아소의 명칭을 어린이집으로 변경하고, 어린이집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시설보조금 및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정계영 1995).

1960년대에 경제가 차츰 성장되면서 여성들의 경제활동도 눈에 띠게 향상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여성들은 아직 노동시장에서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하지는 못한 상황이었으며, 결혼이나 임신은 곧 직장의 포기 또는 퇴출로 이어지는 게 일반적인 실상이었다. 그로 인해 사회적으로는 여성들에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아동이라는 미래세대를 올바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탁아소와 보육시설을 증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차츰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아동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시설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어린이집의 기능이나 탁아소 종사자들의 자질 그리고 돌봄시설의 규정 등에 대한전반적인 문제점들을 점검하고, 허가가 없는 불법탁아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확산되었다(경향신문 1974. 04. 29).

당시에 정부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시작하였는데, 1970년대 후반에 어린이집의 수는 약 600개소를 초과하게 되었다. 어린이집의 양적 팽창은 시설서비스의 질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그런 가운데, 보육정책의 주무부서인 보건사회부는 어린이집의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7년에 미인가 탁아시설 임시조치요령을 폐지하였다. 그리고 이를 대신하여 보건사회부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시행규칙 제6조 2항을 개정하여 탁아시설을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1978년 4월에는 '탁아시설 운영개선 방안'을 발표하여 어린이집의 이용대상이 기존에는 빈곤가정이나 농어촌 지역의 아동 등으로 제한되던 것을 개선하였고, 이제는 일반가정의 유아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시켰다. 그러나 이때부터 일반 소득계층도 시설의 이용이 가능해진만큼 시설서비스의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이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시설돌봄이 곧 부모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당시의 정부는 '유아교육진흥법'을 제정하고, '유아교육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기존의 탁아시설들을 새마을유아원으로 통합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난립하고 있던 유아교육기관들을 정비하고, 이를 유치원과 새마을 유아원으로 이원화하였다. 이는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취학 전 아동을 위한 조기교육이 활성화되어야한다는 당시 정부의 인식으로 인한 것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는 정부가 유아교육을 대중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정계영 1995).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1970년대 후반에는 탁아와 관련된 입법활동이 매우 활발했는데, 이에 대한 이유는 어머니들의 취업이 차츰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과 관련이 있다. 사실 이 시기에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7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남성 취업률의 57%(통계청 1970) 수준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여성의 취업이 점진적이나마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돌보아야 할 아동수가 늘어났고, 그에 따라 탁아소의 확대를 요구하는 부모와 사회의 수요는 증가하였다(이진숙이슬기 2013). 결론적으로 1970년대의 아동돌봄서비스는 탁아라는 개념틀 안에서 요보호아동을 위한 사후적 개입의 차원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서비스의 이용대상과 서비스의 범위는 매우 한정되었다. 그리고 돌봄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돌봄서비스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구조는 형성되지 못하였다(이진숙이슬기 2013).

이상의 흐름을 종합해 보면 전후부터 1970년대까지의 시기는 보육과 관련된 입법을 바탕으로 요보호아동을 위한 시설돌봄의 필요성이 인지되 었고, 이로 인해 탁아소의 양적 팽창이 두드러졌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1961년부터 본격적인 자녀돌봄 지원정책으로서 아동복리법이 집행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구빈적인 목적으로 시행되었던 사업들이 주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대부분 외국의 원조에 의존하여 사업이 시행되었던 시기로 자녀돌봄 지원정책의 패러다임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였는가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아동의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사업들은 한편으로는 세계인권선언과 아동권리협약 등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세계적인 노력들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의 인권 신장 그리고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의 증가 등 여성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환경의 변화에 의해 다양하게 영향을 받았음이 드러난다.

1970년대까지의 자녀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을 살펴보면 이는 보육 또는 돌봄이라는 좀 더 포괄적이고, 가족 내의 정서적인 관계를 지지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기보다는 아동을 단순히 시설을 통해 보호하고 수용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추진된 맥락이 강했다. 그래서 전후부터 경제성장에 치중했던 이 시기는 돌봄의 목적이 아동에 대한 단순한 보호에 있었고, 아동의 돌봄서비스는 외국의 원조에 의해 민간을 중심으로 시행되었던 시기로 규정이 가능하다(이진숙·이슬기 2013).

2. 취업모의 양육지원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선별적 패러다임(1980년대)

1980년대는 기혼여성의 취업이 활발해져서 취업여성의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측면과 취업모의 자녀를 사회가 돌보아야 한다는 다른하나의 측면에 대한 주장이 본격화되었던 시기였다. 실제로 수치 상으로도 1975년 이후부터 1985년에 이르기까지의 10년 동안에 우리나라의전체 경제활동인구는 28%가 증가하였는데, 그 중에서 남성 경제활동참여인구는 23%가 증가했지만 여성 경제활동참여인구는 37%(통계청1985)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진숙·이슬기 2013).

1980년대에도 그 이전시기와 마찬가지로 역시 탁아소의 부족문제가 자녀돌봄 영역에서는 중요한 이슈로 부상되었다. 당시에는 증가된 출산율과 인구증가로 인해 탁아시설들의 공급은 수요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실제로 탁아기능에 대한 수요를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3세 미만의 유아들은 탁아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다. 1986년의 경우에 민간 사회단체가 주도적으로 운영했던 탁아전문시설은 10여 개소에 불과했으며, 이 시설들에서도 3세 미만의 영유아에 대한 돌봄서비스는 거의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들의 돌봄욕구를 해소하는 데에는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이 시기에는 정부가 탁아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지 못한 것도 돌봄지원정책의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의 하나인 한국여성개발원에서는 당시에 탁아시설은 경제적으로 비용부담이 가능한 중산층을 위한 것일 뿐이며, 생계활동을 위해 실제적으로 탁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들은 서비스로부터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탁아시설의 설치는 빈곤지역에서부터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탁아서비스의 유형 상으로는 직장탁아보다는 가정탁아가 바람직함을 제시하였다(매일경제 1986. 03. 19).

1981년에 정부는 아동복리법을 폐지하고, 이를 대신하여 '아동복지법'을 제정하였고, 이 법은 이제 탁아사업을 위한 근거법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은 법 내용에 탁아에 관한 어떠한 내용도 명시하고 있지 않았으며, 탁아에 대해서는 단지 부칙에 '이 법 시행 당시 도지사의 임시 인가를 받아 설치한 탁아시설은 이 법 시행 후 2년간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아동복지시설로 본다.'는 조항만 포함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므로 아동복리법이 아동복지법으로 대체된 것은 실제로는 큰 의미는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뒤,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대한 지원정책들은 행정전달체계상으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탁아사업을 전달체계적 측면에서 살펴 보면 기존에 보건사회부는 저소득가족을 위한 탁아시설의 운영에 초점을 두었고, 내무부나 농촌진흥청 등에서는 새마을운동의 차원에서 그리고 농촌가족을 위한 돌봄지원의 측면에서 각기 다른 형태의 탁아사업 전달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탁아전달체계는 업무별로 나뉘어 이원화되는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우선 정부는 1982년에 제정되었던 '유아교육진흥법'에 따라 아동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던 탁아소의 설치 근거를 삭제하고, 탁아사업을 기존의 주관부서이던 보건사회부의 소관업무에서 분리하여, 집행력과 재정동원능력이 강한 내무부로 업무를 이관하였다. 이를 통해 내무부는 내무부, 보건사회부, 농촌진흥청 등으로 나뉘어져 관리해왔던 탁아시설들을 새마을유아원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그리고 교육부는 유아교육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장학지도, 재정지원, 교사양성, 교재교구 개발 및 보급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이진숙·이슬기 2013).

전달체계의 이원화는 정부가 탁아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탁아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이제는 교육적 차원에서 공론화하고자 했고, 탁아 제도를 교육제도의 하나로 정착시킬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였다. 즉, 다시 말해 전달체계의 이원화는 당시의 자녀돌봄 지원정책이 보육보다는 교육에 방점을 두고 있었던 것을 드러낸 것이었고, 그렇기때문에 보육은 사회화 정도가 미흡하여 여전히 가족의 돌봄부담은 크게 남아있었다. 그리고 기존에는 탁아를 단순히 아동을 신체적으로 돌보는 보육활동으로 이해한 측면이 강했지만 이제는 탁아를 보육보다는 교육의 측면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자녀를 신체적으로 돌보는 것은 물론이고, 자녀를 교육적으로 잘 '가르치는 것'도 어머니의 책임으로 부과되었

다. 이로 인해 취업모들의 자녀돌봄에 대한 부담은 더욱 배가될 수 밖에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1989년에 저소득층의 맞벌이부부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공포하였다. 그리고 그 속에서 탁아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세칙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취업부모의 일-자녀돌봄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소득 맞벌이부부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해서는 탁아사업을 맞벌이가족의 욕구에 부합하도록 추진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지금까지 살펴 본 내용들에 의하면 1980년대에도 명시적인 보육정책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자녀돌봄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나 제도적 노력은 찾아볼 수 없었으나 취업여성의 문제나 아동의 양육에 대한 관심을 제도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의지는 차츰 형성되기 시작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취업모들이 늘면서 이들을 정책적 대상으로 하여 자녀의 돌봄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인지는 하였으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그들의 배우자 또는 가족 전체를 고려하여 구상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대다수 취업여성들이 직면하고 있던 직장생활과 자녀돌봄의 양립부담은 해결될 수 없었다.

3. 민간중심의 보육사회화를 추구하는 시장지향적 패러다임(1990년대)

1980년대 후반에 주로 여성단체들이 요구했던 탁아관련 법의 제정은 1991년에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됨으로써 실현되었다. 이 법은 영유아의 돌봄문제를 해결하고, 가족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제정되었는데, 이 법

에서는 탁아와 새마을유아원이란 기존의 용어를 대신하여 보호와 교육의 개념을 합한 의미를 담은 '보육'과 '보육시설'이란 새로운 용어가 사용되었다.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면서 이 법에 따라 그때까지 '유아교육진흥법'에 준하여 운영되어 왔던 새마을유아원은 유치원과 보육시설로 전환되어야 했다. 영유아보육법은 이원화되어 있었던 보육관련 행정주무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 하고, 보육시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 그리고 개인이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확대하였으며, 보육비용은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적 내용으로 담고 있었다(양옥승1996). 이는 보육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만큼 시설의 증가도 필요해지면서 정부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법으로 인해 보육서비스가 시장에 개방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부모들에게는 오히려 비용적인 부담만 늘게 되는 부작용이나타났다.

영유아보육법은 보육사업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뚜렷이 명시하고 있지 않았다. 그로 인해 주로 저소득층의 아동들을 돌보아 온 여성단체의 시범 탁아소와 새마을유아원 그리고 비영리 민간탁아소들은 재정적 어려움에 허덕일 수 밖에 없었다(동아일보 1991. 01. 28). 당시에 보육시설은 양적으로는 아직도 상당히 부족한 상태였으며, 그로 인해 보육시설의 대다수는 정해진 기준보다 과밀한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혜경 1997). 그러므로 시설서비스가 취업모의 돌봄욕구를 반영하기란 매우 어려웠으며, 남성의 역할을 변화시키기 위한 공적인 노력은 전혀 없었던 상황 속에서 기혼 취업여성들은 자녀돌봄과 임금노동의 이중부담으로 인한 갈등에 시달려야만 했다(한겨레 1992. 02. 28).

이상에서와 같이 1990년대에 시설인프라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돌봄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보육정책의 가장 우선적인 과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맥락에서 영유아를 위해 적합하고 전문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를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키우고, 부모들의 안정적인 경제적 또는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한 3개년 계획(1995-1997)이 발표되었다(변용찬 외 1998). 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한 3개년 계획은 1995년부터 1997년에 이르기까지 국가재정에서 약 1조3천억 원을 투·융자하여전국의 보육시설수를 7,590개로 늘리고, 취업여성들의 자녀돌봄 문제를해결하기 위하여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보육망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것이었다. 그리고 이 계획과 더불어 정부는 보육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에도 역점을 두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하여 내무부와 교육부 등 유관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보육사업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당시의 보육서비스는 양적인 확충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해 볼 수 있으나, 그것은 민간보육시장의 팽창으로 귀결된 것이었기 때문에 맞벌이가족이나 저소득층 또는 미혼모 등과 같이 보육서비스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가족들에게는 실질적인 효과가 매우미약했다. 그리고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보육사업은 그 초점이 보육교사와 시설에 대한 규제에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거시적인 방향성을 담고 있지 못했고, 자녀의 돌봄과 관련된 젠더역할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한계를 보였다.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하여 자녀의 돌봄을 위한 사회적 보육환경은 더욱 열악해 졌다. 그런데 이때부터 보육에 대한 책임은 개인이 아닌 국가가 져야 한다는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1990년대 초반부터 정부는 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한

돌봄시설의 양적인 확대에 주력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의 양적 팽창은 90%이상이 민간보육시설에 의해 충족되었고, 단기간 내의 수량적목표달성에 가치를 둔 것이었기 때문에, 보육의 질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충분하였다. 결국, 이러한 민간에 의존하는 시설서비스 공급정책들이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가장 중요한 저해요인이 되었다(이진숙·이슬기 2013).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저소득가족의 돌봄부담을 덜어주고, 일-가족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맞벌이가족의 자녀돌봄문제는 사회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확산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로 인해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단초가 된 것이다.

4. 일-가정 양립에 초점을 둔 사회적 돌봄의 패러다임(2000년대)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외환위기 이후로 부터 악화되기 시작한 가계 가 회복되지 못하고, 실직가족들이 늘어나면서 가족들은 출산과 양육에 대해 더욱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 보니 자연적으로 출산율도 매우 낮아지게 되었다. 정부는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한 가족의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보육으로 전환하기위한 노력을 시작하면서 당시의 보육관련 주무부서이던 여성부를 중심으로 하여 보육정책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동아일보 2001.12.26.).

보건복지부의 보육발전기획단은 2001년에 '보육사업 중·장기 종합발 전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종합적인 보육정책 계획이었다(백선희 2009). 이 계획은 보육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 고, 정부가 2010년까지 추구해야 할 보육비전을 제시하면서, 보육수요를 완전히 충족시키겠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 보육사업 종합발전계 획은 보육시설의 수를 확충하기 위한 계획만을 포함하고 있었던 것이 아 니라, 영아보육의 확충과 영아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영아전담교사 자격기준의 마련, 영아전담시설 및 교사의 지원 강화)을 제시함으로써 보육서비스 중에서 가장 취약한 상황에 있던 영아보육서비스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계획도 제시하였다. 그에 따라 영아전담 보육시설은 2001년의 95개소에서 2010년에는 1,000개소로 확충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되었고,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에 영아반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였다(백선희 2009 재인용).

보육사업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의 발표를 계기로 국가는 보육을 사회적 문제로 규정하게 되었고, 아동의 양육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사회적 책임으로 적시하였다. 또한 이 계획은 보육에 대한 정책적 관점으로 젠더관점을 도입하였다(이진숙·이슬기 2013). 이는 보육의 중요성과 책임을 정부가 인지하고, 돌봄문제의 해법을 젠더적 차원에서 찾으려고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당시의 정책 역시 그 이전시기의 정책과 다를 바가 없이 민간중심의 보육시설들만 양적으로 팽창시키는 결과를 야기하였고, 공공보육시설은 여전히 위축되어 있을 뿐이었다.

갈수록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증대되면서 2004년에는 영유아보육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는데, 이는 보육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고 평가될 수 있을 만한 사건이었다. 영유아보육법의 전면적 개정은 1990년도 중반 이후부터 보육수요가 급격히 확대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었는데, 이 개정법은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해 건강한 사회성 원으로 육성한다.'는 보편주의적인 보육이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내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법과 차별화되었다(이진숙·이슬기 2013).

2004년 3월에는 동법의 개정에 따라 보육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 가족부로 이관되었다. 이를 계기로 하여 영유아보육정책은 이제 양성평 등적 시각에서 미래의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여성들이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거나 취업중단을 겪는 일이 없도록 공보육체계를 확립하고자하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게 되었다(김호순 2003; 이진숙·이슬기 2013).

보육정책과 관련하여 2006년에는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새싹플랜)과 제1차 건강가정 기본계획 그리고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이 연이어 수립되었다.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은 보육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정책이 기존의 저소득층에 초점을 둔 선별주의적 보육에서 보편주의적 보육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보육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됨을 명시하면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제시하였다.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돌봄의 사회화를 핵심적 추진과제로 포함하고 있었다.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은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수반되는 어려움을 제거하여 가족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수립된 것이었다. 이 계획 또한 출산과 양육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이 가능할 수 있는 사회환경 구축, 가족 친화적이고 양성평등한 사회문화의 조성을 통해 출산과 양육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핵심적 목표로 제시하였다(이진숙·이슬기 2013).

'제2차 중장기 보육계획(새싹플랜)'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 특히 정부는 영아를 둔 취업모에게 영아반에 대한 이용비용의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였다.(여성가족부 2006; 이진숙·이슬기 2013). 당시의 정부는 보육을 보편적 복지의 관점(박의경

2007)에서 이해하고, 돌봄의 사회화에 대한 국가의 책임 및 역할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주도하였다. 그러나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이상과 같은 공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도 역시 국공립시설은 민간시설 에 비해 양적으로 열세에 있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 시기에 있었던 정책적 변화가 지니는 중요한 의의는 정부가 보육의 책임을 개인으로부터 탈피하여 국가로 전환하여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저소득층 중심의 선별적 복지로서 추진되어 오던 보육정책도 그 대상을 중산층까지로 확대하였으며, 시설의 양적 팽창에 주로 초점을 두었던 시각에서 벗어나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이진숙·이슬기 2013). 또한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 상의 현실을 고려하면서 아동의 돌봄문제는 아동의 성장이나 발달이라는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여성의 역할변화라는 측면과도 연결지어서 이해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보육을 젠더적 관점에서접근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관점의 전환은 보육의 사회화에대한 논의를 활성화시키고, 남성과 여성의 역할수행에도 긍정적인 많은변화를 야기하였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은 돌봄의 사회화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돌봄부담을 미약하게나마 경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정부는 보육수요의 급증으로 인해 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이진숙·이슬기 2013).

5. 보편주의적 무상보육 패러다임(2010-현재)

해당 시기에 보육정책이 기존의 정책과 차별화되는 점이 있었다면 그 것은 보육료가 서비스의 수요자인 부모에게 직접 주어지기 시작했다는 점일 것이다. 그리고 저소득가족을 위해 양육 수당도 도입이 되었다. 하 지만 이러한 보육지원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돌봄문제는 부모들에게 여전히 난제로 남아있었다.

당시의 영유아보육법은 무상보육특례를 포함하고 있었는데, 이에 따라 법은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부담 또는 보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04년에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70%, 2005년에는 80% 수준, 2006년에는 월평균소득의 90%이하, 2007년에는 가구평균소득 100%이하 모든 가구로 보육지원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다(이진숙·이슬기 2013). 그러나 보육전문가들은 정부가 보육비용의 전액지원 대상을 파격적으로 확대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할 만 하지만, 이러한 식으로 보육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자녀돌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는 효과가 없을 것이고, 오히려 중요한 것은 전체의 5.5%에 불과한 국공립보육시설의 부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지적하였다(한계 레 2010. 02. 22.).

보육 아젠다에 대해 중앙정부가 대응적으로 취했던 아젠다 전략을 시간의 흐름 순으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표 3-1⟩ 무상보육아젠다에 대한 정부의 대응

년도	정부
2010-03-22	무상급식 지원 대상자와 0~5세 보육 재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2010-09-16	보육비용 전액지원 대상을 전체 보육가정의 70%까지 확대하다고 발표
2011-02-01	'서민들에 대한 복지 강화해야' '보육 대상 하위 70%로 늘릴 것'
2011-05-02	내년부터 상위30%도 만5세 교육비 지원할 것
2012-01-19	내년부터 만3,4세 어린이가 유치원,어린이집 다니면 부모소득 관계없이 매달 22만원 지원, 현재 소득 하위 15% 차상위계층에만 주는 양육수당 도 하위 70%까지 확대
2012-07-03	현행 0~2세와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전액 지원되는 무상보육 지원을 재 검토, 소득별 선별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

년도	정부
2012-07-19	무상보육 재원부족분 국비 2천80억원 추가지원
2012-09-13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13일 지방보육료 부족분에 대해 중앙정부가 4351억원, 지자체가 2288억원을 부담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

출처: 이진숙(2012)에서 재구성.

2010년부터 2012년 까지 진행된 보육아젠다 형성과정은 일단 무상보육에 대한 담론의 획기적 성장이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리고 공공성의 담보를 위한 보육재정의 증대라는 측면에서도 이는 부정적이지 않았다. 〈표 3-2〉에서 볼 수 있듯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보육예산은 매년마다 큰 폭으로 증가되었는데, 특히 2011년에 대비하여 2012년에는 보육예산이 22.2%가 증가됨으로써 무상보육을 실현하기위한 토대가 다져지고 있었다.

(표 3-2) 2012년 보육예산

(단위: 백만원, %는 2011년 대비 증가율)

구 분	2010년 결산	2011년 예산	2012년 예산
계	2,128,472	2,478,380	3,028,567
어린이집 운영지원	378,424	395,023	423,153
영유아보육료지원	1,632,204	1,934,611	2,391,291
어린이집 기능보강	9,438	14,650	11,867
보육 인프라 구축	13,143	16,250	15,377
어린이집 평가인증	4,122	4,975	6,026
어린이집 지원	55,093	23,077	78,207
양육수당 지원	33,726	89,794	102,646

주: 2012년 예산에 만 5세아 무상보육 예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출처: 참여연대(2012), p.8.

결론적으로 0-2세의 아동들을 위한 무상보육은 시민 사회나 여성계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갑작스런 정치권의 결정(백선희 2012)에 의한 것이었다고 규정할 수 있다. 즉, 무상보육은 보육의 사회화라는 측면이나 부모간의 돌봄 분담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기획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정치성에 의해 급속하게 방향이 전환된 결과였기 때문에 특히 재정의 분담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은 피하기 어려웠다. 또한 보육서비스의 공급주체에 대한 논의과정에서도 시설의 국공립화를 통한 공공성의 확보를 지지하는 담론은 매우 한정적이었다. 201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국공립 보육시설은 전체 보육시설의 약 5.3%에 불과하여 보육은 아직도 지나치게 민간시장에 의존적인 지형을 드러내고 있었다.

2014년에도 정부의 무상보육에 대한 의지는 지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출산율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재정은 부족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공시설의 확대가 진척되지 못하는 한계를 지적하며,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보육단가 인상, 교사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해 민간 시설의 질적 제고를 주장하고 있다(중앙일보 2014. 02. 12).

우리나라에서 보육비용과 맞벌이부부의 증가로 인한 자녀돌봄의 어려움은 저출산현상을 부추겼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등장한 무상보육정책은 정책에 내재된 한계점들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부모들은 서구 복지국가에서나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복지에 대한 열망과 대리적 돌봄서비스의 제공 및 보육비용의 경감이라는 현실적 이해에 직면하면서 무상보육에 대해 절대적 지지를 표출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무상보육은 우리나라에서 보육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은 촉매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이진숙·이슬기 2013). 따라서 무상보육정책의 경우에는 정책대상의 적합성과 공적 재정

부담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전면적으로 보편주의를 추구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정책도입의 배경에 도사린 정치성과는 상관없이 매우 의미있는 현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국내 자녀돌봄 지원정책 현황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자녀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은 정부 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본격적인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2006년 수립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들 수 있다. 이후 제1 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체계 확립'을 위해 2010년 제2차 기본계획 ('11~'15) 수립을 추진하였으 며 제 2차 기본계획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성장 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 개선, 저출산고령사회 대 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의 4가지 정책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산과 양 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 정책의 중점과제는 일과 가정 양립 일상화,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으 로 구분된다. 이들 중 본 절에서는 시설양육지원 정책으로서 무상보육정 책 현황을 살펴보고, 가정양육지원 정책으로 양육수당과 아이돌보미 지 원사업 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무상보육교육비 지원과 양육수당은 전계 층을 대상으로 보편적 복지 수단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양육지원 정책의 핵심정책으로 볼 수 있는 것에 반해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은 규모 및 대상을 고려할 때 국내 양육지원정책으로서의 역할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사업에 대한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이라는 측면과 국내 시설보육 중심의 지원 정책 하에서 양육수당 이외 에 가정보육을 지원하는 유일한 공적 서비스로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큼 에 따라 해당정책의 확대와 개선을 지향하는 의미에서 보육교육비 지원, 양육수당 정책과 함께 다루고 있다.

1. 보육·교육비 지원2)

그동안 정부는 보육료 지원 대상 및 연령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오다 2013년도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보육료 지원정책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정책은 어린이집에 국한되지 않고 유치원 이용의 경우에도 유아학비가 지원되도록 하였다. 연령별 보육료 지원 단가는 〈표 3-3〉과 같다.

(표 3-3) 보육료 지원 현황 (2014년)

지원대상	тіоіціо	연령	지원단가			
시전네경	지원비율	118	종일	야간	24시	
	100%	0세	394,000	394,000	591,000	
		1세	347,000	347,000	520,500	
어린이집		2세	286,000	286,000	429,000	
이용 만 0~5세		3세	220,000	220,000	330,000	
		4세	220,000	220,000	330,000	
		5세	220,000	220,000	330,000	

출처: 보건복지부, 「2014 보육사업안내」

유아학비 지원은 만 3~5세 아동이 어린이집 대신 유치원을 이용할 경우 지원되는 것으로 국·공립 유치원을 이용할 경우 60,000원, 사립 유치원의 경우 보육료 지원과 동일한 금액 220,000원이 지원된다. 또한 방과후 과정에 대해서 국·공립 유치원은 50,000원, 사립유치원은 70,000원

²⁾ 보건복지부(2014). 보육사업안내

까지 추가로 지워되도록 하고 있다.

정부지원보육료는 원칙적으로 부모가 아이사랑카드를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되도록 하고 있으며 보육료 지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료 지원 신청일자보다 어린이집 입소일 이 늦은 경우에는 입소일을 신청일로 보고 지원하고 있다. 만4~5세 보육 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전액 부담하며, 만3세 보육료는 국비, 지 방비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함께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만 0~5세 보육료·교육료 지원이외에 장애아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방과후 보육료, 시간연장형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장애아 보육료의 경우, 만 0세~만12세 미취학 장애아를 대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미취학 만5세이하 장애아동으로 하되,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 장애아가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에도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만 6세 이상 만12세까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아 보육료 또한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있다. 지원단가는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특수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394,000원이며,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과 동일한 금액이 지원되고 있다.

다문화 보육료의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 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0세~만5세아로 하되일부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며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단가는 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와 동일하다.

방과 후 보육료는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

되는 취학아동이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하고 있다. 지원단가는 일반아동의 경우 월 10만원(일일 4시간미만 이용시 미지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지방비)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 아동의 경우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 후 및 장애 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해서 보육할 경우 장애 아 보육료의 50%(197,000원, 국비+지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교사대 아동비율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 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월 10만원, 정부미지원시설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만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일반아동의 지원단가는 월 20만원이며 장애아동은 장애아보육료 100%를 지원하고 있다.

시간연장형 보육료는 시간연장, 야간, 24시간, 휴일보육료를 포함하며 시간연장 보육료의 경우 기준시간 초과(19:30~24:00)에 대해서 시간당 2,700원, 장애아동은 3,700원(연령에 관계없이 동일)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월 지원한도액은 60시간에 한한다. 토요일의 경우 적용시간은 15:30~24:00로 한다. 야간보육(19:30~07:30)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한해 야간보육료가 지원되며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야간 보육료 지원은 월 보육료 지원단가와 동일하게 지원되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보육을 할 수 있다. 24시간 보육료지원의 경우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한 24시간 보육료를 지원하며 지원단가는 보육료 지원단가와 동일하다.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는 경우 시간제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시간제 보육이라 함은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부득이한

경우에 비정기적으로 보육을 받는 경우를 말하며 지원대상은 미취학 영·유아 중 법정저소득층 및 장애아동으로 각각 3,000원, 3,900원이며 시간 제보육료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의한 지급처리가 안되므로 해당 시·군·구에서 수기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보육비·교육비 지원정책이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가구의 양육지원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 특히 양육의 어려움을 크게 경험하고 있다. 이는 비용지원측면과 함께 육 아지원 인프라 확충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2.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부모의 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과 이용하는 아동 간의 '형평성'을 기하고 궁극적으로 아동의 건전한 성장발달 지원과 양육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정책목표를 두고 있다 (유해미 외 2011; 이정원 외 2012). 2008년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으로 제34조 제2항에 의거하여 시설서비스(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을 대상으로하여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09년 양육수당의 도입 이후 매년 정책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2009년 처음 도입당시 차상위 계층(최저생계비 120%)을 대상으로 아동의 연령이 만 0~1세(24개월 미만)인 경우월 10만원을 제공하였다. 2011년 아동의 연령을 0~2세(36개월 미만)로 확대시켰으며, 지원금액 또한 연령별 10~20만원으로 확대하였다. 2013년 미취학 아동의 시설보육에 대한 '무상보육'이 실시됨에 따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또한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계층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게 되었고, 아동의 연령을 만 0~5세(취학 전)로

확대하였다.

양육수당은 가정내 보육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양육수당의 이용자는 대부분 홑벌이일 가능성이 높다(홍승아 외 2013). 그러나 맞벌이 중 아동을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혈연(할머니)이나 베이비시터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 양육수당의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영아의 경우 개인대리 양육(베이비시터 등)에 대한 욕구가 높은 만큼 맞벌이 부부의 양육수당 활용이 가능하다.

양육수당 지원 금액은 부모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0~5세 이하의 아동의 연령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제공되고 있다 (표 3-4).

〈표 3-4〉 양육수당 지원금액 (2014년)

양육	수당	농어촌양육	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개월	지원금액	개월	지원금액	개월	지원금액	
0~11개월	200,000원	0~11개월	200,000원			
12~23개월	150,000원	12~23개월	177,000원	0~35개월	200,000원	
24~35개월	100,000원	24~35개월	156,000원			
36~84개월	100 0009]	36~47개월	129,000원	36~84개월	100 000 9]	
미만	100,000원	48~84개월 미만	100,000원	미만	100,000원	

출처: 보건복지부, 「2014 보육사업안내」, p.325

만 0세인 경우 20만원, 만1세인 경우 15만원, 만2~5세까지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제공된다. 농어촌 양육수당의 경우 일반아동 양육수당보다 다소 많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으며 장애아동의 경우 36개월 미만 월20만원, 36개월~84개월 미만의 경우 일반아동과 마찬가지로 월10만원을 제공하고 있다. 양육수당은 매월 25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에 지급하고 있으며 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을 통한현금지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점차 대상을 포괄적으로 수용하게 됨에 따라 양육수당을 지급 받는 아동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3-5). 특히 2013년(1,053,071명)은 2012년 (92,818명) 대비 10배이상 수급아동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소득수준에 따른 급여기준을 없애고, 아동의 연령을 확대함으로써 그 대상자가 획기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3-5⟩ 연도별 양육수당지급 대상 현황 변화

(단위: 명)

년도	0~11 개월	12~23 개월	24~35 개월	36~47 개월	48~59 개월	60~71 개월	72~ 취학전	전체
	24,447	27,391	-	-	-	_	-	51,838
2010	(47.2)	(52.8)						(100.0)
	(5.5)	(6.2)						
	36,662	38,450	14,644	-	-	-	-	89,756
2011	(40.8)	(42.8)	(16.3)					(100.0)
	(8.1)	(8.2)	(3.3)					
	35,514	40,997	16,307	-	-	_	-	92,818
2012	(38.3)	(44.2)	(17.6)					(100.0)
	(7.6)	(8.7)	(3.5)					
	382,327	345,442	143,948	62,526	37,977	40,137	40,714	1,053,0 71
2013	(36.3)	(32.8)	(13.7)	(5.9)	(3.6)	(3.8)	(3.9)	(100.0)
	(90.7)	(71.0)	(30.4)	(13.2)	(8.0)	(8.6)	(8.2)	

주: (%)는 각 해당년도 주민등록 인구 통계상 해당연령의 영유아중 양육수당 지급 대상 영유아의 비율을 의미함.

출처: 보건복지부, 각 해당년도 「보육통계」. 행정안전부, 각해당년도 「주민등록인구통계」

전체 양육수당 지급 대상 아동의 69%가 23개월 이하 영아에 집중되어 있으며, 2013년 0~11개월 영아 382,327명은 주민등록 인구 '13년생 421,465명의 90.7%에 해당해 거의 대부분의 영아가 양육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개월 이하 영아의 양육수당 지급 비율을 비

추어 볼 때 영아기 자녀의 가정양육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은 것을 알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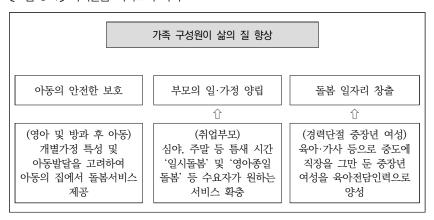
2013년 현재 양육수당의 연령을 만5세까지 확장했음에도 주로 만0세에서 1세가 양육수당의 지급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0세의 경우 양육수당 지급대상이 382,327명인 것으로 나타나, 수급대상 중 가장 많이 받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세 아동은 345,422명, 그 다음으로는 만2세인 아동이 143,94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선행연구(이미화 외2013; 이정원 외 2012; 백은주 외 2011)들과 동일하게 영유아기 아동에대한 가정 내 개별보육서비스 욕구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영아기에 대한 가정양육 선호도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보육 이용자와 형평성 측면에서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 가정양육에 대한 부 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양육수당을 좀 더 현실화 하여 시설보 육 이용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3. 아이돌봄 지원사업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개별 양육형태의 서비스를 통해 맞벌이 부모의 양육 경감 및 개별 양육을 희망하는 수요에 탄력적 대응, 경력단절 중장 년 여성의 고용증진, 취약계층의 육아 역량강화를 하고, 궁극적으로는 가족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시키고자 함에 있다(아이돌봄 지원법 제1조, 그림 3-1).

[그림 3-1] 아이돌봄 서비스의 목적



출처: 여성가족부, 「2014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시범적으로 운영되었던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점차 그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전국사업으로 발전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상은 한부모 및 맞벌이 등 취업부모의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06년 정부는 천안과 울산 2개의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시범사업을 하였고, 2007~2009년을 거치면서 점차 정부차원의 개별보육서비스 형태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2007년에는 이용대상에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이돌봄 사업 및 장애아 가족 아동양육지원 사업'으로 확장시켰으며, 38개소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실행하였다. 2008년 아이돌봄 사업의 규모를 추가적으로 확대하여 지역건강가정지원센터 65개소에서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실시하였다. 2009년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아이돌봄 사업과 장애아 양육지원 사업을 분리시킴으로써 개별보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2010년에는 '영아 종일제' 신규사업을 실시하여,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별보육 수요가 높은 영아에게 서비스 시간을 확대하였다. 2012년 8월 2일 아이돌봄 지원법을 제정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원대상을 '2011년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70%이하 대상'에서 '2012년 모든 취업 부모 대상으로 확대함으로써 맞벌이 부부에 초점을 맞추고자하였다(여성가족부 2014).

아이돌봄서비스는 기존에 선착순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나, 맞벌이의 서비스 욕구를 반영하여 우선순위를 취업모 중심으로 개편하였다(표 3-6). 이를 통해 형평성간 균형을 유지하고 대기기간을 축소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다만 예산 등의 이유로 1순위에서 마감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가정의 2순위 까지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는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표 3-6〉아이돌봄 서비스의 우선순위

구분	저소득	일반가정
취업모	1순위	2순위
홑벌이	3순위	4순위

출처: 여성가족부, 「2014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책 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만 12세 이하 아동을 필요한 시간만큼 돌보는 '시간제 돌봄'과 생후 24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 돌봄'으로 구분되어 제공된다. '시간제 돌봄'의 지원시간은 1회 이용 시 2시간 이상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연간최대 480시간까지 사용 가능하다. 초등학교 방과 후 아동은 연간 최대 720시간까지 이용시간을 확대하여 보육공백을 줄이고자 하였다. '영아전일제 돌봄'지원 시간은 1일 최소 6시간 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월간 120시간에서 200시간 이내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표 3-7).

〈표 3-7〉아이돌봄 서비스의 지원대상 및 서비스 시간

구분	시간제 돌봄	영아 전일제 돌봄
지원대상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	만 3개월 이상~ 만 24개월 이하 영아
지원시간	1회 2시간 이상 사용원칙, 정부지원시간: 연간 480시간 이내 * 나홀로 방치되는 초등학교 방과후 아동은 720시간까지 정부지원	1일 최소 6시간 이상 사용원칙, 정부지원시간: 월 120~200시간 이내

출처: 여성가족부, 「2014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사업서비스의 이용요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나,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정부지원시간을 초과하는 아동은 시간제'라'형으로 제공된다. 시간제의 경우 '라'형은 부모가 전액부담하나, 종일제의 경우 '라'형의 경우에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해서 보편적 지원 서비스로서의 성격이 한층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시간제 '라'형은 본인부담이 100%이기 때문에 센터의 예산운용이 실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라'형 서비스제공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해당센터에서 예산집행율에 신경을 쓰는 경우 시간제 '라'형서비스 제공이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으며 '라'형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센터에 등록된 돌보미가 충분해야 한다는 한계를가지고 있다. 일반가정의 '라'형에 대한 아이돌보미 수요는 많은 상황이면 경우 이용자들은 국가에서 돌보미(베이비시터)를 관리한다는 이유로 해당서비스에 대한 신뢰감이 증대된 측면이 있다.

〈표 3-8〉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및 본인부담금 (2014년 기준)

소득기준('14년) 유형 (전국가구 평균소득,		시간제		종일제 0세 (15개월 이하)		종일제 1세 (16~24개월)	
110	4인 기준)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가형	50% 이하 (월 241만원)	4,250원	1,250원	75만원	35만원	70만원	40만원
나형	50~70%이하 (월 338만원)	2,250원	3,250원	65만원	45만원	60만원	50만원
다형	70~100% 이하 (월 483만원)	1,250원	4,250원	55만원	55만원	50만원	60만원
라형	100%초과	-	5,500원	45만원	65만원	40만원	70만원

출처: 여성가족부, 「2014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종일제 라형의 경우 또한 점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지원금이 양육수당과 중복은 되지 않으나 현장에서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격고 있는 상황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했을 때 아이돌보미의 예산 편성과정에서 종일제와 시간제를 나누어 예산편성을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종일제와 시간제의 예산집행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센터의 평가를 위해서는 이용가정의 수를 높여야 하며, 평가기준으로만 본다면 종일 제보다 시간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센터 실적평가에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지역별로 아이돌보미에 대한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요구된다.

〈표 3-9〉 2013년 시간제 이용가구 유형 현황

(단위: 가구)

Ξ	구분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장애 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 담가정	일반 가정	계
	가형	2,632	15	343	9,547	3,597	887	3,939	20,960
	나형	18	0	23	3,578	819	184	839	5,461
빈 도	다형	14	0	15	2,835	543	112	659	4,178
工	라형	252	18	24	8,211	738	47	7,811	17,101
	계	2,916	33	405	24,171	5,697	1,230	13,248	47,700
	가형	12.6	0.1	1.6	45.5	17.2	4.2	18.8	100.0
	나형	0.3	0.0	0.4	65.5	15	3.4	15.4	100.0
비	다형	0.3	0.0	0.4	67.9	13	2.7	15.8	100.0
율	라형	1.5	0.1	0.1	48	4.3	0.3	45.7	100.0
	계	6.1	0.1	0.8	50.7	11.9	2.6	27.8	100.0

출처: 여성가족부, 「2013 아이돌봄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의 주 이용 층은 맞벌이 가정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라'형의 경우 일반가정의 비율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는 일반가정에서도 시간제 아이돌보미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10〉 2010-2013년 가구유형에 따른 영유아 종일제서비스 이용현황

(단위: 가구)

구분	연도	한부모 가정	장애 부모가정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양육 부담가정	계
	2010	31	_	451	-	-	482
빈도	2011	118	28	5,334	842	44	6,366
건도	2012	40	7	1,900	401	-	2,348
	2013	15	7	2,820	490	361	3,693
비율	2010	6.4	-	93.6	-	-	100.0
	2011	1.9	0.4	83.8	13.2	0.7	100.0
	2012	1.7	0.3	80.9	17.1	-	100.0
	2013	0.4	0.2	76.4	13.3	9.8	100.0

출처: 여성가족부, 「2013 아이돌봄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의 주 이용 층 또한 맞벌이 가정인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용가구수가 2011년도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에 해당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른 증가로 이해되며 그이후 지원대상 기준이 전국가구소득으로 조정됨에 따라 이용가구의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이해된다.

(표 3-11) 2010-2013년 소득유형에 따른 종일제서비스 이용현황

(단위: 가구)

구분	연도	가형	나형	다형	라형 ¹⁾	계
빈도	2010	63	9	7	45	124
	2011	599	299	217	89	1,204
	2012	443	685	463	757	2,348
	2013	967	604	742	1,380	3,693
비율	2010	50.8	7.3	5.6	36.3	100.0
	2011	49.8	24.8	18.0	7.4	100.0
	2012	18.9	29.2	19.7	32.2	100.0
	2013	26.2	16.4	20.1	37.4	100.0

주: 2010년, 2011년의 라형은 '초과'유형으로 전액 본인부담한 이용가구수임(영유아가구소득 70%이상)

출처: 여성가족부, 「2013 아이돌봄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2010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의 주 이용 층은 '가'형과 '라'형이었으나 점차 '가'형의 이용비율은 줄고 '라'형의 이용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나타났다. 2011년 '라'형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한 이유는 해당년도부터아이돌보미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전체 이용가구수가 큰 폭으로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라'형(2011년 당시 '초과유형')의 이용비율이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라'형에 대한 정부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이용자가 증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라'형의 비율변화가나타난 것으로 이해된다.

제3절 해외 정책 사례

1. 프랑스

프랑스 보육제도의 기조를 살펴보면, 취업부모에 대한 지원과 모든 아동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 주고자하는 기조를 갖고 있으며(차선자 외2010)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일찍부터 공보육서비스가 발달하였다. 교육과 보육의 일원화 형태를 띠고 있으며, 특히 3-6세 아동의 보편적인 조기교육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다(홍승아 2005).

프랑스의 보육체계는 만0~2세의 영아보육과 만3~5세 유아교육으로 이원화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국내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연령에 따라 보육지원을 관할하는 부서가 달라진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만 0~2세 영아보육의 관할하는 부서로는 고용·노동·건강부(Ministére du Travail, de l'Emploi, et de la santé)이며, 만 3~5세의 유아교육은 교육부(Ministére de l'éducation nationale)로 나뉜다(신윤정 2012).

2010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취업모를 대상으로 만 0~2세에 대한 지원에 따른 국가지출현황 비율을 살펴보면 〈표 3-12〉와 같다. 육아휴직을 제공하여 부모가 직접 아동을 돌보도록 하는 비율은 24.4%, 시설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31.5%, 개인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32.1%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 3~5세에 대한 지원을 살펴보면, 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은 90.0%인 것으로 나타났고, 개인보육사에 대한 지원 7.0%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에 대한 보육지원은 다양한 양육지원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골고루 분포 되어 있으며, 유아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유치원에 대한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맞벌이 여성으로 하여금 비교적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 육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다고 볼 수 있다.

〈표 3-12〉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 지출비율 현황 (2010)

(단위: %)

구분	0~2세	3~5세
육아휴직수당	24.4	-
개인보육사	32.1	7.0
보육시설	31.5	1.0
유치원	4.2	90.0
세제상 혜택	7.8	2.0
계	100.0	100.0

출처: 신윤정 (2012). 저출산에 대응한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방안, p.73

부모 중 한사람이 3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기 위해 노동을 중단하거나 노동시간을 감축하고 가정에서 (전적 혹은 부분적으로) 양육할 경우양육수당 (allocation parentale d'education)이 지급되며, 아동이 3세가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홍승아 2005). 2012년 기준으로 양육수당은 월 383.59유로를 받을 수 있고, 기초수당을 받지 않는 가구는 월 566.01유로까지 받을 수 있다.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 월 247.98유로를 받을 수 있으며, 기초수당을 받지 않는 가구는 월 430.40유로를 받는다. 근무시간의 50~80% 정도를 일하고 있는 경우는 월 143.05유로를 받으며, 기초수당을 받고 있지 않으면 월 325.47유로를 받을 수 있다 (이정원 외 2012, pp.89).

만 0~2세의 자녀를 가진 가구가 시설보육을 이용할 경우, 맞벌이는 종일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홑벌이(전업주부)는 일시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설 보육의 이용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영아(만0~2세)의 10%가 시설 보육을 이용하며, 종일제 맞벌이부부는 18%가 시설 보육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윤정 2012).

프랑스의 보육시설은 크게 집단 보육시설(accueil collective)과 가족 보육시설(accueil familial)로 나뉜다(신윤정 외 2012). 집단 보육시설 은 일반적인 유형의 보육시설로 시설에 소속된 일정조건의 자격을 갖춘 양육자가 영유아를 돌보는 보육시설이다. 가정 보육시설은 보육서비스 이용자의 부모이거나 개인 보육사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특정시간 동안 보육시설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보육시설을 의미한다.

집단 보육시설은 집단 어린이집(créches collectives), 일시 어린이집 (haltes garderies), 놀이방(jardins d'enfant)으로 나뉜다. 집단 어린이집은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3세 미만의 영아를 정규적인 방법으로 보육하는 시설이며, 일시 어린이집은 전업주부가 일시적으로 아동을 맡겨야 할때 6세 이하의 영유아를 부정기적으로 보육하는 시설이다. 놀이방은 2~6세의 영유아 혹은 취학 아동을 방과후에 시간제로 돌보는 보육시설이다.

만 0~2세의 자녀를 가진 가구가 이용하는 개인보육서비스는 대표적으로 가정보육모(Assistante matemelle)와 가정 내 보육사(grade à domicile)로 나뉜다. 가정보육모는 만 6세 미만의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보육제공자의 집에서 4명까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며, 수당의 지급은 영유아의 연령과 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3세 미만의 경우 가정보육모 월급의 85%를 정부가 지원하며 나머지 금액을 지불한다. 3세 이상은 지원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이미화 외 2011). 가정보육모의 법적 지위는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직업으로서의 권리보장, 자격인증절차 및 교육시간, 가정보육모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명시함으로써 전문직업인으로써의 역할을 보장받는다(오은진·노대명 2009). 특히 보육시간이나 보육아동의 수, 나이에 따라 가정 보육모의 자격 인증이 달라진다. 자격인증은 시·도 의회장의 권한으로 주어지며, 자격인증기간은 5년이다(백선희 외 2008). 가정 내 보육사 또한 가정보육모와 동일하게 가구소득 수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 서비스제공 장소는 서비스제공자가 보육이용자의 집에 직접 와서 아동을 돌본

다(신윤정 2012). 가정내 보육사는 가정보육모와 달리 자격기준을 받기위한 사전 교육을 특별히 받지 않아도 되며 가족수당기금의 재정지원을 받거나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미화 외 2011).

만 3~5세 유아 보육지원을 살펴보면, 프랑스 만 3~5세 유아의 98%가 유치원을 취원하고 있으며 수요일을 제외한 주중 오전 9시 30분부터 오 후 4시 30분까지 낮시간 동안 교육이 이루어진다. 원래 유치원(école maternelles)은 19세기 소외아동을 위한 자선프로그램으로 시작하여 20세기 중반부터 현재 형태인 유치원으로 전환되었다(홍승아 2005). 유 치원이 운영되지 않는 시간에는 방과 후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 분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경우가 많다(신윤정 2012). 신윤정(2012)의 연구 에 따르면, 2007년 기준 부모가 맞벌이인 경우, 대다수의 여성이 수요일 에 휴가를 사용하여 자녀를 돌보는 경우가 많으며, 유치원 이용자의 73% 가 수요일에는 직접 아동을 돌본다고 보고하고 있다. 방과 후인 오후 4시 30분부터 저녁 7시까지의 경우 유아의 83%가 부모와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고, 과외의 수업을 듣는 경우는 7%, 조부모가 돌보는 경우 는 5%, 보육사가 돌보는 경우는 2%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학전 아동이 유치원의 휴일이나 방과 후에 부모가 직접 돌보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교 육이 아닌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유치원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되며, 재 원은 교육부가 65%, 지방정부가 35%를 부담하여, 학령기 전까지의 교육 비용에 대한 부담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홍승아 2005).

2. 일본

일본의 보육서비스는 선별적 복지로부터 시작된다. 저출산을 일찍 경험한 일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육정책적 접근을 오랜 기간 동안 추진하여 왔다. 엔젤플랜(1995~1999)과 신엔젤플랜(1999~2004) 등을 거치

면서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여 왔다. 이러한 일본 보육정책의 기조는 기혼여성 근로자가 출산하고 자녀를 안심하여 양육할 수 있도록 보육정책을 지원하는데 있다.

일본의 보육서비스를 살펴보면, 시설서비스는 인정보육원, 연장 보육, 휴일 보육, 야간 보육, 특별보육, 아픈 아이를 위한 일시보육 등이 있고, 재택서비스로는 개별 베이비시터, 가정보육모 등이 있다.

〈표 3-13〉 일본의 보육서비스

구분		사업내용
	인정보육원	부모의 근로시간 동안 양육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영아에게 제공
	연장보육	11시간 이상 보육서비스 제공
	휴일 보육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보육서비스 제공
시설	야간 보육	22:00시까지 보육서비스 제공
	특별 보육	파트타임 등에 종사하여 자녀를 돌보는 것이 여의치 않는 경우 주당 2~3회 보육서비스 제공
	아픈 아이 일시 보육	병 회복기에 있는 영유아를 보육소, 병원, 아동의 자택 등에서 일시적으로 보호
재택	베이비시터	취업모에 한하여 정부 및 사업주의 지원으로 협약된 협회를 통해 개별 베이비시터를 고용할 수 있음
	가정보육모	보육자의 자택에서 3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함

출처: 이삼식(2014), 이미화(2013)를 재구성함.

시설보육은 인가보육시설과 인가외 보육시설로 구분되는데, 아동복지법에 의해 인가보육시설은 모두 비영리 복지시설로 국공립시설(53%), 법인시설(47%) 등으로 구성된다(이삼식 2014). 절반정도의 인가보육시설은 민간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39조는 보육결여 아동에 대한 우선적인 보육제공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취업모에게 인가보육시설의 입소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진다(서문희 2008). 종일제 인가보육시설의 입소순위를 살펴보면(동경도 세다가야구 기준), 출

퇴근 근무, 재택근무, 출산 질병 장애, 개호, 재해, 구직, 기타 순으로 입소순위를 둠으로써 취업모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가외 보육시설은 2006년 말 현재 사업소 내 보육시설 3,389개소, 기타시설 2,169개소와 베이비호텔 1,620개소로 약 18만 여명의 아동이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이미화 외 2011).

유형별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연장보육은 1일 8시간으로 정해진 보육시간을 취업모의 근로시간과 상황을 고려하여 보육시설의 장이 보육시간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연장보육의 대상은 시정촌이 저녁 7시까지보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에게 22:00까지 보육을 제공한다. 기준보육료의 10%를 보육시설의 운영비로 지원해 주며, 서비스 이용자는 소득에 따라 연장보육료를 지불한다.

휴일보육은 주말 혹은 휴일에 보육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보육서비스다. 보육서비스 대상자는 구내거주자로, 보육시간은 7시간에서 18시간이다.

특별보육은 부모의 갑작스런 부재로 인하여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일시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주체는 시정촌이며, 서비스 이용자의 부담 금액은 기존보육의 1/2로 책정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주3일한도로 보육을 제공한다.

아픈 아이를 위한 보육서비스는 병에서 회복되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시설보육과 재택 보육이 있다. 시설보육은 간호사를 포함한 인력이 있는 시설에 아동을 보육하며, 재택 보육은 병원, 아동의 집으로 비상근 간호사가 파견되는 것을 말한다.

일본 보육의 과제중의 하나는 대기아동이 증가하고 있는데 있다(서문 희 외 2011). 서문희 외(2011)의 연구에 의하면, 2010년 10월 기준으로 48,356명이 대기아동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당해연도 4월에 비해

약 1.8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육시설의 부족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이 발생하자, 가정 내 재택보육을 대응방안으로 모색하고 있다.

일본의 개별보육은 베이비시터, 에스쿠 및 노동청에서 지원하는 가족 지원센터(family support center)를 통한 보육, 아는 사람을 통한 보육 등으로 이루어진다(이미화 외 2011). 일본에서도 시설보육을 보완하는 대체서비스로 개별보육에 대한 관심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개별보육 베이비시터를 이용하는데 비용보조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수당은 아동수당법에 의거하여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제도이다. 일본 전국 베이비시터협회(All-babysitter association)를 통해 취업모가 베이비시터를 이용할때, 1일1회 1,500엔, 또는 2,000엔을 할인권을 지원한다. 쌍생아 다태아부모인 경우엔 1일 9,000엔을 지원하고, 산전산후 휴가기간 동안에 임산부 건강검진, 산욕기 등과 같은 건강문제 등으로 베이비시터를 이용할때엔 1일 1,500엔을 지원한다(서문희 2008).

노동후생성은 어린이미래재단에 사업예산을 집행하고, 어린이미래재단은 복무협약을 맺은 베이비시터협회와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기업을 연결한다. 베이비시터협회와 기업은 서로 협정하여, 기업의 근로자에게 재택보육할인권을 교부하고, 재택보육할인권을 이용하는 근로자는 할인권의 비용을 제한 나머지 금액비용을 지불한다. 협정 대상 및 규모를 살펴보면, 기업 규모에 따라 최소 1,200매부터 최대 4,800매를 지원한다. 육아지원사업은 1994년 시작한 이래 계속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서문희 2008).

그 외 후생노동성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족지원센터가 있다(이미화 외 2011). 가족지원센터(family support center)는 1994년 인구 5만 이상의 시정촌에 설치를 시작한, 아동을 맡기고자 하는 가구와 맡는 가정

을 증개하는 역할을 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이다. 보육서비스에 대한 욕 구가 있는 사람과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이 회원으로 등록 한 후 서로의 필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보육사업으로 충족되지 못한 보육요구를 지역 내 주민 사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스 템이다. 정부(후생노동성)는 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해 그 경비를 지원한다. 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의뢰회원(보육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있는 사람)과 제공회원(보육서비스 를 제공하는 사람) 모두 가족지원센터의 구조와 규칙을 이해하기 위한 단 기교육을 받아야만 한다(이미화 외 2011). 또한 제공회원은 아동을 돌보 기 위한 기본적인 양육과 관련된 내용을 교육받아야 한다. 약 18시간의 교육시간이 의무화되며, 교육내용으로는 아동의 심리, 아동의 신체와 병, 아동의 안전과 응급처치. 상호원조 활동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이용대상은 생후 3개월부터 10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자이며, 서비스 제 공 장소는 보육서비스의 제공자의 자택을 원칙으로 한다. 이용요금은 통 상(7:00~20:00)시간당 800엔이며, 통상시간 이외에는 시간당 900엔, 아픈 아이인 경우에도 시간당 900엔을 지불해야 한다(여성가족부 2006; 이미화 외 2011. 재인용).

(표 3-14) 가정보육모의 서비스 내용

- 주로 보육소나 유치원 등이 시작되기 전이나 종료 후 자녀를 돌봄
- 보육소,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의 등·하원을 도와줌
- 방과후 아동건전 육성활동의 종료이후 아동을 돌보아 줌
- 자녀가 아플 때처럼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경우 임시적으로 돌보아 줌
- 보호자에게 위급한 상황이 일어난 경우(간호, 질병, 관혼상제 등) 틈새시간에 자녀를 돌봄
- 회원이 일과 자녀양육이라는 두자기 일을 하기 위해 원조가 필요한 경우
- 기타 필요시간에 필요한 만큼의 자녀양육을 지원해 줌

3. 영국

영국은 전통적으로 가정 내에서의 자녀양육을 강조하는 국가로 타 유럽국가에 비해 보육체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1997년 이후 노동당이 집권하게 되면서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2007년 10월 Children's Plan을 발표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 성장을 잘이끌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목적을 두며, 빈곤아동에게 보육서비스 이용 기회를 제공하고 특수 아동을 위한 투자 및 개별보육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지원, 보육교사의 전문성 제고 등을 목표하고 있다.

영국은 교육과 보육을 이원화한 체계였으나, 2007년 보육과 교육을 하나로 통합된 체계로 변화되었다(백선희 외 2008).

(표 3-15) 영국의 보육 교육 현황

구분					
	종일제				
	아동센터 종일제				
보육	기간제				
(Child care)	방과후 클럽				
	휴일클럽				
	가정보육모(등록)				
	유아학교				
유아교육 (Early Years)	예비학교만 있는 초등학교				
	유학급과 예비학급이 있는 초등학교				

출처: 서문희 외(2011). p.26.

영국의 보육서비스는 공립·민간 보육시설, 가정보육모(childminder), 내니, 친구 이웃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영국의 보육시설은 보 육과 유아교육기관으로 나뉘는데(서문희 외 2011), 보육서비스는 종일 제 보육, 방과 후 보육, 계절별 보육, 아동센터, 가정보육모로 구분되며, 교육서비스는 유아 학교, 유아 학급(nursery classes), 예비학교 (reception classes)가 있는 초등학교, 유아반이 없고, 적응반이 있는 초등학교에서 제공된다. 보육서비스의 주체는 공공보다 대부분 민간에서 이루어진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교육 및 보육에 대한 공동책임을 가지며, 중앙정부에서는 보육시설 기준과 보육의 질을 위한 14개 영역의 국가기준을 제공하며, 지방정부는 보육시설의 질적인 향상과 안전에 대한 관리를 통해 보육시설을 책임진다.

2008년 민간기관에서의 사립 비중 비율은 종일제 센터가 6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기간제 센터(64%), 휴일클럽(34%), 방과후 클럽(30%), 아동센터(종일제)가 12%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서문희 외 2011, pp.27).

영국에서 공적지원이 부족한 만 3세 이하의 아동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보육서비스는 가정보육모, 베이비시터, 내니 및 오페어(Au Pair)와 같은 일대일 보육서비스다(김소영 외 2013). 일대일 서비스의 대부분은 민간에서 이루어지며, 베이비 시터, 내니 등은 관리기준 및 운영에 관한 의무이행의 강제성이 적은 반면, 가정보육모에 관한 의무이행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정보육모는 교육과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2001년 9월부터 의무화하고 있다(백선희 외 2008). 원칙적으로 가정보육모가 되기 위해서는 가정보육모로 등록하기 전 교육훈련이 요구되며,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등록증을 받고 6개월 이내 교육이 요구된다.

가정보육모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3단계를 거쳐야 한다. 1단계는 아동보육실천 기초(Introducing Child minding Practice: ICP)로

가정보육사업에 관한 개요, 가정보육의 일과, 아동의 행동관리 내용의 12 시간 과정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2단계는 아동보육의 실천 (Developing Child minding Practice: DCP)을 위한 과정으로 세부내용은 아동발달, 놀이와 학습, 혼합연령 보육, 부모 관계, 아동보호 등을 포함시키며 60시간을 이수한다. 3단계는 특수아동 등 보다 높은 수준의 아동 보육과 관련된 과정으로 아동보육실천 심화(Expanding Child minding Practice: ECP)으로 아동발달, 학습계획, 에이즈 관리 등으로 60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가정보육모의 서비스 내용으로는 8세 미만의 아동을 돌볼 수 있으며, 보육을 제공하는 장소는 보육서비스의 제공자의 집에서 이루어진다.

반면 베이비시터 혹은 내니(nanny)는 교육기준청에서 자발적 형태로 관리되기 때문에 서류 및 자격 조건 확인 등 고용에 대한 책임은 부모에게 두고 있다. 교육기준청이 베이비시터 및 내니의 기준을 두고 이들의 등록을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베이비시터나 내니 등 돌보미 자격조건이나 경력, 응급처치에 관한 지식 등을 거의 고려하지 않고, 범죄 경력만을 검토한 후 자격증을 교부하여 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김소영 외2013). 회사별로 일정하지는 않지만 1~2년간 교육을 받거나 내니로서 2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일정한 연령조건, 흡연 여부, 신원 보증 등의 조건을 두고 있다(백선회 외2008). 베이비시터 및 내니를 등록하게 되면, 최소한의 법적인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정부의 근로시간 기준인 주당 48시간을 적용받으며, 최소임금 또한 적용되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내니는 비공식부문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으며, 서비스 이용자의 가정에서 일을 하고 있으나 고용관계로 형성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 이다.

베이비시터 및 내니를 고용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으로는 근

로소득공제(Working Tax Credits)의 아동보호항목으로 재정지원과 고용주 지원 아동보육 바우처(Employer-Supported Childcare Voucher)를 받을 수 있다(김소영 외 2013).

4. 시사점

본 절에서 해외사례로 프랑스, 일본, 영국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프랑스의 경우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양육지원시스템이 아주 잘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국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프랑스의 다양한 육아지원정책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출산율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이지만 프랑스의 노동환경과 국내 노동환경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해당국가의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도입하면 국내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는 다소 성급한 면이 있다. 프랑스의 경우 국가차원의 양육지원 정책과함께 노동시장에서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양육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국내와 마찬가지로 저출산고령화로 매우 힘든 시기를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많은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보육시설의 대기아동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상당부분 국내와 유사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 양육지원 확대와 함께 맞벌이 부부에 대한 차별적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국내에서 제안되고 있는 종일제 및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종일제 서비스의 이용을 맞벌이 가구로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시사하는바가 크다. 또한 일본의 보육시설에서 인가보육시설은 비영리 복지시설로 국공립시설(53%), 법인시설(47%) 등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은 국내와

비교해 봤을 때 바람직한 시장 환경으로 판단된다. 국내의 보육시설도 일 본과 같이 국공립 시설 확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국의 경우 국내 보육시장 상황과 마찬가지로 민간주도의 보육시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영아의 경우 가정양육을 강조하는 문화로 영아보다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 좀 더 활성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육시설의 질 관리를 위해 14개 영역의 국가기준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질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국내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만 3세 이하의 영아의 경우 일대일 보육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정보육을 제공하는 보육모에 대한 국가관리가 매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4장 자녀양육 가치관 및 돌봄서비스 이용 현황

제1절 분석대상 및 특성

제2절 자녀가치관 및 돌봄시간 현황

제3절 자녀양육실태 및 지원서비스 이용 현황

제4절 일·가정양립 및 자녀양육의 어려움

4

자녀양육 가치관 및 《 돌봄서비스 이용 현황

제1절 분석대상 및 특성

본 장에서는 미취학 자녀를 중심으로 자녀양육 관련 가치관 및 자녀 돌봄 서비스 이용 현황을 제시하고자 한다. 해당내용의 분석을 위하여 다양한 유형의 2차 자료와 본 연구를 위해 실시된 1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자료로 여성가족패널, 한국아동패널,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가족실태조사, 보육실태조사(kosis 제공 일부 자료)와 같은 2차자료와,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서 자료, 본 연구를 위해실시된 「자녀양육 실태 및 정책요구도·수요도」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2차 자료로 활용된 조사데이터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가족패널」의 조사대상은 전국 일반가구 중 만19세 이상 만64세 이하의 여성가구원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9,068가구를 추출하였으며, 조사대상은 여성만으로 구성된다. 조사내용으로는 크게 가족, 일, 일상생활과 관련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4년 현재 제 5차년도 본조사가 진행 중이며, 본 연구에서는 패널형태의 구성이 가능한 1차(2007년), 2차(2008년), 3차(2010년), 4차(2012년)를 통해 자녀양육형태를 살펴보았다. 여성가족패널로 분석된 표에서 '맞벌이'로 분류된 집단은 여성과 그 배우자(남성)가 '일을 하고 있음'에 응답한 경우에 해당되며, '홑벌이' 집단은 여성이 '일을 하고 있지 않음'에 응답하고, 그 배우자(남성)가 '일을 하고 있음'에 응답한 경우를 의미한다.

「한국아동패널」의 조사대상은 2006년 기준으로 연간 분만건수가 500건

이상인 표본 의료기관에서 2008년 4월부터 7월 사이에 출생한 신생아 가구 중 패널 참여의사가 있는 예비표본 2,562가구를 모집하여, 이 중 2,150명의 신생아 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조사내용으로는 크게 육 아지원 정책특성, 육아지원 서비스 특성, 부모 특성, 지역사회 특성, 가족 특성, 아동의 특성이 있으며, 이에 대해 시간 및 역사적 사건 순으로 조사된다. 2014년 현재 7차 조사(2014년)가 실시 중이며, 본 연구에서는 패널의 활용이 가능한 1차조사(2008년)에서부터 4차조사(2011년)까지의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언급된 바와 같이「한국아동패널」은 출생부터 아동을 추적하는 것으로 2008년 1차에 응답한 아동의 연령은 최소 4개월에서 최대 10개월이며, 종단적인 관점에서 아동의 2008년 1차 만 0세, 2009년 2차 만1세, 2010년 3차 만2세, 2011년 4차를 만3세로 이해할 수 있다.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는 출산력 변화에 따른 가족관계 및 가족부양 변화양상 파악 및 관련 대책 수립을 위한 자료생산을 위해 만들어졌다. 1982년 최초로 작성되었으며, 3년 단위로 조사되고 있다. 조사대상은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를 기준으로 한 15~59세의 기혼부인이다. 조사 내용으로는 결혼 임신 출산, 가족보건, 가족복지생활및 자녀양육, 출산 및 가족 정책 욕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3년도와 2006년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가족실태조사」는 건강가정기본법 제 20조에 따라 전국 규모의 가족 조사로 한국 가족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가족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인구주택 총조사를 기준으로 하여 만 15세 이상 가구원 전체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2005년 첫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5년 단위로 조사된다. 조사내용으로는 가족의 일반사항, 가구의 경제적 특성, 가족 인식 및 태도, 가족 형성 및 변화,

가족관계, 일과 돌봄, 가정생활양식, 정책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로 구성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5년도와 2010년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보육실태조사」는 영유아 보육법 제 9조에 따라 영유아 아동의 보육 교육 서비스 이용실태 및 이용에 따른 만족도, 요구도 파악을 통해 보육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보육실태를 알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어린이집 및 이용 아동 가구조사를 확률표본을 통해 3년 단위로 조사되며, 2004년 조사를 시작으로, 2009년, 2012년까지 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내용으로는 가구원의 특성, 자녀양육, 보육교육정책, 아동보육 및 교육 기초, 다문화 가정 특성, 가구특성, 기타로 나눠진다. 본 연구에서는 2004년, 2009년, 2012년도 자료가 이용되었다.

이와 함께 추가로 본 연구를 위해 기획된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 전 계층 무상보육 실시이후 및 최근의 현황분석을 위해서 「자녀양육 실태 및 정책요구도·수요도」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시설보육 및 기타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여 양육하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취업여부 및 양육지원서비스 이용유형에 따른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³⁾. 이를 위해 2014.8.11.~2014.9.10. 동안 총 511명을 대상으로 1대1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표4-1), 연령은 35-39세 (46.4%)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0-34세(33.7%), 40세 이상 (13.7%), 29세 이하(6.3%)순으로 나타났다. 맞벌이가구와 홑벌이가구를 비교하여 볼 때, 맞벌이가구 여성의 연령은 홑벌이가구 여성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4년제 대학졸업이 51.1%로 절반 이상이 4년제를 졸업한 것으

³⁾ 취업여부에 따라 맞벌이여성을 70%, 홑벌이 여성을 30%로 할당하였고, 보육형태에 따라 시설보육 40%, 시설보육과 가정내 돌보미보육 40%, 가정내 돌보미보육 20%로 할당하여 조사를 실시함.

로 조사되었으며, 월평균가구소득은 500만원대(32.3%)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400만원대(28.4%)인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와 홑벌이 가구의 가구소득분포를 비교해 보면 확실히 맞벌이 가구의 고소득가구 분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미취학자녀 수를 살펴보면, 1명인 가구가 75.3%으로 가장 많았으며, 2명이 23.1%였으며, 3명이 1.6%인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의 평균자녀수는 1.24명 이며 홑벌이 가구의 평균자녀수는 1.30명인 것으로 나타나 맞벌이 가구의 자녀수가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학 자녀의 마지막 연령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4세가 22.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3세(19.8%), 5세(19.4%), 6세 (14.9%), 2세(14.5%) 순이었다.

맞벌이 여성인 355명에 대한 취업특성을 살펴보면(표 4-2), 현재 재직중인 사람이 97.5%(346명)이고, 휴직중인 사람은 2.5%(9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때 휴직중인 사람은 모두 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62.8%(223명)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기타직종으로 11.8%(42명), 대기업이 11.3%(40명)이었고, 공공기관이 9.6%(3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을 살펴보면, 사무종사자가 68.2%(242명)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서비스종사자(56명, 15.8%), 판매종사자(37명, 10.4%)인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 여성응답자의대부분이 상용근로자이며(89.9%), 정규직이자(89.9%), 월요일에서부터금요일까지 근무하는(83.7%) 전일제(94.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수

(단위: 명, (%))

7.4		맞	벌이	홑	벌이	전체		
	구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29세 이하	17	(4.8)	15	(9.6)	32	(6.3)	
из	30-34세	110	(31.0)	62	(39.7)	172	(33.7)	
연령	35-39세	172	(48.5)	65	(41.7)	237	(46.4)	
	40세 이상	56	(15.8)	14	(9.0)	70	(13.7)	
	29세 이하	2	(0.6)	0	(0.0)	2	(0.4)	
배우자	30-34세	60	(16.9)	33	(21.2)	93	(18.2)	
연령	35-39세	171	(48.2)	82	(52.6)	253	(49.5)	
	40세 이상	122	(34.4)	41	(26.3)	163	(31.9)	
	중학교 졸업 이하	0	(0.0)	1	(0.6)	1	(0.2)	
	고등학교 졸업	57	(16.1)	41	(26.3)	98	(19.2)	
학력	2년제 대학 졸업	102	(28.7)	41	(26.3)	143	(28.0)	
	4년제 대학 졸업	192	(54.1)	69	(44.2)	261	(51.1)	
	석사 졸업	4	(1.1)	4	(2.6)	8	(1.6)	
	200~299만원 이하	7	(2.0)	38	(24.4)	45	(8.8)	
	300~399만원 이하	23	(6.5)	69	(44.2)	92	(18.0)	
월평균	400~499만원 이하	119	(33.5)	26	(16.7)	145	(28.4)	
가구소득	500~599만원 이하	149	(42.0)	16	(10.3)	165	(32.3)	
	600~699만원 이하	42	(11.8)	7	(4.5)	49	(9.6)	
	700만원 이상	15	(4.2)	0	(0.0)	15	(2.9)	
-1-1-1	1명	273	(76.9)	112	(71.8)	385	(75.3)	
미취학 자녀수	2명	78	(22.0)	40	(25.6)	118	(23.1)	
- 1 11	3명	4	(1.1)	4	(2.6)	8	(1.6)	
	1세	15	(4.2)	3	(1.9)	18	(3.5)	
	2세	46	(13.0)	28	(17.9)	74	(14.5)	
-1-1-1	3세	70	(19.7)	31	(19.9)	101	(19.8)	
미취학 자녀연령	4세	81	(22.8)	35	(22.4)	116	(22.7)	
, ,_0	5세	68	(19.2)	31	(19.9)	99	(19.4)	
	6세	58	(16.3)	18	(11.5)	76	(14.9)	
	7세	17	(4.8)	10	(6.4)	27	(5.3)	
	계	355	(100.0)	156	(100.0)	511	(100.0)	

〈표 4-2〉 조사대상자의 취업관련 변수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표준편차
÷10111111	재직중	346	(97.5)
취업상태	휴직중 ¹⁾	9	(2.5)
	공공기관	34	(9.6)
-1 -	공기업	16	(4.5)
직 종	대기업	40	(11.3)
	중소기업	223	(62.8)
	기타	42	(11.8)
	관리자	3	(0.8)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9	(2.5)
	사무 종사자	242	(68.2)
직업	서비스 종사자	56	(15.8)
역합	판매 종사자	37	(10.4)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	(0.6)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5	(1.4)
	단순노무 종사자	1	(0.3)
	자영업자	9	(2.5)
	무급가 족종 사자	5	(1.4)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319	(89.9)
	임시근로자	19	(5.4)
	일 용근 로자	3	(0.8)
일자리형태	정규직	319	(89.9)
크시디영대	비정규직	36	(10.1)
	월요일 ~ 금요일	297	(83.7)
	월요일 ~ 토요일 (매주)	19	(5.4)
근로요일형태	월요일 ~ 토요일 (격주 또는 월 1~2회 토요근무)	34	(9.6)
	주당 2~3회	3	(0.8)
	불규칙적으로 (간헐적으로)	2	(0.6)
근로시간형태	전일제	334	(94.1)
	시간제	21	(5.9)
출퇴근 시간	출근:	8시56분	(44.30분)
	퇴근:	6시22분	(268.08분)

주: 1) 모두 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제2절 자녀가치관 및 돌봄시간 현황

1. 자녀관련 가치관 및 양육태도

사회문화적 환경변화는 가족 가치 및 자녀관련 가치관의 변화를 수반 하며 이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4-3〉과〈표 4-4〉는 각각 여 성가족패널과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자녀관련 가치관 변화를 분 석하고 있다.

《표 4-3》에서 '결혼하면 자녀를 일찍 갖는 것이 좋다'라는 문항에 대해 '매우 그렇다'의 응답비율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조금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증가하여 2007년~2012년 사이에 전반적으로 이에 대한가치관의 변화는 크게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문항의 경우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다소 감소하고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다소 증가한 측면을 고려할 때 그동안 이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자녀에 대한 필요성을 약화시키는 측면으로 미미하게 이루어진 것으로보인다.

(표 4-3) 자녀관련 가치관 | (2007, 2008, 2010, 2012)

(단위: %, 명)

구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거중하며 지네고	2007	22.6	47.0	25.7	4.7	9,980
결혼하면 자녀를 일찍 갖는 것이	2008	22.4	51.9	22.7	3.1	8,364
일찍 것는 것이 좋다	2010	22.1	52.7	22.2	3.0	7,999
5-1	2012	21.9	52.8	22.3	2.9	7,658
	2007	_	-	_	-	-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2008	35.6	47.3	15.1	2.0	8,364
	2010	33.5	48.5	15.7	2.3	7,999
	2012	33.6	47.6	16.2	2.5	7,658

구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2007	8.8	39.5	34.0	17.7	9,977
자녀가 있어도	2008	6.7	39.9	38.5	14.9	8,364
이혼할 수 있다	2010	5.0	40.0	38.6	16.4	7,999
	2012	7.5	40.6	37.7	14.2	7,658

주: 결측값 제외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패널」, 각년도 (원자료)

유사한 기간에 조사된 한국아동패널 자료의 경우, '결혼을 한 부부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라는 문항에 대해 긍정적 (대체로 그렇다. 매 우 그렇다)으로 응답한 비율이 2008년과 2011년 각각 63.4%, 61.5%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에 대한 긍정적 답변 비율도 26.9%에서 18.4%로 감소하 였다. 이는 앞서 소개된 여성가족패널 조사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자녀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성이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밖에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의 문항에 대한 긍정적 답변도 96.3%에 서 93.5%로 감소하였다. 특히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문항의 경우 긍정적 답변 비율이 17.1%에서 9.6%로 큰 폭 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자녀에 대한 경제적 가치기대가 급속도로 감소하 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라는 문항에 대한 긍정적 답변 비율은 24.7%에서 28.0%로 증가하였다. 이는 개인적 차원에서 자녀에 대한 가치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낮아진 반면 사회적 차원에서 자녀출산의 의미에 대한 인식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 저출산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적으로 저출산 극 복이 필요하며 국가의 지속가능성에 있어서 후세대에 대한 중요성이 부 각됨에 따른 변화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4-4) 자녀관련 가치관॥ (2008-2011)

(단위: %, 명)

							11. /0, 0/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2008	0.1	0.4	3.2	20.7	75.6	1,863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2009	0.1	0.5	4.9	32.4	62.1	1,896
일이다	2010	0.1	0.5	5.0	36.3	58.1	1,772
	2011	0.0	0.5	6.0	37.7	55.8	1,702
	2008	0.1	1.3	9.0	32.3	57.3	1,862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2009	0.4	1.6	9.0	41.2	47.8	1,895
더 굳건하게 해준다	2010	0.1	1.4	8.4	44.9	45.3	1,770
	2011	0.2	1.6	8.8	42.7	46.7	1,702
	2008	0.4	4.1	12.8	39.9	42.9	1,862
자녀가 있는 사람은	2009	0.4	5.6	16.5	45.7	31.7	1,890
노년에 덜 외롭다	2010	0.3	5.6	17.5	46.1	30.5	1,770
	2011	0.6	3.0	14.2	47.5	34.6	1,701
	2008	6.3	34.4	42.3	14.1	3.0	1,862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2009	6.4	38.0	41.4	11.9	2.3	1,894
성세적으로 포움을 받을 수 있다	2010	7.8	37.5	41.9	10.2	2.5	1,769
	2011	12.2	42.9	35.3	7.9	1.7	1,700
	2008	3.0	14.2	19.5	36.9	26.5	1,862
결혼을 한 부부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2009	3.3	16.2	20.3	37.0	23.2	1,895
한다 한다	2010	3.0	15.0	21.7	38.1	22.2	1,772
	2011	3.8	14.9	19.9	38.5	23.0	1,702
	2008	16.7	29.6	26.7	19.5	7.4	1,862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2009	15.7	33.9	28.3	16.2	5.8	1,894
자의를 무슨 것은 당연하다	2010	17.9	34.5	28.1	15.1	4.4	1,770
	2011	21.3	32.3	28.0	13.9	4.5	1,702
	2008	14.9	27.9	32.5	18.6	6.1	1,861
자녀를 갖는 것은	2009	12.7	26.0	35.1	20.4	5.9	1,894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	2010	10.9	26.4	35.0	21.1	6.6	1,771
추의 0 리카페시크 / F의 -	2011	11.3	24.4	36.3	21.4	6.6	1,699

출처: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원자료)

가족가치관 및 자녀관련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자녀양육태도도 변화해 왔다(표 4-5). 2003년도와 2006년도 조사자료에 따르면 '규칙을 만들어 자녀들을 통제하고 자율성이 거의 없는 양육태도'의 비율은 감소하고 '자녀들을 적극지원하며 부모의 규칙을 설명하여 이해하고 따르도록 하는 양육태도'의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자녀양육태도가 자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변화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4-5〉 기혼가구(15-59)의 자녀양육태도 (2003, 2006)

(단위: %, 명)

구분	규칙을 만들어 자녀들을 통제, 자율성 거의 없음	뚜렷한 자녀양육방법이 없으며, 지나친 자율성 부여	그냥 내버려 두며, 자녀들에게 요구도 반응도 보이지 않음	자녀들을 적극지원하며, 부모의 규칙을 설명하여 이해하고 따르도록 함	Й
2003년	9.7	13.5	1.9	74.8	10,147
2006년	8.5	11.6	1.1	78.7	9,426

출처: 보건복지부,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각년도 (kosis)

이밖에 한국아동패널의 양육행동에 관한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4-6〉과 같다. '나는 우리아이가 힘들어하거나 불편해하면 즉시 적절하게 반응한다'의 문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2008년과 2011년에 각각 84.6%, 75.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는 우리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또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고 있다'의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 대해 긍정적 답변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해당패널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자녀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른 양육태도의 변화로 이해될 수 있다. 자녀연령이 증가할수록 아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이해도는 증가하는 반면 놀아주거나, 즉시 반응하거나, 따뜻한 관심을 보인다거나 등에 대해서는 점차 적극적인 양육태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표 4-6) 양육행동 (2008-2011)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2008	0.3	4.2	19.4	51.0	25.1	1,863
나는 우리아이와 함께	2009	0.4	4.5	24.4	55.7	15.1	1,901
놀면서 시간을 보낸다	2010	0.2	6.7	29.3	51.7	12.1	1,772
	2011	0.3	8.4	32.2	50.3	8.7	1,703
나는 우리아이가	2008	0.1	1.5	13.8	57.5	27.1	1,863
힘들어하거나	2009	0.1	2.4	19.0	63.0	15.6	1,898
불편해하면 즉시	2010	0.2	3.0	20.3	62.8	13.6	1,771
적절하게 반응한다	2011	0.0	2.1	22.5	61.9	13.5	1,703
나는 우리 아이에게	2008	0.1	1.3	11.5	58.4	28.7	1,862
필요한 일들(예: 먹이기,	2009	0.0	1.7	17.8	62.6	17.9	1,900
목욕시키기, 옷입히기 등)을 잘 만족시켜준다	2010	0.2	1.6	19.6	61.7	16.9	1,771
궁/글 걸 한국시기군니 	2011	0.0	1.5	17.0	62.3	19.2	1,701
	2008	0.1	1.1	9.3	45.6	43.9	1,862
나는 우리 아이에게 긍정적이고 애정적이며	2009	0.0	.7	16.5	60.1	22.7	1,901
따듯한 관심을 보인다	2010	0.3	1.8	21.6	57.4	18.8	1,772
	2011	0.0	1.9	21.7	58.7	17.7	1,702
나는 우리 아이에게	2008	0.1	1.9	21.5	60.0	16.4	1,861
기대하고 있는 행동에	2009	0.1	2.3	24.5	61.7	11.5	1,899
대해 어느 정도	2010	0.3	2.5	29.4	57.6	10.2	1,770
융통성을 가지고 있다	2011	0.0	2.9	27.5	59.4	10.2	1,703
나는 우리 아이가	2008	0.1	1.8	22.7	62.2	13.2	1,861
무엇을 원하는지 또는	2009	0.1	2.1	24.9	62.5	10.4	1,900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2010	0.1	1.6	22.6	64.5	11.1	1,771
알고 있다	2011	0.1	1.5	21.8	64.8	11.8	1,700

출처: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원자료)

2. 가족내 역할인식과 양육시간

가족내 역할인식 분석자료를 살펴보면(표 4-7), '남자는 직장을 가지고 여자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2007년과 2012년 각각 50.6%, 52.8%로 나타났으며 '주부도 직장을 다녀야 부부관계가 평등해 진다'문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2007년과 2012년 각각 55.2%, 51.4%로 나타났다. 해당문항

에 대한 2010년도의 긍정적 응답비율은 각각 57.4%, 54.4% 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기간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상당수의 여성들이 가족내 역할에 대해서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취학 전 자녀를 둔 주부가 일을 하면 자녀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문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2007년과 2012년 각각 60.4%, 62.5%로 나타나 주부의 취업이 취학전 자녀의 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자녀양육과 교육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의 교육환경이 다양한 정보의 추구와 적극적인 사교육을 요구하기 때문에 가정내 엄마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이해된다.

〈표 4-7〉 가족내 역할 인식 (2007, 2008, 2010, 2012)

(단위: %, 명)

구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2007	15.3	35.3	40.0	9.4	9,981
남자는 직장을 가지고	2008	13.1	39.6	39.9	7.5	8,364
여자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2010	12.6	44.8	35.8	6.9	7,999
	2012	13.6	39.2	40.3	6.9	7,658
	2007	11.6	43.6	39.4	5.3	9,980
주부도 직장을 다녀야	2008	10.3	43.4	41.6	4.7	8,364
부부관계가 평등해진다	2010	8.8	45.6	40.6	5.0	7,999
	2012	9.7	41.7	44.0	4.6	7,657
취학 전 자녀를 둔	2007	11.6	48.8	33.9	5.6	9,976
위역 전 자녀들 눈 주부가 일을 하면	2008	9.7	52.5	33.7	4.1	8,364
자녀교육에 부정적인	2010	8.7	55.1	32.4	3.8	7,999
영향을 줄 것이다	2012	10.7	51.8	33.5	4.0	7,658

주: 결측값 제외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패널」, 각년도 (원자료)

다음의 〈표 4-8〉은 부모의 가사노동시간 및 자녀양육시간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2007년도부터 2012년도 사이에 전반적으로 가정내 가사노동 및 양육시간이 점진적으로 감소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사노동과 양육시간이 분리되어 이루어진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시간의 감소는 가사노동에 있어서만 감소한 것인지 양육시간의 감소도 함께이루어진 것인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가사노동의 경우 다양한 가전기기의 출현으로 노동시간이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자녀양육시간의경우 보육시설 및 사교육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가정내 돌봄시간이 감소되었을 수도 있으나 그 반대로 증가하였을 수도 있다. 2012년도에 양육시간의 감소가 있었다면 영유아 무상보육의 실시 등에 따른 시설이용의증가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으나 제시된 자료의 한계로 양육시간에 대한증감을 단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가사노동시간 및 양육시간이 감소하고 남녀간의 격차도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남성과 여성의 노동 및양육시간의 차이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부모의 가사노동시간 및 자녀양육시간 (2007, 2008, 2010, 2012)

(단위: 분, 명)

구분		주중			주말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2007	여성	249.0	222.7	8,737	227.2	224.9	8,739	
2007	남성	22.3	52.5	7,842	41.0	77.3	7,842	
0000	여성	224.3	190.9	7,507	214.4	198.4	7,507	
2008	남성	19.6	40.6	6,724	38.7	72.8	6,724	
2010	여성	209.0	160.6	6,376	211.0	177.9	6,375	
2010	남성	17.4	38.0	6,356	34.1	64.8	6,356	
2012	여성	161.1	86.9	5,964	153.4	103.5	5,964	
2012	남성	16.3	31.7	5,961	25.6	37.1	5,961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패널」(원자료)

가사노동시간 및 자녀양육시간에 대하여 맞벌이 가구와 홑벌이 가구를 나누어 분석한 결과, 맞벌이 가구 여성의 가사노동 및 양육시간이 2007 년도 주중 1일 평균 179.9분에서 168.1분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성 과 남성의 가사노동 및 자녀양육시간의 차이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 다(표 4-9).

(표 4-9) 부모의 가사노동시간 및 자녀양육시간 (2007, 2008, 2010, 2012)

(단위: 분, 명)

구분		주중			주말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2007	пьнног	여성	179.9	147.0	2,946	180.3	166.7	2,946
	맞벌이	남성	26.3	52.4	2,943	35.2	68.5	2,943
	홑벌이	여성	336.2	266.1	3,914	297.5	269.2	3,914
	官길이	남성	18.2	48.3	3,906	47.7	85.8	3,906
	맞벌이	여성	167.1	108.3	2,748	175.1	135.5	2,748
2000	ᄎᆯᄓ	남성	22.2	41.4	2,741	34.8	66.5	2,741
2008	홑벌이	여성	303.0	237.1	2,898	280.6	242.9	2,898
		남성	15.9	38.9	2,893	45.9	83.3	2,892
	맞벌이	여성	160.9	97.8	2,918	176.1	131.1	2,918
2010	굿길이	남성	19.2	37.2	2,900	31.6	63.2	2,900
2010	홑벌이	여성	266.8	197.7	2,687	258.9	214.8	2,687
	돌길이	남성	13.6	37.0	2,673	39.8	70.9	2,673
	맞벌이	여성	168.1	125.9	2,725	182.7	171.8	2,725
2012	ᄎᆯᄓ	남성	25.6	50.8	2,714	42.3	81.3	2,714
2012	홑벌이	여성	282.0	240.6	2,039	263.4	264.8	2,039
	宣길이	남성	18.3	46.1	2,034	53.9	97.7	2,034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패널」(원자료)

이러한 상황에서 배우자와의 돌봄노동 분담 공평성에 대한 인지조사 결과를 살펴보면(표 4-10), 2005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 공평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남성, 여성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아내에 게 불공평 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증가하여 돌봄노동에 대한 불공평성 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에 따른 개선은 크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표 4-10〉 배우자와의 돌봄노동분담 공평성 인지 (2005, 2010)

(단위: %, 명)

구분		공평한편	남편에게 불공평한편	아내에게 불공평한편	계
	전체	44.3	4.2	51.2	1,602
2005	남성	45.8	2.9	51.1	799
	여성	42.9	5.5	51.4	803
	전체	32.8	3.3	63.9	2,741
2010	남성	34.8	2.2	62.9	1,418
	여성	30.7	4.3	65.0	1,323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2005년 가족실태조사 211p; 2010년, kosis)

3. 시사점

본 절에서 자녀관련 가치관 및 양육시간에 관한 분석 결과, 개인적 차원에서 자녀에 대한 가치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낮아진 반면 사회적 차원에서 자녀출산의 의미에 대한 인식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관점에서 자녀의 필요성은 약화된 반면 사회적 관점에서 자녀출산의 의의는 크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내가 굳이 출산하지 않더라도 누군가는 출산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개인적 차원의 가치관과 사회적 차원의 가치관이 다소 상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가족내 역할인식과 가사 및 돌봄노동 시간 분석결과,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상당수의 여성들이 가족내 역할에 대해서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내 어머니의 취업이 취학전 자녀의 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으며 이

는 자녀양육과 교육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가족내 여성의 전통적 역할에 대한 기대수준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남성과 여성의 가사 및 돌봄노동에 대한 시간차이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여전히 우리사회는 전통적 가족가치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돌봄노동에 대한 불공평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현재의 우리사회는 전통적 가치관에 따른 성역할 수행이 매우 높게 이루어지고 있음과 동시에 이에 대한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맞벌이 가구의 자녀양육 개선을 위해서는 가족 안에서 남녀 간의 양육분담이 좀 더 공평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노력이 요구된다.

제3절 자녀양육실태 및 지원서비스 이용 현황

1. 보육실태 및 서비스 이용 현황

보육실태조사에 따른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률을 분석한 결과 (표 4-11), 2004년도에서 2012년도 사이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 조부모 양육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보육시설 이용률의 경우 2004년 27.9%에서 2012년 45.1%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개인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대부분 조부모및 친인척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비혈연이나 육아전문 파견인력을 통한 개인 양육지원 서비스 이용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육아전문 파견인력(사설 베이비시터, 정부 아이돌보미 등)을통한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비율은 미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1〉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률 (2004, 2009, 2012)

(단위: %, 명)

	구분	2004	2009	2012		
	보육시설	27.9	41.3	45.1		
	유치원	16.5	19.4	24.2		
	선교원	1.9	0.6	0.4		
기관 보육 및	반일제 이상 학원	8.3	2.3	3.6		
교육	특기 및 보습 학원	8.7	6.6	12.6		
	지역아동센터 등	0.0	0.8	1.1		
	문화센터 등 사설기관	4.1	6.5	7.6		
	시간제 보육	0.0	0.0	0.9		
	조부모	19.1	21.9	31.8		
OLOSTIOI	친인척	2.5	2.3	2.9		
개인 양육지원	비혈연	1.7	2.0	1.6		
	육아전문 파견인력	0.0	0.4	0.5		
개인교육	29.8	28.2	35.3			
영유아수	2,962	3,179	3,343			

주: 중복응답 결과임.

영유아의 기관이용시간을 분석한 결과(표4-12),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학원을 이용하는 시간도 2004년 대비 2012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유치원 이용시간이 2004년 5시간 51분에서 2012년 7시간 12분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일제 유치원의확대 및 특별활동의 실시 등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된다.

〈표 4-12〉 이용기관별 영유아의 기관 이용시간 (2004, 2009, 2012)

(단위: 시:분)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기타	전체
2004년	7시간 20분	5시간 51분	6시간 20분	6시간 14분	7시간 21분
2009년	7시간 45분	6시간 37분	6시간 16분	6시간 7분	7시간 21분
2012년	7시간 34분	7시간 12분	6시간 31분	5시간 26분	7시간 23분

출처: 보건복지부,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195p 재구성

출처: 보건복지부, 「보육실태조사」, 각년도 (kosis)

개인양육지원 서비스의 경우, 전체 조사대상 아동 중 개인양육지원 서비스 이용아동은 2009년 25.8%에서 2012년 37.2%로 증가하였으며, 개인양육지원 단독이용아동 또한 9.4%에서 11.3%로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개인양육지원과 기관병행 이용아동 비율 또한 16.2%에서 25.8%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개인양육지원 서비스 이용 아동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에 대한 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4-13〉 개인양육지원 서비스 이용 아동 수와 비율 (2009, 2012)

(단위: 명, (%))

\= · · · · · · · · · · · · · · · · · · ·									
구분	전체보육 대상아동(a)	개인양육지원 이용아동(b) (b=c+d) (b/a)	개인양육지원 단독이용아동(c) (c/a)	개인양육지원과 기관병행 이용아동(d) (d/a)					
2009년	3,304 (100.0)	852 (25.8)	312 (9.4)	540 (16.2)					
2012년	3,343 (100.0)	1,243 (37.2)	379 (11.3)	864 (25.8)					

출처: 보건복지부,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p.413

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연령에 따른 양육유형변화를 살펴본 결과 (표 4-14), 2008년 아동이 만 0세로, 대부분 부모양육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비취업모 가구의 경우 99.6%가 부모양육을 하며 맞벌이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등을 이용한 부모양육(49.0%), 개인 대리양육(43.8%)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시설양육 비율은 6.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시설양육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나 맞벌이의 경우 만3세 이전까지는 개인대리양육의 비율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9년 아동이 만1세가 되면서 개인대리양육과 시설양육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비율이 큰 폭으로 낮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되어 부모의양육이 크게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여전히 만1세에 개인대리양육

이 49.2%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아동이 만2세가 되면서 시설양육과 부모양육으로 양분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맞벌이가구의 경우 시설양육이 60.1%, 개인대리양육 26.7%인 반면 홑벌이가구의 경우 시설양육이 34.3%, 부모양육이 65.1% 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아동이 만 3세가 되는 시기에는 대부분이 시설양육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등의 시설 양육을 이용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맞벌이 가구는 여전히 대리양육을 3.8%로 유지하고 있으며, 개인대리양육과 시설양육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도 8.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4〉 자녀의 양육 서비스 이용 현황 (2008-2011)

(단위: 명, (%))

구분		전	체 ¹⁾	맞	벌이	홑벌이	
	十 世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개인대리양육	294	(14.1)	274	(43.8)	5	(0.4)
2008	시설양육	43	(2.1)	42	(6.7)	1	(0.1)
	시설&개인 대리 양육	3	(0.2)	3	(0.5)	0	(0.0)
(만0세)	부모양육	1738	(83.6)	309	(49.0)	1,343	(99.6)
	계	2,078	(100.0)	625	(100.0)	1,349	(100.0)
	개인대리양육	296	(15.8)	274	(49.2)	4	(0.3)
2009	시설양육	192	(10.2)	147	(26.4)	40	(3.2)
	시설&개인 대리 양육	17	(0.8)	15	(2.7)	2	(0.2)
(만1세)	부모양육	1370	(73.1)	121	(21.7)	1,212	(96.3)
	계	1,875	(100.0)	557	(100.0)	1,258	(100.0)
	개인대리양육	169	(9.4)	154	(26.7)	7	(0.6)
2010	시설양육	777	(43.2)	346	(60.1)	399	(34.3)
	시설&개인 대리 양육	13	(0.7)	13	(2.3)	0	(0.0)
(만2세)	부모양육	841	(46.7)	63	(10.9)	758	(65.1)
	계	1,800	(100.0)	576	(100.0)	1,164	(100.0)
	개인대리양육	28	(1.6)	26	(3.8)	1	(0.1)
2011	시설양육	1394	(79.5)	577	(85.4)	773	(75.1)
	시설&개인 대리 양육	58	(3.3)	54	(8.0)	3	(0.3)
(만3세)	부모양육	274	(15.6)	19	(2.8)	252	(24.5)
	계	1,754	(100.0)	676	(100.0)	1,029	(100.0)

주: 전체 응답자는 패널에 응답한 모든 사람을 포함함. 단, 결측은 제외됨. 출처: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원자료)

맞벌이 가정 내 개인대리양육 형태를 살펴보면(표 4-15), 대부분 혈연을 통한 개인대리양육을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혈연을 통한 개인 대리양육은 15% 내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5) 맞벌이 가정 내 개인대리양육 형태 (2008-2011)

(단위: 명, (%))

	2008	2009	2009 2010	
혈연	239 (86.3)	244 (84.4)	145 (87.3)	63 (84.0)
비혈연	38 (13.7)	45 (15.6)	21 (12.7)	12 (16.0)
계	277 (100.0)	289 (100.0)	166 (100.0)	7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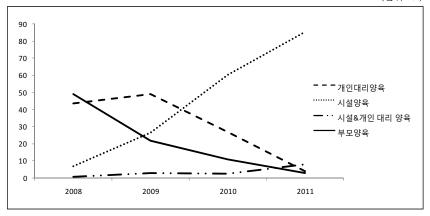
주: 결측은 제외됨.

출처: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원자료)

앞서 논의된 양육서비스 이용 유형에 따른 변화를 그림으로 살펴보면 [그림 4-1], [그림 4-2]와 같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자녀의 연령이 만1세가 되는 시기에 크게 감소하고 그 이후 감소세가 다소 완만해 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개인대리양육서비스 이용률 또한 만 1세를 기점으로 크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기간을 전후하여 부모양육 및 시설을 이용한 양육행태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홑벌이의 경우 또한 만 1세를 기점으로 부모양육과 시설양육 이용률이 변하기는 하나 여전히 부모양육 비율은 높고 시설양육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의 경우 두돌이 되는 2010년에 이미 시설보육을 이용하는 비율이 60.1%로 홑벌이 가구와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1] 맞벌이 자녀의 양육서비스 이용 변화 (2008-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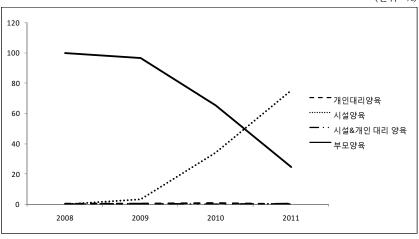
(단위:%)



출처: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원자료)

[그림 4-2] 홑벌이 자녀의 양육서비스 이용 변화 (2008-2011)

(단위:%)



출처: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원자료)

2. 개인 양육지원 서비스 이용 실태

개인양육지원 서비스 이용사유를 살펴보면 보육시설에 '원하는 시간 이용 힘듦', '시설환경 열악함', '대기자 많음', '주변에 마땅한 곳이 없음'에 대한 응답비율이 2004년 5.7%에서 2009년 24.3%, 2012년 20.1%인 것으로 조사되어 보육시설 인프라 확충 필요성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시설이용에 대한 비용부담으로 인해 개인양육지원 서비스를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급격하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보육료·교육료 지원 확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6)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사유 (2004, 2009, 2012)

(단위: %, 명)

구분	2004	2009	2012
너무 어려 적응애로	53.0	30.6	68.5
비용부담	30.8	14.7	2.0
원하는 시간 이용 힘듦	2.0	9.9	7.2
데리고 다니기 번거로움	-	0.7	0.5
시설환경 열악함	-	0.6	1.2
한사람이 돌봐 불안	2.5	2.9	4.1
환경변화로 정서 우려	4.0	2.4	3.7
대기자 많음	-	0.6	5.8
주변에 마땅한 곳이 없음	3.7	13.2	5.9
기타	4.0	24.2	1.2

출처: 보건복지부,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p.416

본 연구에서 추가로 실시한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또한 기존의 분석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정내 돌보미 보육만 이용하는 경우, 가정내 돌보미 보육을 이용하는 이유로 '시설 이용시 원하는 시간에 이용 하기 어려워서', '시설 환경이 열악하여서', '시설 이용시 한 사람이 여러 아이를 같이 돌보는 것이 불안하여서', '이용 희망 시설에 대기자가 많아서'를 1순위로 응답한 비율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21.6%이며 홑벌이 가구의 경우 28.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당사유를 2순위로 응답한 비율도 맞벌이 가구와 홑벌이 가구 각각 60.8%, 68.9%인 것으로 조사되어 해당사항에 대한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보내고자 하는 시설에 대기자가 많아서 못보내는 사례와 교사대 아동의 비율 때문에 못보내는 사례에 비추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확충과 함께 교사대 아동 비율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표 4-17⟩ 가정내 돌보미 보육서비스를 하는 사유(가정내 돌보미 보육) (2014)

(단위: 명, (%))

		1순위				2순위			
구분	맞	벌이	홑	벌이	맞	벌이	홑	벌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아이가 너무 어려서 기관에 적응하기 힘들까봐	46	(66.7)	19	(59.4)	13	(18.8)	1	(3.1)	
시설비용이 부담되어서	0	(0.0)	0	(0.0)	1	(1.4)	0	(0.0)	
시설 이용시 원하는 시간에 이용하기 어려워서	2	(2.9)	0	(0.0)	8	(11.6)	3	(9.4)	
시설에 매일 데리고 다니기 번거로워서	6	(8.7)	1	(3.1)	10	(14.5)	4	(12.5)	
시설 환경이 열악하여서	1	(1.4)	1	(3.1)	6	(8.7)	1	(3.1)	
시설이용시 한 사람이 여러 아이를 같이 돌보는 것이 불안하여서	5	(7.2)	3	(9.4)	15	(21.7)	10	(31.3)	
환경이 바뀌면 정서적으로 안 좋을 것 같아서	2	(2.9)	3	(9.4)	3	(4.3)	5	(15.6)	
이용 희망 시설에 대기자가 많아서	7	(10.1)	5	(15.6)	7	(10.1)	2	(6.3)	
주변에 마땅한 시설이 없어서	0	(0.0)	0	(0.0)	6	(8.7)	6	(18.8)	
합계	69	(100.0)	32	(100.0)	69	(100.0)	32	(100.0)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녀양육 실태 및 정책 요구도·수요도」(원자료)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정 내 돌보미 서비스는 아이돌보미 사업이 대표적 서비스라 할 수 있으나 이와 관련한 분석자료는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아이돌보미 사업 관련하여 일부 문항을 조사하였으며 그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이돌보미 사업경험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현재 아이돌보미 사업을 이용하고 있는 가구는 5.1%, 과거 신청한 경험이 있거나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구는 5.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가구의 약 10%정도가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한 신청경험 또는 이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8〉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한 경험 (2014)

(단위: 명,(%))

구분	빈도	비율
현재 이용중	26	(5.1)
과거 신청하였거나 이용함	28	(5.5)
없음	485	(94.9)
계	511	(100.0)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녀양육 실태 및 정책 요구도·수요도」(원자료)

아이 돌보미를 신청하였거나 이용한 경험이 있으나, 현재는 이용하지 않는 사람의 사유를 살펴보면(표 4-19), '이용시간이 맞지 않아서 (60.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대기기간이 너무 길어서 다른 방법을 구함(14.3%)' '돌보미 선생님이 매번 바뀌어서(10.7%)'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서(10.7%)'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돌보미가 가장 필요한 아침과 저녁시간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으나, 해당시간에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아이돌보미는 제한적이어서 이용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신청자가 많아 대기기간이 길고, 신청아동에 대한 돌보미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이용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조사되었다4).

〈표 4-19〉 신청하였으나 이용하지 않은 사유 (2014)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대기기간이 너무 길어서 다른 방법을 구함	4	(14.3)
돌보미 선생님이 매번 바뀌어서(바뀐다고 들어서)	3	(10.7)
이용시간이 맞지 않아서	17	(60.7)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서	3	(10.7)
이용후 만족도가 낮아서	1	(3.6)
합계	28	(100.0)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녀양육 실태 및 정책 요구도·수요도」(원자료)

아이돌보미를 신청하지 않은 사유로는 '관심이 없어서(필요 없어서)(37.9%)', '돌보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안가서(30.9%)' '등록절차가 복잡해서(14.4%)',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4-20). 해당사업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거나 등록절차가 복잡해서 해당서비스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절차의 간소화 및 홍보강화가 요구된다. 또한 아이돌보미 서비스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아이돌보미 사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층의 경우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반면, 소극적인 수요자층의 경우 해당서비스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아이돌보미 서비스 수준의 질적 제고와함께 해당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정보제공을 통해서 신뢰를 확보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⁴⁾ 본 분석의 경우 사례수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표 4-20〉아이돌보미를 신청하지도 이용하지도 않은 사유 (2014)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아이돌보미 사업을 몰라서	40	(8.8)
관심이 없어서(필요 없어서)	173	(37.9)
대기기간이 길어서	33	(7.2)
등록절차가 복잡해서	66	(14.4)
돌보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안가서	141	(30.9)
비용이 비싸서	1	(0.2)
이용 조건이 맞지 않아서	1	(0.2)
집에 모르는 사람이 오는 것이 싫어서	2	(0.4)
<u></u> 계	457	(100.0)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녀양육 실태 및 정책 요구도·수요도」(원자료)

3. 시사점

전반적으로 보육시설 이용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용시간 측면에서도 유치원의 경우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개인양육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만3세 이전까지는 개인대리양육의 비율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개인양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대부분 친인척 돌봄에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기에는 개인양육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친인척 등의 도움을 받을 수없는 경우 사설베이비시터를 이용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시설보육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가정내 보육에 대한 지원 강화가 요구된다. 또한 맞벌이 가구의 경우 유아기에 접어들어서 시설보육을 이용할 경우에도 근로시간으로 인해 초래되는 양육공백을 채우기 위해 또는 장시간 시설보육을 선호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개인돌봄서비스를 병행하여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

는 이유로 적합한 시설의 부재, 시설환경 및 서비스 수준에 대한 불만족 등인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공급확대가 필요하다. 반면, 시설이용에 대한 비용부담으로 인해 개인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급격하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보육료·교육료 지원 확대에 따른 효과로 보인다.

맞벌이 가구를 위하 양육지원 정책으로 새로운 정책의 도입보다는 국 공립 시설 확충을 통한 서비스 기관 확대 및 아이돌보미 사업과 같이 기 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을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필요 가 있다. 특히 아이돌보미의 경우 맞벌이 가구의 가정양육수요를 충족시 켜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에 따른 양육공백을 채워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정책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확대가 요구된다. 다만 해당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와 돌보미질 개선 및 서비스에 대한 신뢰 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4절 일 가정양립 및 자녀양육의 어려움

1. 경제활동 및 경력단절

아동패널 자료에 따르면 2008~2011년간 홑벌이를 유지한 비율은 58.5%로 절반이상이 홑벌이 가구인 상태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년간 맞벌이를 지속한 부부의 비율은 15.1%, 홑벌이에서 맞벌이로 이동한 부부의 비율은 14.4%, 맞벌이에서 홑벌이로 이동한 비율은 12.0% 로 아동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에서 홑벌이로 이동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1차년도에 아이의 출산휴가를 기점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비

율이 가장 높으며 홑벌이에서 맞벌이로 이동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4차 년도에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한 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한 비율(6.6%)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1〉 경제활동 변화 현황 (2008~2011년)

(단위: 명, %)

구분 ¹⁾	빈도 비율			
4년간 홑벌이	1,130	58.5		
맞벌이 →홑 벌이 ²⁾				
1차년도	124	6.4		
2차년도	62	3.2		
3차년도	47	2.4		
홑벌이→맞벌이 ³⁾				
2차년도	71	3.7		
3차년도	79	4.1		
4차년도	128	6.6		
4년간 맞벌이	292	15.1		
계	1,933	100.0		

주: 1) 고용형태가 일관되지 않은 대상은 제외됨.

출처: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원자료)

맞벌이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사유를 살펴보면, '아이를 직접 돌보고 싶기 때문(41.4%)'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동생의 임신 또는 출산(15.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어서(10.0%)', '직장/학교생활과 아이 양육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 것같아서(5.7%)'라고 응답한 사례가 뒤를 이었다(표 4-22).

²⁾ 맞벌이→홑벌이는 1차년도에 맞벌이, 1~2차년도에 맞벌이, 1~3차년도의 맞벌이에서 홑벌이로 이동을 의미함.

³⁾ 홑벌이→맞벌이는 1차년도에 홑벌이, 1~2차년도에 홑벌이, 1차년도의 홑벌이에서 맞벌이로 이동을 의미함.

〈표 4-22〉 1,2,3차년도에 맞벌이→홑벌이로 이동한 사유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직장에서의 분위기 또는 불이익 때문에	3	(4.3)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어서	7	(10.0)
아이를 맡길 만큼 보수가 넉넉하지 않아서	2	(2.9)
직장/학교생활과 아이 양육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 것 같아서	4	(5.7)
아이를 직접 돌보고 싶어서	29	(41.4)
다른 일자리나 공부를 시작하기 위해	2	(2.9)
건강상의 이유로	2	(2.9)
동생의 임신 또는 출산	11	(15.7)
가족이 원해서	2	(2.9)
기타	8	(11.4)
계 ¹⁾	70	(100.0)

주: 1) 결측값 제외.

출처: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원자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자녀양육 실태 및 정책 요구도·수요도」조사에 따르면 현재 맞벌이 가구의 30.1%, 홑벌이의 53.2%가 경력단절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4-23). 본 조사에서 경력단절은 '취업을 했다가 혼인·임신·출산 및 육아 가사 등의 사유로 노동시장을 떠난 경우'로 정의 하고 있다.

경력단절을 경험한 사람들의 경력단절 사유를 살펴보면 〈표 4-24〉와 같다. 현재 맞벌이 가구의 주요 경력단절 이유는 '출산 후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어서' 인 것으로 조사된 반면, 현재 홑벌이 가구의 주요 경력단절 이유는 '결혼·임신·출산·육아로 인한 직장에서의 분위기 또는 불이익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통적으로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들어서' 경력단절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23〉 경력단절 경험여부

(단위: 명, (%))

그 말		벌이	홑	벌이
구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있음	107	(30.1)	83	(53.2)
없음	248	(69.9)	73	(46.8)
합계	355	(100.0)	156	(100.0)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녀양육 실태 및 정책 요구도·수요도」(원자료)

〈표 4-24〉 경력단절 사유

(단위: 명.(%))

구분	맞늹	벌이	홑벌이		
予 证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결혼·임신·출산·육아로 인한 직장에서의 분위기 또는 불이익 때문에	13	(12.1)	18	(21.7)	
결혼 준비를 위해서	4	(3.7)	15	(18.1)	
임신하기 위해서	5	(4.7)	7	(8.4)	
출산 후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어서	50	(46.7)	11	(13.3)	
출산 후 아이를 맡길 만큼 보수가 넉넉하지 않아서	6	(5.6)	5	(6.0)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들어서	21	(19.6)	19	(22.9)	
학업을 위해서	0	(0.0)	1	(1.2)	
가족이 원해서	1	(0.9)	3	(3.6)	
아이를 직접 돌보고 싶어서	7	(6.5)	4	(4.8)	
 계	107	(100.0)	83	(100.0)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녀양육 실태 및 정책 요구도·수요도」(원자료)

2. 일:가정 양립 갈등 및 자녀양육 어려움

맞벌이가 경험하는 일가정양립 갈등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이라는 두 영역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험이기 때문에 두 영역이 주는 갈등을 모두 살 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일이 가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가정양립갈등 요인 과 가정이 일에 영향을 미치는 일·가정양립갈등 요인에 대하여 각각 살펴 보았다.

먼저 일이 가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표 4-25),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가정생활에 지장을 준다'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2007년 38.8%에서 2012년 34.8%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일하는 시간이 불규칙해서 가정생활에 지장을 준다'에 대한 긍정적응답 비율 또한 31.4%, 23.9%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따라 근로에 따른 일가정양립갈등은 다소 감소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근로환경이 과거에 비해서 나아진 상황이거나 동일한 상황에서일과 가정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인해 갈등이 감소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표 4-25) 맞벌이의 일이 가정에 미치는 일가정양립갈등 (2007, 2008, 2010, 2012)(단위: %, 명)

구분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2007	28.7	58.8	11.5	1.0	4,278
일을 하는 것은 내게 삶의	2008	25.6	66.0	7.6	0.8	3,953
보람과 활력을 준다	2010	25.1	66.3	7.8	0.8	4,160
	2012	22.8	68.0	8.5	0.7	4,198
010 710 7111 1175 7111	2007	24.2	58.7	16.1	1.0	4,276
일을 함으로써 식구들한테	2008	20.3	65.4	13.4	0.9	3,953
더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10	18.3	65.1	15.3	1.3	4,160
O IL I	2012	16.9	67.5	14.9	0.8	4,198
	2007	22.0	58.8	18.1	1.2	4,274
일을 함으로써 가정생활도	2008	19.9	65.0	14.2	0.9	3,953
더욱 만족스러워 진다	2010	18.5	66.8	13.6	1.1	4,160
	2012	18.2	68.0	13.2	0.7	4,198
	2007	-	-	-	-	-
일을 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2008	-	-	-	-	-
	2010	11.8	55.5	23.2	9.5	4,160
	2012	11.5	57.9	24.0	6.6	3,823

110 자녀양육 실태 및 돌봄지원 서비스 개선방안: 맞벌이 가구 중심으로

구분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2007	6.1	32.7	47.9	13.2	4,275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2008	4.9	34.9	44.6	15.5	3,953
가정생활에 지장을 준다	2010	3.7	34.4	44.6	17.3	4,160
	2012	3.2	31.6	44.3	21.0	4,198
	2007	4.8	26.6	51.9	16.7	4,276
일하는 시간이 불규칙해서	2008	3.8	27.1	51.1	18.0	3,953
가정생활에 지장을 준다	2010	2.3	26.9	49.7	21.2	4,160
	2012	2.0	21.9	51.6	24.5	4,198

주: 미상제외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패널」(원자료)

가정이 일에 미치는 일가정양립갈등 현황을 살펴보면(표4-26), '집안일이 많아서 직장 일을 할 때도 힘들 때가 많다'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 비율이 2007년 39.1%에서 2012년 32.9%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자녀양육 부담으로 인해 일을 병행하는 것이 힘을 때가 많다'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2007년 48.5%에서 2012년 44.2%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근로시간에 의한 일가정 양립갈등은 개선되었고 가사노동에 따른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도 다소 감소하였으며 자녀양육부담에 따른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도 다소 감소한 상황으로 일가정 양립 갈등은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는 해당년도의 경제사회적 특성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 단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가 사회전반의 현상으로 보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전반적으로 공공부문과 대기업의 근로환경은 일가정 양립측면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측되나, 중소기업의 상황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4-26) 맞벌이의 가정이 일에 미치는 일가정양립갈등 (2007, 2008, 2010, 2012)(단위: %, 명)

구분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2007	21.7	48.8	24.0	5.5	4,071
가족부양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더 열심히 일을	2008	21.0	51.3	23.6	4.1	3,757
하게 된다	2010	18.8	52.2	23.9	5.1	3,851
	2012	17.4	54.2	24.2	4.2	3,847
	2007	16.5	56.3	23.9	3.3	4,273
식구들이 내가 하는 일을	2008	15.5	61.9	20.7	1.9	3,953
인정해 주어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된다	2010	13.1	61.6	21.9	3.4	4,160
	2012	12.9	62.2	22.2	2.7	4,198
	2007	9.3	39.2	34.3	17.2	3,380
자녀양육 부담으로 인해	2008	9.4	38.7	34.9	17.0	2,935
일을 병행하는 것이 힘을 때가 많다	2010	8.6	43.1	33.5	14.8	3,012
	2012	6.8	37.4	38.6	17.2	3,079
	2007	5.4	33.7	40.2	20.7	4,274
집안일이 많아서 직장일을	2008	4.7	34.0	42.3	19.0	3,953
할 때도 힘들 때가 많다	2010	3.6	35.6	41.3	19.5	4,160
	2012	2.9	30.0	43.4	23.7	4,198

주: 미상제외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패널」(원자료)

자녀양육의 어려움에 관한 2010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4-27〉와 같다. 맞벌이 여부에 관계없이 상당수의 가구에서 '양육 및 보육관련 정보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구하기 어려움', '자녀를 직접 돌볼 시간이 부족'에 대한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반면 흩벌이 가구의 경우 '자녀 양육과정 스트레스'에 대한 어려움이 더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맞벌이 가구에 대한 자녀돌봄지원 인프라 확충과함께 홑벌이의 양육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양육지원대책도함께 고려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표 4-27) 자녀양육의 어려움 (2010)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양육 및	전체	1.8	14.7	43.1	38.0	2.4	823
보육관련	맞벌이	0.7	11.7	49.2	34.8	3.5	234
정보부족	홑벌이	2.4	16.3	41.5	38.2	1.7	557
자녀를 돌봐줄	전체	10.4	30.8	37.7	17.9	3.1	823
사람을 구하기	맞벌이	7.2	21.1	42.1	24.7	4.8	234
어려움	홑벌이	11.9	36.3	34.7	14.5	2.3	557
자녀	전체	2.2	17.6	44.3	33.6	2.3	823
양육과정	맞벌이	2.2	16.6	51.7	25.7	3.7	234
스트레스	홑벌이	2.2	18.9	41.1	35.9	1.9	557
 자녀를 직접	전체	8.1	29.1	32.9	28.6	1.3	823
돌볼 시간이	맞벌이	1.4	16.6	40.5	38.2	3.3	234
부족	홑벌이	11.4	34.8	29.3	23.9	0.5	557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kosis)

보육실태조사에 따른 취업모의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살펴보면 (표 4-28), '양육비용'에 대한 어려움은 2004년 25.2%에서 2009년 16.4%로 감소한 반면 '과중한 양육 및 가사부담'에 대한 어려움은 30.7%에서 34.6%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믿고맡길 곳이 마땅치 않음'에 대한 어려움은 23.1%에서 17.2%로 감소하여 해당기간 동안 양육지원 인프라 확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7.2%의 취업모 가구에서 '믿고 맡길 곳'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지속적인 양육지원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사항임을 반증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인프라의 양적 확대와 함께 서비스의 질적수준 제고를 통해 '믿고 맡길 곳'에 대한 시설 확충이 요구된다.

(표 4-28) 취업모의 자녀양육의 어려움 (2004, 2009)

(단위: %, 명)

구분	양육비용	과중한 양육 및 가사부담	민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음	긴급상황시 지원체계 미비	기타	없음	계
2004년	25.2	30.7	23.1	8.0	0.7	12.3	1,723
2009년	16.4	34.6	17.2	5.4	0.0	15.9	2,082

출처: 보건복지부, 「보육실태조사」, 각년도 (kosis)

3. 근로시간과 육아지원시설 이용시간

여성의 근로시간에 따른 육아지원시설 이용시간에 대한 2011년 아동 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상자의 35.8%가 시설이용시간보다 근로시간 이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29〉 여성의 근로시간에 따른 육아지원시설 이용시간 (2011)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근로시간(보육시설이용시간	330	(56.8)
근로시간= 보육시설이용시간	43	(7.4)
근로시간〉 보육시설이용시간	208	(35.8)
계	581	(100.0)

출처: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원자료)

보육시설이용시간이 근로시간을 커버하지 못하는 경우의 양육유형을 분석한 결과(표 4-30), 이들 중 19.7%는 개인 대리 양육을 추가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나머지 80.3%는 추가양육자는 없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이 경우 상대 배우자등이 양육을 담당하는 경우일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다. 이처럼 근로시간이 시설보육이용시간보다 크면서 추가양육자가 없는 경우의 근로형태를 분석한 결과 주말에도 근로하는 경우가 37.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말근로자의 경우 시설이용시간보다 양육시간이 더클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말동안 배우자가 양육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4-30⟩ 보육시설 이용시간보다 근로시간이 더 긴 경우 양육형태 (2011)

(단위: 명, (%))

구분	빈도(비율)	비율
개인 대리 양육을 추가적으로 이용	41(19.7)	(19.7)
시설양육만 이용(추가 양육자없음)	167(80.3)	(80.3)
 계	208(100.0)	(100.0)

출처: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원자료)

〈표 4-31〉 보육시설 이용시간보다 근로시간이 더 긴 경우 추가 양육자가 없는 여성의 근로요일 현황 (2011)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주중	105	(62.9)		
주중+주말	62	(37.1)		
계	167	(100.0)		

출처: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원자료)

본 연구에서 실제 시설이용시간과 희망이용시간에 대하여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표 4-32), 평균시간을 비교해 본 결과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시간보다 좀 더 늦게까지 이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맞벌이 가구는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하고 평균 16시 30분~17시 전후하여 시설이용을 마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희망이용

시간은 이들보다 약 30분~1시간정도 더 늦은 17시30분 ~17시50분 전후까지 이용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거의모든 유형의 시설에서 15시30분 전후까지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희망이용시간은 16시20분~17시 전후까지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맞벌이가구와 홑벌이 가구 모두 희망하는 시간까지 시설이용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32〉 시설 실제 이용시간과 이용 희망시간 평균(어린이집) (2014)

(단위: 명, 시:분)

			시설운영		정규프	로그램	실저	이용	희망이용	
구분		빈도	시작 시간	끝나는 시간	시작 시간	끝나는 시간	시작 시간	끝나는 시간	시작 시간	끝나는 시간
	민간어린이집	153	8:04	19:30	9:37	15:39	8:46	17:08	8:35	17:47
맞	국공립어린이집	49	7:54	18:59	9:22	16:03	8:51	16:50	8:38	17:34
호 벌 이	가정어린이집	29	8:13	18:52	9:20	16:15	9:58	16:32	8:39	17:26
ΟĮ	직장어린이집	3	8:00	21:00	9:20	17:20	8:00	18:00	9:00	18:00
	계	234	8:02	19:21	9:32	15:49	9:49	17:01	8:37	17:42
	민간어린이집	72	8:22	18:44	9:36	15:37	9:37	15:46	9:27	16:21
홑 벌	국공립어린이집	24	7:57	19:07	9:28	15:52	9:23	15:33	9:03	17:00
이	가정어린이집	8	8:50	17:50	9:24	15:30	9:34	15:31	9:26	16:12
	계	104	8:18	18:46	9:33	15:40	9:34	15:42	9:22	16:29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녀양육 실태 및 정책 요구도·수요도」(원자료)

어린이집 시설유형에 따라 실제이용시간과 희망이용시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표 4-33), 홑벌이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이 시간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맞벌이의 경우 가정어린이집이 시간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33〉 시설희망이용시간과 실제이용시간 차이(어린이집) (2014)

(단위: 명, 분)

	구분	빈도	희망시간과 실제이용시간의 차이
	민간어린이집	153	53.86
	국공립어린이집	49	65.10
맞벌이	가정어린이집	29	80.00
	직장어린이집	3	0.00
	계	234	58.76
	민간어린이집	72	46.32
ē₩NI	국공립어린이집	24	107.92
홑벌이	가정어린이집	8	62.50
	계	104	61.78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녀양육 실태 및 정책 요구도·수요도」(원자료)

유치원 이용가구의 실제 이용시간과 이용 희망시간을 살펴보면(표 4-34), 맞벌이 가구는 평균 15시20분~16시20분을 전후하여 시설이용을 마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희망이용시간은 이들보다 약 50분~90분정도 더 늦은 16시50분~17시 전후까지 이용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거의 모든 유형의 시설에서 15시30분 전후까지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희망이용시간은 15시30분~17시 전후까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유치원 이용자의 경우 또한 맞벌이가구와홑벌이 가구 모두 희망하는 시간까지 시설이용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34〉 시설 실제 이용시간과 이용 희망시간 평균(유치원) (2014)

(단위: 명, 시:분)

구분			시설운영		정규프로그램		실제이용		희망이용	
		빈도	시작	끝나는	시작	끝나는	시작	끝나는	시작	끝나는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맞	공립유치원	11	8:49	17:08	9:07	15:21	9:00	15:19	8:52	16:46
벌	사립유치원	41	8:09	20:40	9:34	14:56	8:47	16:24	8:43	17:07
0	전체	52	8:18	19:51	9:28	15:01	8:50	16:10	8:45	17:02

			시설운영		정규프로그램		실저	이용	희망이용	
구분		빈도	시작 시간	끝나는 시간	시작 시간	끝나는 시간	시작 시간	끝나는 시간	시작 시간	끝나는 시간
 홑	공립유치원	3	8:50	17:30	-	-	8:43	15:40	8:43	17:00
벌	사립유치원	16	8:04	18:32	9:26	14:52	9:05	15:23	9:00	15:33
0	전체	19	8:09	18:25	9:26	14:52	9:02	15:26	8:57	15:4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녀양육 실태 및 정책 요구도·수요도」(원자료)

유치원 시설유형에 따라 실제 이용시간과 희망이용시간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표 4-35), 공립유치원의 경우 시간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 었으며 사립유치원의 경우 맞벌이의 경우 홑벌이 경우보다 시간차이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어린이집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국공립 시설 을 이용하는 경우 실제 이용시간과 희망이용시간가의 차이가 더 크다는 것은 시설 운영시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4-35〉 시설희망이용시간과 실제이용시간 차이(유치원) (2014)

(단위: 명, 분)

	구분	빈도	희망시간과 실제이용시간의 차이
	공립유치원	11	100.91
맞벌이	사립유치원	41	49.88
	계	52	60.67
	공립유치원	3	103.33
홑벌이	사립유치원	16	15.63
	계	19	29.47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녀양육 실태 및 정책 요구도·수요도」(원자료)

시설 이용시 희망시간과 실제이용시간의 차이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맞벌이이면서 유치원을 이용하는 가구의 경우희망시간과 실제이용시간의 불일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4-36). 홑벌이의 경우 유치원 이용가구보다 어린이집 이용가구의 불일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36〉 시설 이용시 희망시간과 실제이용시간의 차이여부 (2014)

(단위: 명, (%))

		맞벌이						홑벌이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집· 유치원		유치원		어린이집		어린이집· 유치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불일치	79	(33.9)	20	(38.5)	99	(34.7)	29	(28.2)	2	(10.5)	31	(25.4)	
일치	154	(66.1)	32	(61.5)	186	(65.3)	74	(71.8)	17	(89.5)	91	(74.6)	
계	233	(100.0)	52	(100.0)	285	(100.0)	103	(100.0)	19	(100.0)	122	(100.0)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녀양육 실태 및 정책 요구도·수요도」(원자료)

시설 이용시 희망이용시간과 실제이용시간이 불일치하는 사유로는 (표 4-37), '시설운영시간과 나의 근로시간이 맞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이밖에 '운영시간 내 이지만 이용유아가 없어서 혼자둘 수 없어 빨리 하원해야 하는 상황', '시설이용은 가능하지만 원하는 시간까지 이용하기 눈치 보여서', '정규시간 이외의 보육프로그램이 없어서 아이가 방치된다고 느껴 빨리 데려옴'에 대한 응답비율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시설의 눈치가 보여서 충분히 시설이용을 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9%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와 같은 응답사례에 비추어 볼 때 시설의 법적 운영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자녀를 맡기는 부모를 선호하지 않는 상황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된다.

〈표 4-37〉 희망이용시간과 실제 이용시간이 다른 이유 (2014)

(단위: 명, (%))

구분	맞	벌이	홑벌이		
予 证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시설운영시간과 나의 근로시간이 맞지 않음(새벽출근/ 반일반 시설 이용 등)	36	(36.0)	0	(0.0)	
운영시간 내 이지만 이용유아가 없어서 혼자 둘 수 없어 빨리 하원해야 하는 상황	19	(19.0)	6	(18.8)	
법적 시설운영시간을 원에서 지키지 않은 것 같음(늦게 오픈/ 일찍 닫음)	3	(3.0)	2	(6.3)	
시설이용은 가능하지만 원하는 시간까지 이용하기 눈치 보여서	29	(29.0)	11	(34.4)	
정규시간 이외의 보육프로그램이 없어서 아이가 방치된다고 느껴 빨리 데려옴	12	(12.0)	12	(37.5)	
아이가 힘들어 할 것 같아서	1	(1.0)	1	(3.1)	
계	100	(100.0)	32	(100.0)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녀양육 실태 및 정책 요구도·수요도」(원자료)

4. 시사점

맞벌이 가구의 주요 경력단절 이유는 '출산 후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어서' 인 것으로 조사된 반면, 홑벌이 가구의 주요 경력단절 이유는 '결혼·임신·출산·육아로 인한 직장에서의 분위기 또는 불이익 때문'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노동시장에서 출산과 육아에 따른 불이익은 여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맞벌이 가구 여성을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갈등을 분석한 결과 근로에 따른 일·가정양립갈등, 가사노동에 따른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자양육부담에 따른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모두 감소한 상황으로 일·가정 양립 갈등은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근로환경이 과거에 비해서 나아진 상황이거나 동일한 상황에서 일과 가정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인해 갈등이 감소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일·가정 양

립갈등은 해당년도의 경제사회적 특성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 단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가 사회전반의 현상으로 보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전반적으로 공공부문과 대기업의 근로환경은 일가정 양립측면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측되나, 중소기업의 상황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자녀양육의 어려움에 관한 2010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맞벌이 여부에 관계없이 상당수의 가구에서 '양육 및 보육관련 정보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자녀 양육관련 전문 정보제공에 대한 정책마련이 요구된다. 보육실태조사에 따른 취업모의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살펴보면 '양육비용'에 대한 어려움은 개선된반면 '과중한 양육 및 가사부담'에 대한 어려움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실제 보육시설 이용시간과 희망이용시간을 비교한 결과 맞벌이가구와 홑벌이 가구 모두 희망하는 시간까지 시설이용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국공립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실제 이용시간과 희망이용시간 가의 차이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시설 운영시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원하는 시간까지 시설이용을 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자신의 자녀만 남아 있거나, 아이가 방치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부모들이 장시간의 시설이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5장 자녀돌봄 지원서비스 욕구 분석

제1절 자녀돌봄 지원서비스 만족도 제2절 자녀돌봄 지원정책 요구도

제3절 시사점

5

자녀돌봄 지원서비스 《 욕구 분석

제1절 자녀돌봄 지원서비스 만족도

본 장의 분석은 4장에서 소개된 「자녀양육 실태 및 정책요구도·수요 도」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실시되었다. 이와 함께 9명의 사례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심층면접조사 대상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5-1⟩ 조사대상자

연번	이름	연령	직업	자녀 연령	보육형태	근로여부
1	장○○	44세	전문직	4세	사립유치원+조부모	재직중
2	임〇〇	38세	시민단체	4세,7세	사립어린이집	휴직중
3	박〇〇	36세	공기업(시간제 근로)	4세,6세	국공립어린이집	재직중
4	김〇〇	41세	공기업(시간제 근로)	6세	민간어린이집	재직중
5	김〇〇	37세	전문직	21개월	민간어린이집	육아휴직
6	조〇〇	33세	사무직 (대기업)	12개월	조모	육아휴직
7	김〇〇	31세	사무직(중소기업)	21개월	가정어린이집+조모	재직중
8	김〇〇	39세	사무직 (중소기업)	22개월,8세	가정어린이집+아이 돌보미	재직중
9	7)00	34세	공무원	5세,3세	직장어린이집	재직중

1. 보육 현황 및 시설보육 만족도

연령별 보육현황을 살펴보면, 맞벌이 가구는 1~2세 영아의 경우 가정 보육이 주를 이루었고, 점차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시설보육'과 '시설보 육·가정보육'을 동시에 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홑벌이 가구는 시설보육만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졌으며, 맞벌이 가구는 상대적으로 시설보육·가정보육을 함께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 연령별 보육현황

(단위: 명. (%))

_	구분	시설보육			보육+ 정보육	가정	정보육	계		X ²
	. –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세	1	(6.7)	1	(6.7)	13	(86.7)	15	(100.0)	
	2세	11	(23.9)	10	(21.7)	25	(54.3)	46	(100.0)	
	3세	27	(38.6)	26	(37.1)	17	(24.3)	70	(100.0)	
맞	4세	29	(35.8)	42	(51.9)	10	(12.3)	81	(100.0)	111 (05***
벌 이	5세	35	(51.5)	30	(44.1)	3	(4.4)	68	(100.0)	111.625***
	6세	30	(51.7)	27	(46.6)	1	(1.7)	58	(100.0)	
	7세	9	(52.9)	8	(47.1)	0	(-)	17	(100.0)	
	전체	142	(40.0)	144	(40.6)	69	(19.4)	355	(100.0)	
	1세	-	(-)	2	(66.7)	1	(33.3)	3	(100.0)	
	2세	6	(21.4	9	(32.1)	13	(46.4)	28	(100.0)	
	3세	10	(32.3	12	(38.7)	9	(29.0)	31	(100.0)	
홑 벌	4세	14	(40.0	15	(42.9)	6	(17.1)	35	(100.0)	26.2/2*
밀 이	5세	17	(54.8)	12	(38.7)	2	(6.5)	31	(100.0)	26.242*
	6세	10	(55.6)	8	(44.4)	-	(-)	18	(100.0)	
	7세	5	(50.0)	4	(40.0)	1	(10.0)	10	(100.0)	
	전체	62	(39.7)	62	(39.7)	32	(20.5)	156	(100.0)	

주: *:P〈.05, **:P〈0.01, ***P〈0.001

⁵⁾ 보육형태에 할당을 주었으나, 자녀의 연령에 대한 할당은 하지 않았음으로, 연령별 특성은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표 5-3〉 시설보육 이용현황

(단위: 명, (%))

구분	맞	벌이	홑벍	벌이
千 世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어린이집	234	(81.8)	104	(83.9)
민간어린이집	153	(65.4)	72	(69.2)
국공립어린이집	49	(20.9)	24	(23.1)
가정어린이집	29	(12.4)	8	(7.7)
직장어린이집	3	(1.3)	0	(0.0)
유치원	52	(18.2)	19	(15.3)
공립유치원	11	(21.2)	3	(15.8)
사립유치원	41	(78.8)	16	(84.2)
기타	0	(0.0)	1	(0.8)
계 	286	(100.0)	124	(100.0)

맞벌이 가구가 이용하는 시설의 만족정도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 어린이집보다 유치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4). 어린이집이 유치원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온 항목은 '보육료 외의추가비용납부 만족도'와 '일하는 시간 배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유치원 비용이 어린이집 비용보다 더 높은 상황과 어린이집 운영시간이 더 길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어린이집, 유치원 모두 정규프로그램 운영 시간 이외의 아침, 저녁 보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정규 보육프로그램 운영시간의 만족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침·저녁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사유로는 프로그램이 없거나, 프로그램의 질 낮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한 심층면접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3 (국공립 어린이집): 일찍 끝나고 집안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정규시간 이후 한시 간 정도 특별활동을 시킴. 아이들을 데리러 가면 선생님들은 청소하고 계심. 아이들이 방치되는 걸 보니 점점 더 일찍 데리고 오게됨.

〈표 5-4〉 맞벌이의 시설 이용 만족도

(단위: 명, %)

74	어린	이집	유경	디 원	계	
구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보육료 외 특별활동 등 추가비용 수납	4.05	0.69	3.92	0.62	4.02	0.68
주거지에서의 거리	4.25	0.78	4.48	0.64	4.29	0.76
일하는 부모를 배려한 운영시간	3.99	0.79	3.85	0.94	3.97	0.82
입소하기까지의 대기기간	3.91	0.96	3.94	0.85	3.91	0.94
정규 보육프로그램의 질	4.05	0.56	4.15	0.61	4.07	0.57
정규 프로그램 전(이른아침) 보육·교육 서비스 질 ¹⁾	3.85	0.66	3.93	0.81	3.87	0.69
정규 프로그램 이후(저녁) 보육·교육 서비스 질 ²⁾	3.91	0.68	4.11	0.61	3.94	0.67
교사의 질	4.04	0.59	4.12	0.55	4.05	0.58
급식 등 안전 위생	4.00	0.60	4.15	0.57	4.02	0.59

주: 1) 불만족사유로는 프로그램이 없다

입소하기까지의 대기기간에 대한 만족도도 타 항목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현실적으로 이용자들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에 대한 면접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5 (민간어린이집): 10월에 이사오니까 대기가 200번 300번임. 근데 신랑 직장은 여의도인데 직장어린이집은 1년 이상을 기다림. 직장 보내시는 분들 보니까, 먼 곳인데 도 엄마가 집에서 쉬는데 아이를 여의도까지 보낸.

사례1 (사립유치원+조부모): 아파트 밀집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 근처는 완전히 다 차서, 대기가 100명이상 됨. 국공립 가정어린이집까지 알아봤으나 다 참. 그래서 만 3돌까지 는 제가 데리고 있었음

²⁾ 불만족사유로는 낮잠시간이 길다 ,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다, 프로그램의 질이 낮다, 전문성 이 떨어진다. 교구가 활용되지 않는다

사례6 (조모): 서울시 어린이집을 하려고 했었음. 직접 어린이집 대기를 걸어 놓았음. 대기인이 많아서 순차가 안됨. 빨리 한다고 해도 점수가 부족해서 대기가 너무 많음.

맞벌이의 경우 운영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어린이집이 유치원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운영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보육료, 거리, 정규프로그램 질, 교사의 질, 급식 등 안전위생 보다 만족도가 낮은 항목으로 조사되었다. 앞서 4장에서 분석된 시설이용시간과 희망이용시간의 차이를 고려할 때 운영시간의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법적운영시간 내에서도 시설이용에 제한을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심층면접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5 (민간어린이집): 오히려 맞벌이인 집을 아예 안 받는 어린이집도 있음. 휴직중이라서 가능할 수 있었다고 함(친구사례). 어린이집 자체에서 맞벌이를 아예 안받음. 이용시간은 10-4시임. 이용하는 엄마들이 전부 전업주부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이후시간 아이를 커버하는 분이 있어야함. 그 조건에 안 맞으면 받지 않음. 맞벌이가 우선순위가 있으나 관리감독을 할 수 없음. 오히려 맞벌이라 역차별이 더 있음. 맞벌이지만 언제든 양육에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 해야함. 대기 상태에서는 전화를 무조건 많이 해야함.

사례7 (가정어린이집 + 조모): 9시 40분에 갔더니, 앞으로 오전 10시에 오라고 함. 처음에는 10시에 갔다가 12시에 데리고 옴. 그게 2주 정도 할머니가 돌봐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짧은 시간동안 맡기기 선호하였음.

사례8 (가정어린이집+아이돌보미): 어린이집 실제 이용시간은 7시 반까지 맡길 수 있으나, 그전에 모든 아이들을 다들 데리고 감.

사례3 (국공립 어린이집): 저는 아침에 8시에 애를 맞기고 3시에 퇴근 하고 집안일 후 5시에 아이를 데리고 옴. 7시 반까지 한다고 하지만 6시면 아이들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음.

사례1 (사립유치원+조부모): 저도 제가 이용하는 반이 맞벌이만 이용하는 반임에도 불구하고 픽업하는 날 한 6시반 전후해서 두세명 남아있음.

자녀가 기관에 다니는 사유를 살펴보면(표 5-5), 맞벌이 가구의 경우가장 주된 사유로는 '부모가 직접 돌보기 어려워서(69.2%)', '사회성 발달을 위하여(10.8%)'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홑벌이 가구는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22.6%)',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21.0%)'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 (16.1%)'인 것으로 나타나, 맞벌이 가구의 시설 이용의 주된 사유는 아동의사회성 발달 및 양육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 자녀가 기관에 다니는 사유(1순위)

(단위: 명, (%))

78	맞詩	벌이	홑	벌이
구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직장 및 외부활동 등의 이유)	198	(69.2)	16	(12.9)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	26	(9.1)	28	(22.6)
초등학교 준비를 위하여	13	(4.5)	8	(6.5)
특기교육을 위하여	2	(0.7)	4	(3.2)
사회성 발달을 위하여	31	(10.8)	26	(21.0)
주위에 놀이상대가 없어서	6	(2.1)	11	(8.9)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 ¹⁾	8	(2.8)	20	(16.1)
보육교육비가 전액지원 되어서	2	(0.7)	11	(8.9)
합계	286	(100.0)	124	(100.0)

주: 1) 부모 및 타인이 돌볼 수 있으나 양육부담을 덜기위해 시설이용

시설이용연령과 희망시설이용연령을 살펴보면, 맞벌이가 홑벌이보다 시설 이용연령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시설이용연령과 희망 이용연령의 차이도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맞벌이 가구의 실제 시설이용 연령은 21.8개월이며 희망이용연령은 27.8개월로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보다 약 6개월 더 빨리 자녀를 시설에 입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홑벌이의 경우 실제 시설이용연령은 26.1개월이며 희망이용연령은 30개월로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보다 약 4개월 빨리 자녀를 시설에 입소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6〉 시설이용연령과 희망시설이용연령

(단위: 개월)

구분	맞벍	벌이	홑벌이			
十 世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시설이용연령	21.86	10.38	26.10	11.24		
희망시설이용연령	27.85	11.56	30.04	11.09		

실제 시설이용연령과 희망이용연령의 차이가 나는 사유를 살펴보면, 맞벌이는 직장상의 이유 혹은 양육공백으로 인해 먼저 자녀를 시설에 다니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사유로는 육아휴직이 맞지 않거나(38.5%), 육아휴직이 없거나(14.9%), 가정 내 육아를 해줄 사람이 없어서(12.2%)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홑벌이는 양육부담(36.5%) 혹은 대기기간으로 인해 늦어짐(17.5%)으로 인해 희망이용연령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기간이 길어짐을 예상해 오히려 빨리 입소시키는 경우또한 맞벌이(18.9%)와 홑벌이(23.8%) 모두에게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사례5 (민간어린이집): (육아휴직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금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을) 계속 다닐 예정임. 유치원에 다닐 정도의 나이가 되면 옮기려고 함. 아이가 17개월부터 다님 사실 좀 어리다고 생각함. 2살 때 보내려 했는데 (복직 후 아이가 시설에) 적응기간을 위해 보냄.

〈표 5-7〉시설이용연령과 희망시설이용연령이 차이가 나는 사유

(단위: 명, (%))

78	맞	벌이	홑	X ²	
구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X
희망 취원연령과 육아휴직기간이 맞지 않아서	57	(38.5)	3	(4.8)	
건강상의 이유로	1	(0.7)	7	(11.1)	
가정내 육아가 힘들어서	16	(10.8)	23	(36.5)	
입학시기(3월)가 지나면 자리가 없을 것 같아 미리 입소시킴	28	(18.9)	15	(23.8)	
직장의 여건(육아휴직 불가 등)으로 인해	22	(14.9)	1	(1.6)	71.944***
대기기간이 길어지면서 이용연령이 늦어짐	5	(3.4)	11	(17.5)	, 19 11
가정내 육아를 해줄 사람이 없어서	18	(12.2)	2	(3.2)	
아이가 희망해서	1	(0.7)	0	(0.0)	
국외 거주	0	(0.0)	1	(1.6)	
 계	148	(100.0)	63	(100.0)	

주: *:P〈.05, **:P〈0.01, ***P〈0.001

2. 가정내 돌봄지원 서비스 이용 현황 및 만족도

전반적으로 가정내 돌봄지원 서비스는 혈연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홑벌이의 경우 80.9%가 조부모나 친인척을 통한 가정내 돌봄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또한 조부모가 64.3%(137명), 친인척이 13.1%(28명), 베이비시터가 11.7%(25명)순으로 개인양육지원서비스의 대부분이 혈연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혈연을 이용하는 경우 베이비시터를 이용하는 비율은 11.7%로 맞벌이와 홑벌이의 차이가 없었으며 정부사업인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비율은 맞벌이 8.0%, 홑벌이 5.3%로 조사되었다.

〈표 5-8〉 개인대리양육서비스 이용 현황

(단위: 명, (%))

78	맞벍	벌이	홑벌이					
구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조부모	137	(64.3)	67	(71.3)				
친인척	28	(13.1)	9	(9.6)				
베이비시터	25	(11.7)	11	(11.7)				
아이돌보미	17	(8.0)	5	(5.3)				
조부모+아이돌보미	4	(1.9)	0	(0.0)				
기타(지인)	2	(0.9)	2	(2.1)				
계	213	(100.0)	94	(100.0)				

맞벌이는 평일 주 5일 가정 내 돌봄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76.1%로 가장 높고 홑벌이의 경우 평일 주 3~4일 이용률이 48.9%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맞벌이는 자녀 양육 공백을 위해 평일 주 5일 가정 내 돌봄 지원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서비스 제공자가 함께 거주하는 유형이며, 홑벌이는 자녀 양육 부담완화를 위해 주중 3~4일 이용한다고 볼 수 있다.

서비스제공비용에 대한 지불 유형도 맞벌이 여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의 경우 정기적(66.3%) 또는 부정기적 (19.9%)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86.2%인 반면 홑벌이의 경우 정기적(40.4%) 또는 부정기적(22.5%)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62.9%인 것으로 나타나 맞벌이 가구가 가정 내 돌봄 서비스 이용에 비용을 지불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맞벌이의 경우 고정양육자가 근로시간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반면, 홑벌이의 경우 양육시간에 대한 자율성이 크고 조부모가 양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율이 높은 점 등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표 5-9〉 개인대리양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요일 및 지불방법

(단위: 명, (%))

	구분	맞텱	벌이	홑	X ²	
	千正	빈도	비율	빈도	비율	^
	월-금	162	(76.1)	32	(34.0)	
	월-토	10	(4.7)	6	(6.4)	
이용	평일 중 3-4일	6	(2.8)	46	(48.9)	100 (100)
요일	주말 중 3-4일	6	(2.8)	3	(3.2)	102.619***
	함께 거주	29	(13.6)	7	(7.4)	
	계	213	(100.0)	94	(100.0)	
	지불안함	15	(7.7)	24	(27.0)	
	정기적으로 지불	130	(66.3)	36	(40.4)	
지불	부정기적으로 지불	39	(19.9)	20	(22.5)	25.239***
방법	현물로 지불	12	(6.1)	9	(10.1)	
	계	196	(100.0)	89	(100.0)	

주: *:P<.05, **:P<0.01, ***P<0.001

가정내 돌봄지원 서비스 만족도를 살펴보면(표 5-10), 돌봄제공자에 따라 만족도에 차이가 조금씩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부모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가까운 혈연관계에 의한 신뢰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조부모가 가정양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용시간, 이용비용, 양육방식, 전문성, 성실성 등 모든 면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1 (사립유치원+조부모): 끝나면 아이들 봐줄 사람이 없어, 친정엄마가 00에 살아. 저희가 그냥 이사를 오게 됨. 제가 올 때까지 애를 봐주심.

사례7 (가정어린이집+조모): 할머니가 안전하니까, 어린이집도 보내야 하고 모르는 사람을 또 써야 하니까 (부담됨). 그 사람이 와서 한다는 것도 안정이 안됨.

비혈연서비스인 베이비시터와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비교하였을 때, 전 반적으로 베이비시터보다 아이돌보미에 대한 만족도가 더 큰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이용비용'과 '돌보는 사람의 성실성'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 하였을 때, 아이돌보미에 대한 만족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돌보미의 경우,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사전 교육을 받은 돌보미가 파견된다는 점에서 이용비용과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아이돌보미 이용사례에 대한 심층면접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8(가정어린이집+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돌보미가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는 것이 좋음. 육아상식을 잘 알고 있음. 손발을 다 닦이고, 밥도 잘 먹여주고, 아이의 연령에 따라 필요한 책을 읽어줌. 안 좋았던 점은 현금결제 해야 하는데, 기간 안에 신청을 해야함. 특별히 신청에 대한 안내 없이 이루어짐. 마포구 수요는 높은데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별로 없어서 계속 바뀜. 신청을 분기별로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음.

가정 내 돌봄지원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이용시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4.34점), 이는 가정양육지원 서비스는 부모의 퇴근시간이 늦어지더라도 늦은 시간까지 자녀를 돌봐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5-10〉 맞벌이의 개인대리양육서비스 만족도

(단위: 점)

	조부모		친인척		베이비시터		아이돌보미		계 ¹⁾		_
구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F
이용시간	4.41	.58	4.32	.48	4.12	.60	4.18	.95	4.34	.61	2.112
이용비용	4.42	.66	4.18	.72	3.52	.82	4.00	1.00	4.24	.78	11.717***
양육방식 (서비스내용)	4.25	.75	4.07	.66	3.88	.67	3.94	.66	4.15	.73	2.612+
돌보는 사람 전문성	3.91	.81	3.75	.70	3.68	.56	3.82	.88	3.86	.77	0.855
돌보는 사람 성실성	4.39	.58	4.36	.56	3.92	.49	4.29	.47	4.32	.58	4.907**

주: *:P〈.05. **:P〈0.01. ***P〈0.001

¹⁾ 계에서 조부모와 아이돌보미를 함께 이용(4명)하거나 지인(2명)을 이용한 경우는 제외됨

시설보육과 가정 내 양육지원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는 응답자의 이용 이유를 살펴보면, 맞벌이와 홑벌이 모두 '장시간 시설보육을 선호하지 않 아서(45.1%, 64.5%)'인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여성은 시설운영시간 과 퇴근시간이 맞지 않기 때문에 가정 내 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비 율(18.8%)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근로시간으로 인한 자녀양육 공백 을 채우기 위한 방안으로 가정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앞서 시설보육에서 느끼는 불만족 사유 또한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는데, 정규시간 이외에 보육프로그램이 없어 아이를 방치한다고 느끼거나(16.7%, 14.5%), 운영시간이지만 이용유아 가 없어 자녀를 혼자 둘 수 없어 빨리 하원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8.3%. 16.1%)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결론적으로. 보육시설의 운영시간 내에서도 장시간의 시설보육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 및 제공되는 서비스 질에 대한 불만족 등의 이유로 가정내 양육지원 서비 스를 추가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는 시 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동안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수준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표 5-11⟩ 개인대리양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시설보육+가정보육)

(단위: 명, (%))

78	맞譆	벌이	홑	X ²	
구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
장시간 시설보육을 선호하지 않아서	65	(45.1)	40	(64.5)	
시설운영시간과 나의 근로시간이 맞지 않음(새벽출근/야근/반일반 시설 이용등)	27	(18.8)	0	(0.0)	
운영시간 내 이지만 이용유아가 없어서 혼자 둘 수 없어 빨리 하원해야 하는 상황	12	(8.3)	10	(16.1)	19.383**
법적 시설운영시간을 원에서 지키지 않음(늦게 오픈/일찍 닫음)	1	(0.7)	0	(0.0)	

구분	맞벌이		홑	X ²	
十 世	빈도	비율	빈도	비율	^
시설이용은 가능하지만 원하는 시간까지 이용하기 눈치보여서	15	(10.4)	3	(4.8)	
정규시간 이외의 보육프로그램이 없어서 아이가 방치된다고 느껴 빨리 데려옴	24	(16.7)	9	(14.5)	
- 	144	(100.0)	62	(100.0)	

주: *:P〈.05, **:P〈0.01, ***P〈0.001

3. 자녀돌봄 지원 정책 인지 현황 및 만족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육지원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맞벌이 여성이 홑벌이 여성보다 더 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무상보육은 다른 정책에 비해 가장 많이 인지하고 있는 정책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맞벌이의 81.4%(289명), 홑벌이의 78.2%(122명)가 무상보육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많이 인지하고 있는 양육지원정책은 양육수당으로 맞벌이의 68.2%(242명), 홑벌이의 66.0%(103명)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누리과정,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순으로 인지정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무상보육과 양육수당 지급 정책은 전 계층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지원 정책으로 이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반면, 아이돌보미 서비스 사업의경우 사업규모도 그리 크지 않고, 정책수혜대상자도 소득계층에 따라 선별적인 면이 있어서 이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이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한 수요증가 및 정책의의를 고려할 때 좀 더 적극적인 사업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5-12〉양육지원정책 인지여부

(단위: 명, (%))

								(- 1	0, (, -,,
	구분	무성	보육		-4세 ŀ정도입	미이용	!이집 :0-5세 당 지원		돌보미 ^일 사업
	잘안다	289	(81.4)	214	(60.3)	242	(68.2)	135	(38.0)
맞 벌	대략안다	60	(16.9)	115	(32.4)	102	(28.7)	175	(49.3)
이	모른다	6	(1.7)	26	(7.3)	11	(3.1)	45	(12.7)
	계	355	(100.0)	355	(100.0)	355	(100.0)	355	(100.0)
	잘안다	122	(78.2)	83	(53.2)	103	(66.0)	44	(28.2)
홑 벌	대략안다	34	(21.8)	58	(37.2)	49	(31.4)	86	(55.1)
이	모른다	0	(0.0)	15	(9.6)	4	(2.6)	26	(16.7)
	계	156	100.0	156	(100.0)	156	(100.0)	156	(100.0)

양육지원정책의 수혜정도를 살펴본 결과, 무상보육의 수혜를 받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맞벌이의 76.2%, 홑벌이의 75.0%이며, 누리과정으로 교육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맞벌이의 60.8%, 홑벌이의 48.2%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수당은 맞벌이의 49.7%, 홑벌이의 55.3%가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아이돌보미는 맞벌이의 17.4%, 홑벌이의 10.0%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3⟩ 양육지원정책 수혜여부

(단위: 명, (%))

	구분	무싱	보육	만3-4세 누리과정도입		미이용	!이집 :0-5세 당 지원		돌보미 !사업
	있음	266	(76.2)	200	(60.8)	171	(49.7)	54	(17.4)
맞벌이	없음	83	(23.8)	129	(39.2)	173	(50.3)	256	(82.6)
	계	349	(100.0)	329	(100.0)	344	(100.0)	310	(100.0)
	있음	117	(75.0)	68	(48.2)	84	(55.3	13	(10.0)
홑벌이	없음	39	(25.0)	73	(51.8)	68	(44.7)	117	(90.0)
	계	156	(100.0)	141	(100.0)	152	(100.0)	130	(100.0)
	X2	0.0	087	6.3	57**	1.3	302	3.9	06*

주: *:P〈.05, **:P〈0.01, ***P〈0.001

양육지원정책이 도움되는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현재 지원받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현재 지원받고 있는 지원정책의 양육부담해소의 도움 정도를 살펴본 결과, 맞벌이가 홑벌이 보다 양육지원정책의양육부담 도움정도에 대해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던 지원정책은 무상보육, 양육수당, 아이돌보미지원 사업이었다. 즉 맞벌이 여성은 홑벌이 여성보다 무상보육, 양육수당, 아이돌보미지원 사업이었다. 즉 맞벌이 여성과 홑벌이 여성간의 만족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맞벌이 가구와 홑벌이 가구의 서비스 기대수준 및이용방법의 차이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맞벌이 가구의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이양육부담 감소에 매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할 때 해당 정책의 확대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5-14〉 양육지원정책이 양육부담을 해소하는데 도움 정도

(단위: 점)

					(011 0)
구분	맞벌이		홑		
一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ι
무상보육	4.43	0.62	4.29	0.72	1.912+
만3-4세 누리과정도입	4.19	0.56	4.04	0.76	1.629
어린이집 미이용0-5세 양육수당 지원	4.25	0.73	4.06	0.75	1.888+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4.28	0.66	3.85	1.07	1.864+

주: +:P〈.1, *:P〈.05, **:P〈0.01, ***P〈0.001

현재 양육지원정책의 수혜여부에 따른 만족정도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정책으로는 누리과정, 양육수당,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이었으며, 수혜를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현재의 양육지원정책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5〉 수혜여부에 따른 양육지원정책 만족정도

(단위: 명, 점)

	수혜 받은 적 있음			수혜받은적 없음			
구분	빈도	평균	표준 편차	빈도	평균	표준 편차	t
무상보육	383	4.33	0.62	122	4.29	0.57	0.623
만3-4세 누리과정도입	268	4.22	0.62	202	4.04	0.63	3.162**
어린이집 미이용0-5세 양육수당 지원	255	4.29	0.73	241	4.38	0.73	6.893***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67	4.04	0.84	373	3.65	0.76	3.884***

주: *:P〈.05, **:P〈0.01, ***P〈0.001

맞벌이의 양육지원정책의 만족 정도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와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리과정, 양육수당, 아이돌보미의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맞벌이의 경우 현재 정책에 대해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수당과 아이돌보미의 경우 경험여부에 따라 만족정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 직접적으로 양육지원정책을 경험한 경우 해당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16〉 수혜여부에 따른 맞벌이의 양육지원정책 만족정도

(단위: 점)

7.8	수혜 받은	경험 있음	수혜 받은	경험 없음	
구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τ
무상보육	4.29	0.67	4.30	0.58	-0.191
만3-4세 누리과정도입	4.19	0.62	4.03	0.64	2.179*
어린이집 미이용0-5세 양육수당 지원	4.36	0.68	3.86	0.72	6.803***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4.13	0.75	3.59	0.77	4.689***

주: *:P〈.05, **:P〈0.01, ***P〈0.001

제2절 자녀돌봄 지원정책 요구도

양육지원정책의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국공립시설확충과 서비스질 항상,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이밖에 육아휴직제도 정착 및 확대에 대한 요구도가 그 뒤를 이었다.

육아지원 시설의 양적 확대 측면에서 유치원 확대설치가 요구되며 서비스의 질적 확대 측면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이 요구된다고 보인다. 국공립 시설의 확충을 요구하는 이면에는 국공립시설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수준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었다고 보이며 해당 시설의 확대는 시설의 양적확대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적 확대도 함께 이루어질 수있는 방법이라고 여겨진다. 또한 현재 무상보육이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유아교육비 지원확대에 대한 요구도가 상당하다는 것은 현행의 무상보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현장에서는 부모들은 국가에서 지원되는 보육료·유아교육료 이외의 추가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전히 보육·유아교육료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민간 어린이집 및 사립유치원에서 추가적으로 비용부담을 지우는 특별활동 및 현장학습 비용 등에 대한관리 감독 체계가 미흡한 상황에서 부모들은 진정한 무상보육을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표 5-17〉향후 요구되는 양육지원정책의 우선순위

(단위: 명, (%))

78	1년	-위	2년	2순위		3순위	
구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	230	(45.0)	104	(20.4)	51	(10.0)	
유치원 확대	33	(6.5)	52	(10.2)	41	(8.0)	
보육·유아교육비 지원확대	56	(11.0)	109	(21.3)	72	(14.1)	
양육비 현금 지원 확대	34	(6.7)	33	(6.5)	42	(8.2)	
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	59	(11.5	70	(13.7)	98	(19.2)	
육아정보.상담 제공 확대	4	(0.8)	17	(3.3)	22	(4.3)	
시간연장/시간제/24시간 등 보육의 다양성 확대	36	(7.0)	58	(11.4)	75	(14.7)	
육아휴직제도 정착 및 확대	43	(8.4)	31	(6.1)	69	(13.5)	
유연근무제 실시 확대	15	(2.9)	37	(7.2)	39	(7.6)	
교사자질검증	1	(0.2)	0	(0.0)	0	(0.0)	
육아 정책의 정확한 실시를 위한 관리 필요	0	(0.0)	0	(0.0)	1	(0.2)	
합계	511	(100.0)	511	(100.0)	510	(100.0)	

이밖에 그동안 제기되어 온 시간이용에 따른 보육료 차별화 정책과 4 장 양육실태 분석에서 제기된 정규운영시간 이외 시간에 대한 서비스 수준제고에 대하여 얼마나 필요하다고 인식하는지 조사한 결과, 시간이용에 따른 보육비 차별화 정책에 대한 필요성 정도는 흩벌이(4.14점)가 맞벌이(4.10점)보다 더 크게 조사되어 예측과 달리 흩벌이 가구의 경우 시간이용에 따른 보육료 차별화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홑벌이 가구가 맞벌이 가구보다 이용시간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법정 운영시간보다 더 길게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맞벌이, 흩벌이 가구 모두다 상대적으로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시설운영시간은 그대로 하되 정규프로그램 운영시간을 더 길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맞벌이(4.05점)가 홑벌

이(3.87점)에 비해 필요성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 과를 고려할 때, 현재의 시설운영시간의 개선보다는 현재의 운영시간 안에서 정규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시간을 확대하거나 그 이외의 시간에 대한 서비스 질 제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사례7 (가정어린이집+조모) : 비용지원을 시간별로 차이를 둘 필요가 있음. 어린이집 이용비용이 4시도 2시도 동일하니까 어린이집에서 늦게까지 있는 것을 싫어함. 늦게까지 있으면 더 많이 지원. 일찍 가는 걸 비용에 차이를 둠. 비용이 똑같으니까 맞벌이에서 불리함.

〈표 5-18〉 시간이용에 따른 보육료 차별화와 운영시간 개선 필요성

(단위: 점)

항목	맞	벌이	홑벌이	
8=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시간이용에 따라 보육비의 차별화 지원정책	4.10	0.70	4.14	0.64
현재 어린이집 법정운영시간 7:30(am)~7:30(pm) 보다 길게 운영	4.00	0.74	3.99	0.85
현재 어린이집 정규 프로그램 운영시간 9:00(am)~5:00(pm) 보다 길게 운영	4.05	0.76	3.87	0.70

제3절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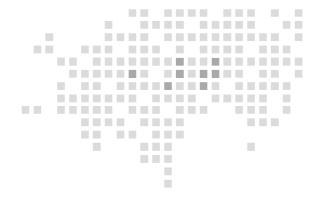
서비스 만족도 분석 결과 어린이집보다 유치원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조사되었다. 다만, '보육료 외의 추가비용납부'와 '일하는 시간 배려'에 대한 만족도는 어린이집의 경우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어린 이집, 유치원 모두 정규프로그램 운영 시간 이외의 아침, 저녁 보육서비 스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소하기까지의 대기기간에 대한 만족도도 타 항목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시설 이용 연령과 희망시설이용연령을 살펴보면, 맞벌이가 홑벌이보다 시설 이용연령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시설이용연령과 희망이용연령의 차이도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입소 대기시간 및 희망이용연령과 실제 이용연령의 차이를 고려할 때 부모들이 시설에 대한 부족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한다.

맞벌이 가구의 시설 이용의 주된 사유는 양육공백이며, 홑벌이 가구의 시설 이용의 주된 사유는 아동의 사회성 발달 및 양육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 그만큼 맞벌이 가구의 보육시설 이용의 절박성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가정 내 돌봄지원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제공 유형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이용시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가정양육지원 서비스는 부모의 퇴근시간이 늦어지더라도 늦은 시간까지 자녀를 돌봐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베이비시터보다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돌보미 사업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사전 교육을 받은 돌보미가 파견된다는 점에서 이용비용과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사업의 경우 사업규모도 그리 크지 않고, 정책수혜대상자도 소득계층에 따라 선별적인 면이 있어서 이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향후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한 수요증가 및 정책의의를 고려할 때 좀 더 적극적인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

양육지원정책의 양육부담 해소의 도움 정도를 살펴본 결과, 맞벌이가 홑벌이 보다 양육지원정책의 양육부담 도움정도에 대해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이돌보미 사업은 맞벌이 여성과 홑벌이 여성간 의 만족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지원정책의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육아지원 시설의 양적 확대 측면에서 유치원 확대설치가 요구되며 서비스의 질적 확대 측면에서 국 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이 요구된다. 국공립 시설의 확충을 요구하는 이면에는 국공립시설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수준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었다고 보이며 해당 시설의 확대는 시설의 양적확대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적 확대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여겨진다. 또한 현재무상보육이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유아교육비 지원확대에 대한 요구도가 상당하다는 것은 현행의 무상보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현장에서는 부모들은 국가에서 지원되는 보육료·유아교육료 이외의 추가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전히 보육·유아교육료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민간 어린이집 및 사립유치원에서 추가적으로 비용부담을 지우는 특별활동 및 현장학습 비용 등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가 미흡한 상황에서부모들은 진정한 무상보육을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밖에 시간이용에 따른 보육비 차별화 정책에 대한 필요성 정도는 예측과 달리 홑벌이 가구의 경우 시간이용에 따른 보육료 차별화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제에 따른 비용구조로 개편되면 시설에서 맞벌이 가구를 기피하거나 장시간 머무르는 보육아동을 기피할 이유가 사라지게 되어 맞벌이 가구의 장시간 시설이용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규프로그램 운영이간 이전 이후 시간에 대해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질제고도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제언

6

결론 및 정책제언 《

제1절 결론

지속적인 양육지원확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지원체계는 일가 정 양립을 위한 충분한 유연성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에도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출산율 제고 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양육지원정책 현황 및 양육실태 분석을 통하여 한국사회의 자녀돌봄 지원정책이 부모의 양육욕구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부합된 환경을 제공하는 지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다양한 보육비·교육비 지원정책이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가구의 양육지원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 특히 양육의 어려움을 크게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아기에 대한 가정양육 선호도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보육 이용자와 형평성 측면에서 양육수당은 많은 차이를 가지며 가정양육에 대한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양육수당을 좀 더 현실화하여 시설보육 이용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경우, 수요충족을 위해서는 센터예산운용 및 평가체계 개편이 요구되며, 시간제와 종일제의 예산편성을 독립적으로 하며 전체적인 예산확보가 요구되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해당 서비스가 맞벌이 가구의 양육부담 감소에 매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할 때 해당 정책의 확대가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개인양육지원 서비스 이용 아동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에 대한 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가정내 돌봄지원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이용시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가정양육지원 서비스는 부모의 퇴근시간이 늦어지더라도 늦은 시간까지 자녀를 돌봐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즉, 보육시설의 운영시간 내에서도 장시간의 시설보육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 및 제공되는 서비스 질에대한 불만족 등의 이유로 가정내 양육지원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는 시설에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가정양립 및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살펴본 결과, 근로시간에 의한 일 가정 양립갈등, 가사노동 및 자녀양육부담에 따른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근로환경의 개선 및 일과 가정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관련 가치관 및 양육실태 분석결과에 따르면 현재 가정 내에서 가사노동과 양육부담에 대한 성불평등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의 주 공급자는 여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환경에서 여성이 느끼는 양육부담은 일 가정 양립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결국 출산을 기피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양육지원 시설 이용시간과 이용희망시간을 비교 조사한 결과, 맞벌이가 구와 홑벌이 가구 모두 희망하는 시간까지 시설이용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시설 이용시 희망이용시간과 실제이용시간이 불일치하는 사 유를 고려했을 때 시설의 법적 운영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 지 자녀를 맡기는 부모를 선호하지 않는 상황인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국 공립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실제 이용시간과 희망이용시간과의 차이가 더 크다는 것은 시설 운영시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맞벌이 가구의 시설 이용의 주된 사유는 양육공백이며, 홑벌이 가구의 시설 이용의 주된 사유는 아동의 사회성 발달 및 양육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 그만큼 맞벌이 가구의 보육시설 이용의 절박성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양육지원정책의 양육부담 해소의 도움 정도를 살 펴본 결과, 맞벌이가 홑벌이 보다 양육지원정책의 양육부담 도움정도에 대해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이돌보미 사업은 맞벌이 여 성과 홑벌이 여성가의 만족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지원정책의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육아지원 시설의 양적 확대 측면에서 유치원 확대설치가 요구되며 서비스의 질적 확대 측면에서 국 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이 요구된다. 국공립 시설의 확충을 요구하는 이면에는 국공립시설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수준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었다고 보이며 해당 시설의 확대는 시설의 양적확대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적 확대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여겨진다. 또한 현재무상보육이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유아교육비 지원확대에 대한 요구도가 상당하다는 것은 현행의 무상보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밖에 시간이용에 따른 보육비 차별화 정책에 대한 필요성 정도는 예측과 달리 홑벌이 가구의 경우 시간이용에 따른 보육료 차별화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제에 따른 비용구조로 개편되면 시설에서 맞벌이 가구를 기피하거나 장시간 머무르는 보육아동을 기피할 이유가 사라지게 되어 맞벌이 가구의 장시간 시설이용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규프로그램 운영이간 이전 이후 시간에 대해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질제고도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제2절 정책제언

우리나라의 자녀양육 지원 정책은 크게 시설양육지원과 가정양육지원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6). 시설보육지원 정책으로는 보육료 교육료(유치 원) 지원정책이 있으며. 가정양육지원 정책으로는 양육수당이 주요정책 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밖에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및 가정내 보육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보 육료 지원 확대 및 아동수당 지원 확대 등 지속적으로 양육지원 정책의 확대가 이루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제고 및 여성의 경제활 동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정책효과는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 이다. 해당 정책은 출산률 제고 및 여성경제활동의 증진에 앞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의있는 정책이기에 해당정책의 효과를 단편적인 측면에서 논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해소를 위한 양육환경 제고 측면에서 해당 정 책이 부모의 양육욕구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부합된 환경을 제공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책적 측면에서 다양한 보육비·교육비 지원정책이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가구의 양육지원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 특히 양육의 어려움을 크게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양육비에 대한 어려움이 아니며 비용지원측면과 함께 육아 지원 인프라 확충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자녀양육지원 정책과 실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양육지원 환경 개선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기존연구 (허남재 외, 2011)에서 제안된 바와 같이 취업모가 정책수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는

⁶⁾ 세제지원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노동정책은 논의에서 제외시킴.

정책설계가 필요하다. 현재 양육지원정책의 많은 부분이 맞벌이 가정지원 중심으로 제도가 개선되어 가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보육재정의 안정성 확보 및 효율적인 재정운용의 측면에서 현행 종일제 보육서비스가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체계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 각 가정의 특성에 따라 종일제와 시간제 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하도록 하고 이용시간에 따른 보육료 지원정책 도입이 필요하다. 시간제 서비스 도입은 맞벌이 가구의 장시간 시설이용에 대한 부담을 해소해 주고 보육시설에서 맞벌이 가구 및 장시간 이용아동을 기피하는 사례를 해소해줄 것이다.

둘째, 가정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측면에서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의 확 대가 절실하다. 현행의 시설중심의 양육지원 서비스와 함께 아이돌보미 사업이 가정양육지원 서비스로서 충분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당제도 에 대한 예산확대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현재의 예산상황에서는 지원 대상 2순위(일반가정, 취업모)까지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지는 데에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정부지원 없이 이루어지는 시간제 라형의 경 우, 센터의 예산운용 실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서비스제공 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시간제 라형에 대한 운용은 정부지원 서비스와 차별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도 입이 필요하다. 종일제 라형의 경우 또한 점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격고 있는 상황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했을 때 아이돌보미의 예산편성과정에서 종일제와 시간제를 나눌 필요성이 제기된다. 종일제와 시간제의 예산집행이 같이 이루어지 기 때문에 센터의 평가를 위해서는 이용가정의 수를 높여야 하며, 평가기 준으로만 본다면 종일제보다 시간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센터 실적 평가에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

셋째,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보육시설운영 체계 하에서 양육프로그램 운영시간에 따른 질적 제고가 요구된다. 특히, 정규프로그램 이외의 시간 (7:30~9:00, 17:00~19:30)에 대한 보육서비스 질 제고가 요구된다. 본연구 조사결과 해당시간에는 아동이 방치된다고 느끼거나,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맡기는 것에 대해 눈치가 보여 본인이 희망하는 시간보다 일찍 자녀를 데려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시간에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는 시간제 서비스 제공의 도입과 함께 해당시간에 대한 서비스질 제고가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넷째, 정책요구도의 최우선 순위에 있는 국공립 시설의 어린이집 확충과 유치원 시설의 확대가 무엇보다도 요구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시설보육에 대한 신뢰성 저하 및 긴 입소대기시간으로 인해 차선책으로 가정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부모들이희망이용연령보다 미리 시설이용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시설의 확대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국공립 시설의 확충을요구하는 이면에는 국공립시설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수준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었다고 보이며 해당 시설의 확대는 시설의 양적확대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적 확대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양육지원 정책은 앞으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뿐만 아니라 성통합적 관점을 고려하여 계획되고, 남성과 여성의 양육공동책임에 대한 실제적 분담방법을 제시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즉, 자녀 양육에 대해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역할을 부여하는 방향으로나아가도록 더욱 강하게 정책들을 집중시키는 것(이진숙·이슬기, 2013)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탈리아와 스웨덴의 출산율 차이에 관한 기존 연구에 의하면(Chesnais, 1996) 이탈리아의 경우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

고 노동시장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여성의 사고와 가치관은 변하지만 사회는 여전히 남성중심의 사회로 남아있어, 출산·양육은 여성의 경제활동에 제약을 주어 출산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반면 스웨덴의경우 다양한일·가정 양립지원 정책을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활성화뿐만 아니라 출산율 회복에도 성공했다고 보고 있다. 국내에서도 아버지의 육아휴직 활성화등 가정 내 양육에 대한 남성의 역할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할 것이다(김은정, 2013). 본 연구의 조사결과 자녀양육태도가 자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자녀양육과 교육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의 교육환경이 다양한 정보의 추구와 적극적인 사교육을 요구하기 때문에 가정 내 엄마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가정내 양육시간에 대한 불공평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나실질적인 개선은 가정 내에서 크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양육의 책임을 양성이 공평하게 분담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 고선주(2012). 저출산 대응: 가족내 자녀양육지원 강화, 한국심리학회지. 18(1), pp.53-77.
- 금재호·배규식·김은지(2013). 시간선택제 일자리 및 일·가정양립 정책 연구, 한국 노동경제학회.
- 김선미·이기영·이승미·김은정·김소영·류재언(2010). 자녀양육지원사업 개선방안, 여성가족부.
- 김소영·장혜경·김영란·선보영·조윤주(2013). 민간베이비시터 운영실태 및 관리 개선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김영옥·오은진·한지영(2014). 여성 경력단절 예방 강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방 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은정·유재언·최인선(2014).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조사 연구, 한국보건사 회연구원.
- 김은정(2013). 저출산 대응을 위한 보육정책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213호, pp.50-61.
- 김주연(2010).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보육정책의 방향, 교정복지연구. 19, pp.21-58.
- 김태홍·홍승아유연규·임희정·강민정(2009). 지속가능한 발전과 일가정양립 정책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호순(2003). 장애아 무상보육 정책 수립의 배경과 향후계획, 특수교육정책포럼 자료집 발표문(2003.9.2.)
- 남정은·정정희(2013). 자녀양육 양상을 통해 본 저출산 문제의 이해 -1980년대 중 반~2000년대 신문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유아교육학. 33(2), pp.53-78.
- 도남희·민정원·양영희·이예진·김소아·엄지민(2013). 한국아동패널 2013, 육아정 책연구소.
- 도남희·이정원·김문정(2012). 기업의 자녀양육지원 실태와 정책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류연규김영미(2014). 영유아를 둔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방식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4회 여성가족패널 학술대회.
- 류임량(2009). 기혼취업여성의 일-가족전이(work-to-family spillover)에 대한 연령계층별 차이 연구, 페미니즘연구. 9(2), pp.119-156.
- 박기남(2009). 기혼 취업 여성의 일·가족 양립을 위한 시간갈등 연구: 연령계층 별, 성역할 태도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5(2), pp.37-71.
- 박영태 엮음(2011). 쿤의『과학혁명의 구조』해제, 경기: 도서출판 서광사.
- 박의경(2007). 참여 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 여성연구. 73, pp.159-187.
- 박효진·은선경(2012). 경력단절 경험을 가진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의 일-가족양립 정책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7(1), pp.5-29.
- 배성희(2011). 취업모의 영아보육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생활과학논 총. 15(2), pp.21-29.
- 백선희(2009).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의 보육정책 평가,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화회, 비판사회정책. 28, pp.95-141.
- 백선희(2012). 0~5세 무상보육 진단과 과제, 젠더리뷰. 24, pp.50-56.
- 백선희·송다영·이성희(2008). 가정내 보육지원 제도화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 백은주·한선아·강민정(2011). 영아기 자녀양육을 위한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및 선호 유형에 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6(4), pp.209-232.

보건복지부(2010). 2010년 보육통계.

보건복지부(2011). 2011년 보육통계.

보건복지부(2012). 2012년 보육통계.

보건복지부(2013). 2013년 보육통계.

보건복지부(2014). 2014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2014). 2014년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kosis), 각년도(2003,2006).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3

서문희(2008). 일본의 일하는 여성 보육지원, 국제사회보장동향. 2008 겨울호,

- pp.42-56.
- 서문희·양미선·송신영(2011). 우리나라의 보육실태와 외국사례-공립보육시설, 보육비용 지불, 양육수당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이혜민(2013), 2013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양미선·김은설·최윤경·유해미·손창균·이혜민(2012). 2012년 전국보육 실 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 신윤정(2012) 프랑스 영유아 보육정책 현황과 시사점, 보건·복지 이슈앤 포커스. 151호 (2012.8.10.)
- 신윤정·김윤희(2012). 저출산에 대응한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방안, 한국보건사 회연구원
- 양옥승(1996). 한국의 탁아제도 연구, 덕성여자대학교논문집. 25, pp.299-313.
- 여성가족부(2006). 1차 건강가정 기본계획
-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kosis). 각년도(2005, 2010).
- 여성가족부(2014a). 2014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 여성가족부(2014b), 2013 아이돌봄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 오영희·김유경·오신휘(2012).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연구(॥), 한국보건 사회연구워.
- 오은진·노대명(2009).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 여성정책연구워
- 유해미·서문희·한유미·김문정(2011). 영아 양육비용 지원정책의 효과와 개선방안 양육수당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육아정책연구소(2008). 한국아동패널, 원자료.
- 육아정책연구소(2009). 한국아동패널, 원자료.
- 육아정책연구소(2010), 한국아동패널, 원자료,
- 육아정책연구소(2011). 한국아동패널, 원자료.
- 이명석(2007). 행정학 패러다임과 거버넌스, 국정관리연구. 2(2), pp.3-30.
- 이미화·민정원·엄지원·윤지연(2013). 영아보육의 실태 및 질 제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이미화·홍승아·서문희·정민자·권혜진·임양미·신보원(2011). 수요자 입장에서 본 자녀양육지원저액의 방향과 과제. 여성가족부.
- 이삼식(2014). 한·일 저출산 대응정책 비교와 발전방향, 2014년도 제5차 인구포럼.
- 이성림·소득계층을 중심으로 본 영유아 자녀 돌봄 및 교육 실태와 정책적 함의,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0,(6), pp.23-37.
- 이승미·김선미(2011). 이용자 관점에서 본 아이돌보미 사업의 특성과 개선방안, 대한가정학회지. 49(4), pp.51-65.
- 이윤진·이정원·김문정·황은숙(2010). 가구유형별 육아지원 요구와 정책방안 연구: 맞벌이 및 한부모 가구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이정원·도남희·김세현·나지혜(2012). 출산수준제고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내실화 방안(II) -가정 내 영아 양육실태와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이진숙·이슬기(2013). 젠더관점에서 본 보육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연구, 젠더와 문화. 6(2), pp.85-123.
- 이혜경(1997). 기혼여성취업과 사회복지서비스의 과제, 평택대학교논문집. 9(1), pp.119-136.
- 장혜경·홍승아김영란김미숙·손선옥·김용희(2009). 아동케어 실태 및 사각지대 해소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전상민(2011). 영유아보육서비스에 대한 소비실태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만2 세 미만 아동의 보육서비스를 중심으로, 소비자정책교육연구. 7(2), pp.77-101.
- 정계영(1995). 현대사회에서의 탁아와 유아발달에 관한 연구, 경북 전문대학논문 집. 14, pp.291-315.
- 조계표(2014). 맞벌이 부부의 조부모 자녀양육의 문제점과 제언, 한국영유아보육학. 84(1), pp.283-299.
- 조주은(2012) 기획된 가족, 서해문집.
- 차선자서문희·정민자·허창영(2010). 「자녀돌봄지원법」의 제정을 위한 연구, 여성 가족부

- 최상설·홍경준(2012). 아동돌봄 유형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영아기 돌봄 유형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9(3). pp.29-57.
- 최정신(2011).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유무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양육스트레스의 차이, 한국보육지원학회지. 7(2), pp.205-223.
- 통계청(1970). 경제활동인구조사
- 통계청(1985). 경제활동인구조사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kosis). 각년도(2010-2013).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7). 여성가족패널, 원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8). 여성가족패널, 원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2). 여성가족패널, 원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0). 여성가족패널, 원자료.
- 허남재·석재은(2011). 한국의 보육료지원제도는 취업모 친화적인가?, 사회복지정 책. 38(2), pp.139-163.
- 홍승아·김은지·선보영(2013). 가정내 육아지원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양육수당제 도와 아이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홍승아·김은지·이영미(2010). 취업부모의 자녀양육지원서비스 효율화 방안, 한국 여성정책연구원
- 홍승아(2005.) 복지국가 재편과 젠더: 프랑스 보육정책을 중심으로. 여성연구. 69(2), pp.1-35.
- Chesnais, Jean-Claude(1996), fertility, family and social policy in contemporary western Europ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2(4), pp729-739.

〈기사〉

- 김소연(2010.02.22.). 보육시설 95% 사설…돈 없는 부모는 괴로워, 한겨레 정 치면
- 박필수(1992.02.28.). 탁아소 보육교사 없거나 미자격 30%, 한겨레

- 서영아(2001.12.26.). "영유아 보육 국가가 책임진다." 여성부, 공보육전환 추진, 동아일보 사회면
- 신성식·장주영(2014.02.12.), 청년실업 늘고 전셋값 뛰고... 애낳기 벅찬 환경, 중앙일보
- 신원미상(1974.04.29.), 보호구실도 제대로 못하는 어린이집, 탁아시설의 실태·문제점을 살펴본다, 경향신문
- 이영이(1991.01.28.). 탁아사업 정부 지원에 허점, 동아일보 정영수(1986.03.19.). 탁아소 너무 부족하다, 매일경제

〈홈페이지 검색〉

법제처(2014). 영유아보육법(2014.05.29.검색), 법제처(2014). 아이돌봄지원법(2014.06.09.검색)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2014.06.12.검색) 본 조사의 개인정보는 통계법 제33조(비밀보호)와 제34조(통계종사 N 의무)에 의해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자녀 양육 지원 정책 요구도 및 수요도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자녀 양육 실태 및 돌봄지원 서비스 개선방안」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자녀양육실태 현황과 자녀양육지원 정책의 요구도 및 수요도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전문기관인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하여 진행되며, 응답해 주신 내용은 통계법 33조에 의거하여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응답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조사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4년 8월

◇연구 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연구 책임자: 김은정

◇조사수행기관: (주)마크로밀엠브레인

◉ 각 문항의 해당 사항에 V 또는 O 표시를 해 주십시오.					
SQ		응답자 선정 질문			
	SQ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자 → 설문 종료 □② 여자				
SQ2. 실례지만, 올 해 만으로 몇 세이십니까? 만()세 □① 만20세 미만 → 설문 종료 □② 만20~29세 □③ 만30~39세 □④ 만40~49세 □⑤ 만50세 이상 → 설문 종료 SQ3.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서울 강북동	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110	□ ② 서울 강북서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용산구 종로구, 중				
서울	□ ③ 서울 강남서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 ④ 서울 강남동	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7471	□ ⑤ 경기 북부 수도권	고양시, 구리시, 의정부시			
경기 수도권	□ ⑥ 경기 남부 수도권	과천시, 광명시, 군포시, 부천시, 성남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의왕시, 하남시			
		□ ⑨ 그 외 지역 → 설문 종료			
SQ4. 귀하의 혼인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① 기혼 □② 사별/이혼 → 설문 종료 □③ 미혼 → 설문 종료 SQ5. 귀 부부의 취업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① 맞벌이 부부 □② 외벌이 부부(남편은 취업상태, 본인은 전업주부) □③ 외벌이 부부(본인은 취업상태, 배우자(남편)은 전업주부) → 설문 종료 □④ 부부 모두 미취업 상태 → 설문 종료					

SQ6.	귀하의	자녀는	몇 명	입니까?)			
			_명	□자	≓ 없음 →	▶ 설문 중	종료	
SQ7.	귀하의	만 6세	이하	미취학	자녀는 5	몇 명입1	니까?	
			_명	□□□추	i학 자녀	없음 🗲	설문	종료

SO8. 귀하의 미취학 자녀의 출생년도를 적어주십시오.

구분	출생년도
자녀1	년
자녀2	년
자녀3	년
자녀4	년

- ※ 지금부터 여쭤보는 보육현황에 대한 응답은 귀하의 가장 어린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SQ9. 현재 자녀의 주 보육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시설보육
 - □② 시설보육과 가정 내 돌보미 보육
 - □③ 가정 내 돌보미 보육 → 문 7로
 - □ ④ 별도의 시설보육이나 도움 없이 부부가 양육 → 설문 종료
- ※ 시설보육은 어린이집, 유치원, 기타 기관 등에 다니는 경우를 말하여, 1-2시간의 특기 교육을 위한 시설이용은 제외합니다.
 - 가정 내 돌보미보육은 할머니, 기타 친인척, 아이돌보미(정부사업), 베이비시터를 통해 자녀를 돌보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에 돌보미 집에서 돌보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Α

자녀 보육 현황

[면접원: SQ9의 ①, ②응답자만 진행, SQ9 ③ 응답자는 PART B 문7로 이동]

1. 현재 자녀의 보육을 위한 주 이용(가장 오랜 시간 이용하는)시설은 무엇입니까?

1-1. 구분	1-2. 세부구분	규모
□어린이집	□① 민간어린이집 □② 국공립어린이집 □③ 가정어린이집 □④ 직장어린이집 □⑤ 기타어린이집 (부모협동 등)	1-3. 전체 학생수 □① 50명 미만 □② 50-100명 미만 □③ 100-150명 미만 □④ 150명 이상 □⑨ 잘 모름
□유치원	□① 공립유치원 □② 사립유치원	1-4. 자녀 학급 인원 ()명 □ 잘 모름
□기타	□① 학원(영어유치원 등) □② 유아체육단 □③ 기타	1-5. 자녀 학급 담당교사 ()명 □ 잘 모름

2. 현재 주 이용시설에 대하여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1. 다니는 요일 (중복 체크)	2-2. 시설 운영시간	2-3. 정규 프로그램 운영 시간	2-4. 실제 이용시간	2-5. 희망 이용시간	2-6. 월평균 지불 비용*
□① 월요일 □② 화요일 □③ 수요일 □④ 목요일 □⑥ 금요일 □⑥ 토요일 □⑦ 일요일 □⑧ 기타 (개원시간 : 폐원시간 : □ 잘 모름	시작 시간 : 끝나는 시간 : □ 잘 모름	시작 시간 : 끝나는 시간 :	시작 시간 : 끝나는 시간 :	() 만원

^{*}월평균지불비용은 무상보육지원 비용을 제외한 급식비, 교통비, 특별활동비 등을 의미합니다.

3.	[면접원: 문2-4. 실제 이용시간과 문2-5. 희망이용시간이 다른 경우에만 질문할 것. 동일한 경우 ⑨ 비해당 체크후 문4로 이동] 현재 주 이용시설의 실제 이용시간과 희망 이용시간이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시설운영시간과 나의 근로시간이 맞지 않음 (새벽출근, 야근, 반일반 시설이용 등) □② 운영시간 내 이지만 이용유아가 없어서 혼자 둘 수 없어 빨리 하원해야 하는
	상황 ③ 법적 시설운영시간을 원에서 지키지 않는 것 같음 (늦게 오픈, 일찍 닫음) ④ 시설이용은 가능하지만 원하는 시간까지 이용하기 눈치보여서 ⑤ 정규시간 이외의 보육프로그램이 없어서 아이가 방치된다고 느껴 빨리 데려옴
	□⑥ 기타(

4. 주 이용시설의 다음사항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불만족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족정도: ①매우 불만족, ②약간 불만족, ③보통, ④약간 만족, ⑤매우 만족

□ 9 비해당 (원하는 시간에 이용하고 있음)

항목	4-1. 만족정도		4-2. 불만족 사유 (만족정도의 ①, ② 응답자만)
보육료 외 특별활동 등 추가비용 수납	1)-2)-3)-4)-5)		
주거지에서의 거리	1)-2-3-4-5		
일하는 부모를 배려한 운영시간	1-2-3-4-5		
입소하기까지의 대기기간	1)-2-3-4-5		4-3. 대기기간 개월
정규 보육프로그램의 질	1-2-3-4-5		
정규 프로그램 전(이른아침) 보육·교육서비스 질	1-2-3-4-5	⑨해당 없음	
정규 프로그램 이후(저녁) 보육·교육 서비스 질	1)-2-3-4-5	⑨해당 없음	
교사의 질	1-2-3-4-5		
급식 등 안전 위생	1-2-3-4-5		

		현재 이용 해주세요.	하는 기관	·에 다니는	이유는 무엇입	니까? 우선순위로 27	ት
	1순위		2순위				
	② 아이의③ 초등학④ 특기교⑤ 사회성⑥ 주위에⑦ 양육부분	전인적 발달교 준비를 위하여 왕을 위하여 발달을 위하 놀이상대가	날을 위해서 심하여 하여 없어서 배 (부모 및	년 타인이 돌볼	발동 등의 이유) 수 있으나 양육부	담을 덜가위해 시설 이용)	
		(여름방학 _			그 기간은 며칠 방학		
	니까? (중복응답 7) 			의 양육방법은 무엇업)])]
	□③ 지인	•		_	② 조부모 혹은 ? ④ 타 시설 이용 ⑥ 기타(친인척 도움	
6-2	2. [면접원 였습니 ²		만 응답지	- 만]방학기	간 동안, 양육의	니 어려움은 어느 정도	Ē
	□① 매우 □③ 보통	어려움		② 조금 어 ④ 조금 수		□⑤ 매우 수월	

В

가정 내 돌보미 보육 현황

[면접원: PART B는 SQ9의 ②, ③ 응답자만 질문, SQ9의 ①응답자는 PART C 문11로 이동]

7. 현재 시설보육 및 부모보육을 제외하고 자녀를 주로 돌보는 분은 누구십니까? (중복응답 가능)

7-1. 구분	7-2. 돌봐주는 요일 (중복체크)	7-3. 돌봐주는 시간	7-4. 희망이용시간	7-5. 지불여부	7-6. 월평균 지불비용
□① 조부모	□① 월요일 □② 화요일 □③ 수요일 □④ 목요일 □⑤ 금요일 □⑥ 토요일 □⑦ 일요일 □⑧ 함께 거주 □⑨ 기타()	시작 시간 :_ 끝나는 시간 :_		□① 지불안함 □② 정기적으로 지불 □③ 부정기적으로 지불 □④ 현물로 지불	() 만원
□② 친인척	□① 월요일 □② 화요일 □③ 수요일 □④ 목요일 □⑤ 금요일 □⑥ 토요일 □⑦ 일요일 □⑧ 함께 거주 □⑨ 기타()	시작 시간 :_ 끝나는 시간 :_		□① 지불안함 □② 정기적으로 지불 □③ 부정기적으로 지불 □④ 현물로 지불	() 만원
□③베이비 시터	□① 월요일 □② 화요일 □③ 수요일 □④ 목요일 □⑤ 금요일 □⑥ 토요일 □⑦ 일요일 □⑧ 함께 거주 □⑨ 기타()	시작 시간 :_ 끝나는 시간 :_		□① 지불안함 □② 정기적으로 지불 □③ 부정기적으로 지불 □④ 현물로 지불	() 만원
□④ 아이 돌보미 (정부사업)	□① 월요일 □② 화요일 □③ 수요일 □④ 목요일 □⑤ 금요일 □⑥ 토요일 □⑦ 일요일 □⑧ 기타()	시작 시간 :_ 끝나는 시간 :_	시작 시간 :_ 끝나는 시간 :_	□① 가형 □①전일제 □②시간제 □③ 다형 □④ 라형 □④ 잘모름	() 만원

	7-1. 구분	7-2. 돌봐주는 요일 (중복체크)	7-3. 돌봐주는 시간	7-4. 희망이용시간	7-5. 지불여부	7-6. 월평균 지불비용
(]⑤ 기타)	□① 월요일 □② 화요일 □③ 수요일 □④ 목요일 □⑤ 금요일 □⑥ 토요일 □⑦ 일요일 □⑧ 기타()	시작 시간 :_ 끝나는 시간 :_		□① 지불안함□② 정기적으로 지불□③ 부정기적으로 지불□④ 현물로 지불	() 만원

8.	자녀를	돌보는 분	분이 어	디서	자녀	를 돌	보십	니	까'	?
----	-----	-------	------	----	----	-----	----	---	----	---

□① 자택
□② 돌보는 사람 집

9. 현재 귀하의 자녀가 이용하는 서비스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불만족하신 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족정도: ①매우 불만족, ②약간 불만족, ③보통, ④약간 만족, ⑤매우 만족

항목	9-1. 만족정도	9-2. 불만족 사유 (만족정도의 ①, ② 응답자만)
이용시간	1-2-3-4-5	
이용비용	1-2-3-4-5	
양육방식(서비스 내용)	1-2-3-4-5	
양육공간	1-2-3-4-5	
돌보는 사람 전문성	1-2-3-4-5	
돌보는 사람 성실성	1)-2-3-4-5	

10. 가정내 돌보미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항목	사유
□ 시설보육과 가정 내 돌보미 보육을 동시에 이용하는 사람 응답 [SQ9의 ②응답자]	□ ① 장시간 시설보육을 선호하지 않아서 □ ② 시설운영시간과 나의 근로시간이 맞지 않음 (새벽출근, 야근, 반일반 시설 이용 등) □ ③ 운영시간 내 이지만 이용유아가 없어서 혼자 둘 수 없어 빨리하원해야 하는 상황 □ ④ 법적 시설운영시간을 원에서 지키지 않음 (늦게 오픈, 일찍 닫음) □ ⑤ 시설이용은 가능하지만 원하는 시간까지 이용하기 눈치보여서 □ ⑥ 정규시간 이외의 보육프로그램이 없어서 아이가 방치된다고 느껴빨리 데려옴 □ ⑦ 기타(

항목	사유		
□ 시설보육 없이 가정 내 돌보미 보육만 이용하는 사람 응답 [SQ9의 ③응답자]	1순위 2순위 ① 아이가 너무 어려서 기관에 적응하기 힘들까봐 ② 시설비용이 부담되어서 ③ 시설 이용시 원하는 시간에 이용하기 어려워서 ④ 시설에 매일 데리고 다니기 번거로워서 ⑤ 시설 환경이 열악하여서 ⑥ 시설이용시 한사람이 여러 아이를 같이 돌보는 것이 불안하여서 ⑦ 환경이 바뀌면 정서적으로 안 좋을 것 같아서 ⑥ 이용 희망 시설에 대기자가 많아서 ⑤ 주변에 마땅한 시설이 없어서 ⑥ 기타()		

1	$\overline{}$
l	

기타 보육 현황 및 경력단절 경험

11. 주 이용시설 이외에 특별활동을 위한 학원(예·체능, 영어 등)을 다니고 있습니까?

□① 예	집(혹은 시설) 출발 시간:, 집(혹은 시설)에 돌아오는 도착 시간:
□② 아니오	→ 문12로 이동

- ※ 이용하는 기관수에 상관없이, 집(혹은 시설)에서 출발하는 시간과 집(혹은 시설)에 돌아오는 시간 을 적어주십시오. 자택으로 개인교사를 불러 진행하는 특별활동(예: 몬테소리, 프뢰벨 등)의 경우 는 제외
- 11-1. 특별활동에 다니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특기교육을 위하여

- ② 추가보육시간 확보를 위해서
- ③ 사회성 발달 및 주위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 ④ 아이가 원해서
- ⑤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 (부모 및 타인이 돌볼 수 있으나 양육부담을 덜기위해 시설 이용)
- ⑥ 기타()

12. 아이돌봄 사업에 대해 다음 사항에 응답해 주십시오.

12-1. 현재 이용여부	12-2. 과거 이용하였기	거나 신청 경험 여부(문 1	2-1의 ② 응답자만)		
□①예 → 문13으로 이동					
□② 아니오	□ ① 예□ ② 아니오	→ 문12-2-1로 이동 → 문12-2-2로 이동			
□① 대기기간이 너	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 길어서 다른 방법을 이 매번 바뀌어서(바꾼 지 않아서 하지 않아서	무엇입니까? 을 구함	기용하였거나 신청		
12-2-2. [면접원: 문: 지 않은 이유는 무 □ 아이돌보미 시 □ 관심이 없어서 □ 3 대기기간이 길 □ 4 등록절차가 보 □ 5 돌보미가 제공	-엇입니까? 업을 몰라서 (필요 없어서) 어서		하지 않거나 이용 혀		
13. 귀하의 가장 어린 개월		설을 이용한 연령은 돌보미 보육만 이용하는			
14. 귀하가 생각하는 개월	이상적인 취원 연령([시설이용 연령)은 몇	개월 입니까?		

14	-1. [면접원: 문13. 처음 이용 연령과 문14. 여에만 질문할 것. 동일한 경우 ⑨ 비해당 체크과 이용연령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	후 문15로 이동]희망 취원연령 까? 너
	□ 의 비해당 (희망연령에 취원하거나 가정내 돌보	 미 보육만 이용하고 있음)
15	5. 귀하는 경력단절(일을 하다 그만두었던 경험) □① 있다 □② 없다 → 문 16으로	
*	※ 경력단절이란 취업을 했다가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으로 노동시장을 떠난 여성
15	i-1. [면접원: 문15의 ① 응답자만]경력단절을 기계 결혼·임신·출산·육이로 인한 직장에서의 분위 ② 결혼 준비를 위해서 ③ 임신하기 위해서 ○ 4 출산 후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어서 ○ 5 출산 후 아이를 맡길 만큼 보수가 넉넉하지 ○ 6 직장생활과 육이를 병행하기 힘들어서 ○ 7 학업을 위해서 ○ 8 가족이 원해서 ○ 9 아이를 직접 돌보고 싶어서 ○ 11 기타(기 또는 불이익 때문에

D

정책 수요도 및 요구도

16. 귀하는 다음과 같은 정부의 최근 양육지원 정책을 알고 있습니까?

내용	16-1. 인지정도	16-2 수혜여부	16-3. 양육부담 완화도움정도
무상보육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① 잘 안다 □② 대략 안다 □③ 모른다 → 아래 항목으로	□① 있다 □② 없다 → 아래 항목으로	□①전혀 도움안됨 □②도움 안됨 □③보통 □④도움 됨 □⑤매우 도움됨
	및 요료# □① 잘 안다		□①전혀 도움안됨 □②도움 안됨 □③보통 □④도움 됨 □③매우 도움됨
만 3~5세 누리과정 도입	□② 대략 안다 □③ 모른다→ 아래 항목으로	□① 있다 □② 없다 → 아래 항목으로	16-4. 도움이 되지 않는 사유 (3~5세 누리과정 도움정도 ①,②응답자만)
어린이집 미이용 0~5세 양육수당 지원	□① 잘 안다 □② 대략 안다 □③ 모른다→ 아래 항목으로	□① 있다 □② 없다→ 아래 항목으로	□①전혀 도움안됨 □②도움 안됨 □③보통 □④도움 됨 □③매우 도움됨
	□① 잘 안다 □② 대략 안다 □③ 모른다→ 아래 항목으로	□① 있다 □② 없다 → 문 17로	□①전혀 도움안됨 □②도움 안됨 □③보통 □④도움 됨 □③매우 도움됨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16-5. 도움이 되지 않는 사유 (아이돌보미 도움정도 ①, ②응답자만)

17. 현재 아래와 같은 양육지원 정책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귀하는 아래와 같은 양육정책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불만족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족정도: ①매우 불만족, ②약간 불만족, ③보통, ④약간 만족, ⑤매우 만족

항목	17-1. 만족정도	17-2. 불만족 사유 (만족정도의 ①, ② 응답자만)
무상보육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1)-2-3-4-5	
만 3~5세 누리과정 도입	1)-2-3-4-5	
어린이집 미이용 0~5세 양육수당 지원	1)-2-3-4-5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1)-2-3-4-5	

18. 귀하께서 정부에 바라는 가장 중요한 양육지원 정책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①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			_	유치원 확대 양육비 혀금	되어 하다	ı	
③ 보육·유아교육비 지원확대 ⑤ 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			_	왕국미 현금 육아정보·상담		•	
	장, 시간제, 24 시 무제 실시 확대		다양성		육아휴직제도 기타 (전착 및	확대)

19. 다음의 정책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성정도: ①매우 필요하지 않음, ②필요하지 않음, ③보통, ④필요함, ⑤매우 필요함

항목	필요성정도
시간이용에 따라 보육비의 차별화 지원정책	1)-2-3-4-5
현재 어린이집 법정운영시간 7:30(am)~7:30(pm) 보다 길게 운영	1)-2-3-4-5
현재 어린이집 정규 프로그램 운영시간 9:00(am)~5:00(pm) 보다 길게 운영	1-2-3-4-5

D	\cap
$\boldsymbol{\nu}$	Y

인구사회학적 특성

		거주지	()시/도 ()군/구 ()읍/면/동
	가구 현황	월평균 가구소득	□①99만원 이하 □②100~199만원 이하 □③200~299만원 이하 □④300~399만원 이하 □③400~499만원 이하 □⑥500~599만원 이하 □⑦600~699만원 이하 □⑧700만원 이상
		연령	만세
공통 문항	배우자 현황	학력	□①중학교 졸업 이하 □②고등학교 졸업 □③2년제 대학 졸업 □④4년제 대학 졸업 □⑤석사 졸업 □⑥박사 졸업
[모두 응답]		직업	□①관리자 □②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③사무 종사자 □④서비스 종사자 □⑤판매 종사자 □⑥농림어업 및 숙련 종사자 □②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⑨단순노무 종사자 □⑩군인
		종사상 지위	□①자영업자 □② 고용주 □③ 무급가족종사자 □④ 상용근로자 □⑤ 임시근로자 □⑥ 일용근로자
	본인 현황	학력	□①중학교 졸업 이하 □②고등학교 졸업 □③2년제 대학 졸업 □④ 4년제 대학 졸업 □⑤ 석사 졸업 □⑥ 박사 졸업
	본인의 직업상태 (전업주부 는 비해당)	취업상태	□①재직중 □②휴직중(육아휴직 또는 산전후 휴가)
		직 종	□①공공기관 □②공기업 □③대기업 □④중소기업 □⑤기타
맞벌 이만 응답의 ①만]		직업	□①관리자 □②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③사무 종사자 □④서비스 종사자 □⑤판매 종사자 □⑥농림어업 및 숙련 종사자 □⑦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⑨단순노무 종사자 □⑩군인
		종사상 지위	□①자영업자 □② 고용주 □③ 무급가족종사자 □④ 상용근로자 □⑤ 임시근로자 □⑥ 일용근로자
		일자리형태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
		근로요일 형태	□① 월요일 ~ 금요일 □② 월요일 ~ 토요일 (매주) □③ 월요일 ~ 토요일 (격주 또는 월 1~2회 토요근무) □④ 월요일 ~ 일요일 □⑤ 주당 2~3회 □⑥ 불규칙적으로 (간헐적으로) □⑦ 기타 ()
		근로시간 형태	□① 전일제 □② 시간제
		출퇴근 시간	출근:/ 퇴근: 실제 본인의 출퇴근 시간

응답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